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21	○		

공통요구자료	Ⅱ-1
--------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1. 1.

I. 총괄표

I. 총괄표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세입	42,298	52,952	52,952	44,786	44,786	△8,166	△15.4
세출	757,566	940,947	903,449	1,068,571	1,002,613	99,164	1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세입(계정합)	186	0	0	0	0	0	-
지역지원계정	24,547	0	0	0	0	0	-
지역자율계정	500	6,200	5,200	8,000	4,075	△1,125	△21.6

기금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19결산	2020계획		2021계획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문화재 보호기금	143,303	151,076	151,076	156,934	141,879	△9,197	△6.1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일반회계 : 총 5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1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요구	조정		
문화재보호행정기반 조성	문화유산 연구 기반 시설 구축	8,763	8,763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화문화재연구소) (완주문화재연구소)	김준호 (032-930-0020) 태규옥 (063-290-9302)
문화재보호행정기반 조성	문화유산스마트보존 활용기술개발(R&D)	7,875	7,875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배준우 (042-481-3115)
유형문화재보존관리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	0	250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조규형 (042-481-4914)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재사회적기업 육성	1,500	500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 교육팀)	장영기 (042-481-3150)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	0	350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이광구 (042-481-474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해당없음

<문화재보호기금> 해당없음

Ⅱ. 일반회계

1. 총괄

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42,298	52,952	52,952	44,786	44,786	△8,166	△15.4
관유물대여료	3,535	2,718	2,718	3,350	3,350	632	23.3
토지대여료 (51-511)	1,775	1,365	1,365	1,600	1,600	235	17.2
건물대여료 (51-512)	1,747	1,340	1,340	1,737	1,737	397	29.6
기타관유물대여료 (54-545)	13	13	13	13	13	0	0.0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86	980	980	1,150	1,150	170	17.3
기타재산수입 (54-545)	2,086	980	980	1,150	1,150	170	17.3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79	0	0	0	0	0	-
과태료 (56-563)	79	0	0	0	0	0	-
변상금및위약금	936	3,606	3,606	3,606	3,606	0	0.0
변상금 (57-571)	904	3,506	3,506	3,506	3,506	0	0.0
위약금 (57-572)	32	100	100	100	100	0	0.0
기타경상이전수입	23,893	30,000	30,000	25,000	25,000	△5,000	△16.7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23,893	30,000	30,000	25,000	25,000	△5,000	△16.7
잡수입	162	100	100	100	100	0	0.0
기타잡수입 (69-691)	162	100	100	100	100	0	0.0
입장료수입	11,350	15,468	15,468	11,500	11,500	△3,968	△25.7
입장료수입 (64-641)	11,350	15,468	15,468	11,500	11,500	△3,968	△25.7
잡수입	247	80	80	80	80	0	0.0
기타잡수입 (69-691)	247	80	80	80	80	0	0.0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1	0	0	0	0	0	-
토지매각대 (72-721)	11	0	0	0	0	0	-

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757,566	940,947	903,449	1,072,072	1,002,613	99,164	11.0
113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1,460	11,295	11,295	34,913	39,706	28,411	251.5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1131-301)	788	6,383	6,383	9,058	14,152	7,769	121.7
국유문화재관리 (1131-302)	672	645	645	1,647	1,346	701	108.7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1131-308)	0	4,267	4,267	7,570	7,570	3,303	77.4
문화유산연구기반시설구축(신규) (1131-313)	0	0	0	8,763	8,763	8,763	순증
문화유산스마트보존활용기술개발 (R&D)(신규)(1131-314)	0	0	0	7,875	7,875	7,875	순증
1132 무형문화재전승	39,821	49,491	47,553	55,346	51,477	3,924	8.3
무형문화재보호(1132-301)	15,841	21,752	20,152	25,442	22,849	2,697	13.4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23,980	27,739	27,401	29,904	28,628	1,227	4.5
1232 해양문화유산연구	11,686	14,231	14,181	14,375	13,336	△845	△6.0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1232-301)	4,045	3,670	3,670	4,530	4,059	389	10.6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 (1232-303)	7,641	10,561	10,511	9,845	9,277	△1,234	△11.7
123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19,982	22,128	22,707	32,859	21,604	△1,103	△4.9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1233-301)	12,125	15,899	16,478	32,859	21,604	5,126	31.1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1233-303)	7,857	6,229	6,229	0	0	△6,229	순감
1234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2,020	2,115	2,115	4,829	3,645	1,530	72.3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1234-301)	2,020	2,115	2,115	4,829	3,645	1,530	72.3
123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895	934	934	1,043	1,043	109	11.7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1235-501)	895	934	934	1,043	1,043	109	11.7
2132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15,196	24,445	24,445	46,165	38,678	14,233	58.2
사적관리(2132-301)	898	1,040	1,040	1,062	1,044	4	0.4
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	2,953	5,971	5,971	9,850	9,588	3,617	60.6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1,194	3,327	3,327	7,841	7,482	4,155	124.9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2132-306)	3,902	5,113	5,113	4,351	2,656	△2,457	△48.1
현충사유적관리(2132-307)	2,034	2,627	2,627	4,959	2,829	202	7.7
만인의총 시설관리 운영 (2132-309)	768	1,191	1,191	7,306	5,274	4,083	342.8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2132-310)	3,447	4,976	4,976	10,796	9,805	4,829	97.0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부여) (2132-312)	0	200	200	0	0	△200	순감
2133 자연문화재보호	1,242	2,375	2,375	6,583	2,764	389	16.4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2133-301)	1,242	2,375	2,375	6,583	2,764	389	16.4
2134 문화재보수정비	360,160	420,000	393,300	384,000	397,000	3,700	0.9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2134-701)	360,160	420,000	393,300	384,000	397,000	3,700	0.9
2135 유형문화재보존관리	7,782	7,249	7,189	16,744	10,585	3,396	47.2
유형문화재관리(2135-301)	3,327	3,233	3,173	3,481	3,018	△155	△4.9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 (2135-302)	1,655	1,272	1,272	10,519	4,573	3,301	259.5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2135-304)	2,800	2,744	2,744	2,744	2,744	0	0.0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신규) (2135-306)	0	0	0	0	250	250	순증
2231 궁능원종합정비	24,338	23,004	18,734	16,507	16,066	△2,668	△14.2
경복궁종합정비(2231-301)	15,021	11,108	6,838	6,082	5,782	△1,056	△15.4
덕수궁복원정비(2231-302)	3,141	3,155	3,155	7,330	7,330	4,175	132.3
영녕릉보존정비(2231-304)	6,176	8,741	8,741	3,095	2,954	△5,787	△66.2
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55,096	71,486	71,337	79,578	71,841	504	0.7
궁궐문화재관리운영(2232-301)	20,747	26,498	26,444	30,804	26,240	△204	△0.8
조선왕릉보존관리(2232-302)	23,336	32,590	32,495	37,323	34,434	1,939	6.0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전통양묘사업소운영(2232-304)	366	376	376	380	380	4	1.1
공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10,647	12,022	12,022	11,071	10,787	△1,235	△10.3
2233 공능원활용활성화	0	16,523	16,523	20,693	20,473	3,950	23.9
공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2233-301)	0	16,523	16,523	20,693	20,473	3,950	23.9
2332 매장문화재보존관리	4,018	4,081	8,276	19,273	16,925	8,649	104.5
매장문화재보존 (2332-301)	718	781	781	7,720	7,715	6,934	887.8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2332-302)	800	800	4,995	8,953	6,610	1,615	32.3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2332-304)	2,500	2,500	2,500	2,600	2,600	100	4.0
2334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1,805	1,749	1,749	3,508	3,508	1,759	100.6
문화재예방관리강화 (2334-301)	1,805	1,749	1,749	3,508	3,508	1,759	100.6
3102 문화재연구소 인건비	13,893	15,436	14,962	16,516	15,795	833	5.6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 (3102-101)	13,893	15,436	14,962	16,516	15,795	833	5.6
3118 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	2,277	2,558	2,558	2,635	2,585	27	1.1
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R&D)(3118-211)	1,688	1,759	1,759	1,792	1,742	△17	△1.0
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R&D) (3118-251)	589	799	799	843	843	44	5.5
333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70,889	87,943	80,993	93,899	88,475	7,482	9.2
문화재국제교류(3331-301)	1,008	1,034	1,034	1,223	1,222	188	18.2
문화재국제협력(ODA)(3331-302)	2,380	2,073	2,073	2,773	2,773	700	33.8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3331-303)	2,686	2,825	2,825	3,225	3,225	400	14.2
세계유산등재및관리(3331-304)	36,258	45,253	44,203	43,259	42,702	△1,501	△3.4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3331-305)	23,351	31,000	25,100	32,900	31,900	6,800	27.1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5,206	5,758	5,758	10,519	6,653	895	15.5
3431 문화재활용활성화	45,517	67,346	67,289	90,701	79,575	12,286	18.3
문화유산활용진흥(3431-301)	33,820	40,190	40,133	58,088	51,162	11,029	27.5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 (3431-304)	2,018	16,152	16,152	19,359	16,232	80	0.5
한국문화재단지원 (3431-306)	9,679	11,004	11,004	11,754	11,331	327	3.0
문화재사회적기업육성(신규) (3431-310)	0	0	0	1,500	500	500	순증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신규) (3431-312)	0	0	0	0	350	350	순증
3433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10,042	18,041	17,948	18,089	14,704	△3,244	△18.1
국립고궁박물관운영 (3433-301)	10,042	18,041	17,948	18,089	14,704	△3,244	△18.1
3502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4,912	5,458	5,280	5,667	5,667	387	7.3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502-102)	4,912	5,458	5,280	5,667	5,667	387	7.3
3518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1,058	1,120	1,120	1,107	1,107	△13	△1.2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3518-212)	231	261	261	284	284	23	8.8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3518-252)	827	859	859	823	823	△36	△4.2
3601 궁능유적본부인건비	0	14,829	14,451	15,868	15,081	630	4.4
궁능유적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601-101)	0	14,829	14,451	15,868	15,081	630	4.4
3618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0	736	736	1,047	1,047	311	42.3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3618-211)	0	193	193	206	206	13	6.7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3618-251)	0	543	543	841	841	298	54.9
7101 문화재청 인건비	50,030	41,750	40,843	44,677	42,705	1,862	4.6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7101-101)	43,595	34,489	33,730	36,908	35,329	1,599	4.7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7101-102)	6,435	7,261	7,113	7,769	7,376	263	3.7
7111 본청 기본경비	3,819	3,775	3,707	3,881	3,717	10	0.3
본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1-201)	1,144	1,230	1,230	1,235	1,230	0	0.0
공관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1-202)	107	0	0	0	0	0	0.0
본청 기본경비(7111-251)	2,369	2,545	2,477	2,646	2,487	10	0.4
공관리기본경비 (7111-257)	199	0	0	0	0	0	0.0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7118 소속기관 기본경비	3,263	3,000	3,000	3,085	2,924	△76	△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1)	183	195	195	195	195	0	0.0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2)	106	122	122	125	125	3	2.5
현충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4)	377	446	446	461	461	15	3.4
세종유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5)	20	0	0	0	0	0	0.0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6)	19	19	19	19	19	0	0.0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7)	69	73	73	73	73	0	0.0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8)	57	0	0	0	0	0	0.0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9)	19	19	19	19	19	0	0.0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7118-251)	1,402	1,417	1,417	1,462	1,397	△20	△1.4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7118-252)	127	127	127	131	110	△17	△13.4
현충사기본경비(7118-254)	397	388	388	399	344	△44	△11.3
세종유적기본경비 (7118-255)	70	0	0	0	0	0	0.0
칠백의총기본경비(7118-256)	83	80	80	82	77	△3	△3.8
무형유산원기본경비 (7118-257)	79	82	82	86	75	△7	△8.5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 (7118-258)	226	0	0	0	0	0	0.0
만인의총기본경비(7118-260)	29	32	32	33	29	△3	△9.4
7132 문화재행정제도개선	1,439	1,316	1,316	1,950	1,947	631	47.9
문화재 정책대변 (7132-301)	1,031	931	931	1,404	1,404	473	50.8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408	385	385	546	543	158	41.0
7133 본청운영경비	990	907	907	962	917	10	1.1
전산운영경비 (7133-303)	990	907	907	962	917	10	1.1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7134 문화재전자행정구축	3,938	5,626	5,626	35,572	17,716	12,090	214.9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7134-503)	3,938	5,626	5,626	35,572	17,716	12,090	214.9

사 업 명
(1)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1131-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5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김지성 042-481-4810	신성희 사무관	형은희
			김선국 사무관	안상재
			홍은영 사무관	이경화
			042-481-4815	042-481-4816
			042-481-4817	042-481-4819
			042-481-3115	042-481-311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보존관리 정책강화	788	6,383	6,383	9,058	14,152	7,769	121.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07	802	788 (786)		14	6,383	6,383	6,383	4,937 (4,917)	918	528	14,152
·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161	162	159		3	184	184	184	172		12	184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148	141	141			152	152	152	152			152
· 지자체 역량강화	159	157	150 (148)		7	169	169	169	169 (149)			169
· 문화재 정책개발	87	90	89		1	88	88	88	80		8	93
· 국제문화재산업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0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5,100	5,100	5,100	3,703	890	507	6,000
· 문화재 보존관리 건 립지원												5,664
· 정책연구용역	152	152	149		3	590	590	590	561	28	1	1,590
○ 비목별 분류(합계)	807	802	788 (786)		14	6,383	6,383	6,383	4,937 (4,917)	918	528	14,152
· 상용임금(110-03)	131	132	132			144	144	144	138		6	144
· 일용임금(110-04)	-					-	-	-				
· 일반수용비(210-01)	65	74	72		2	84	84	88	88			8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2		1	3	3	3	3			3
·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3	3	3			3
· 임차료(210-07)	17	15	15			30	30	30	30			30
·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 일반용역비(210-14)	49	42	42			49	49	45	45			49
· 국내여비(220-01)	41	35	35			31	31	31	23		8	31
· 국외업무여비(220-02)	21	21	17		4	21	21	21	21			1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3
· 일반연구비(260-01)						5,100	5,100	5,100	3,703	890	507	6,000
· 정책연구비(260-02)	152	152	149		3	590	590	590	561	28	1	1,590
· 포상금(310-03)	85	85	82		3	85	85	85	85			90
· 민간경상보조(320-01)												5,664
· 고용부담금(320-09)	24	24	23		1	27	27	27	21		6	28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00	200	200 (198)			200	200	200	200 (180)			400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한 문화재의 전문적, 체계적 보존관리 지원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애호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등 당면한 일자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문화유산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 증가를 문화유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 모색
- 미래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방향 모색 및 문화재청 역량강화 방안 강구 등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역량강화를 위해 거시적·선제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 정책업무 협의 활성화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정책추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7조**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상훈법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2조**
 -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의 원칙)
 -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 **문화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강구 및 미래전략 수립**
 - 국정과제(“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6],[17],[18] 등)

② 추진경위

<문화재위원회 운영>

- 연도별 심의현황[회의 횟수(회), 안전 처리(건)]

연도	회의 횟수	안전 처리	연도	회의 횟수	안전 처리	연도	회의 횟수	안전 처리
2001	72	1,807	2008	99	1,636	2015	86	1,868
2002	72	2,665	2009	86	1,698	2016	85	1,877
2003	75	2,697	2010	85	1,759	2017	80	1,749
2004	83	2,738	2011	80	1,653	2018	84	1,652
2005	72	2,626	2012	82	1,827	2019	81	1,558
2006	74	2,540	2013	80	1,953			
2007	81	2,346	2014	85	1,848			

<지자체역량강화-주민공감사업>

-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존 관리의 필요성 홍보 및 문화재와 더불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추진
 - 시작연도 : 2014년~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백만원)	150	100	100	100	100
지원 지자체 수	6	6	4	5	4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매년 문화유산 보존·활용·연구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 진작 도모,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훈장('05년~) : 5점('14년도까지 3점, '19년까지 6점)
 - 대통령표창('04년~) : 6점('17년도까지 5점)
 - 국무총리표창('18년~) : 2점('19년까지 1점)
 - *사업목적과 포상대상이 유사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포상('11년~, 대표 1, 국표 1)과 통합 포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위원회 운영(8개 분과 / 위원 : 75명, 전문위원 : 193명), 지자체 보조(신청·공모 / '20년 서울시 성북구 등 4개 지자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2) 국유문화재관리(1131-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국유문화재관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김지성	김윤수	나현선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78	677	672 (199)		5	645	645	645	615 (615)		30	1,346
· 국유재산(문화재) 보존관리	352	352	352			318	318	318	318			318
· 국유재산(문화재) 3차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	-	-	-	-	-	-	-	-	700
· 국유재산(문화재) 일반관리	116	115	110		5	117	117	117	97		20	117
· 국유재산(문화재) 경상보조	210	210	210 (199)			210	210	210	210 (200)		10	211
○ 비목별 분류(합계)	678	677	672 (661)		5 (11)	645	645	645	615 (615)			1,346
· 상용임금(110-03)	27	26	23.5		2.5	24.8	24.8	24.8	24.8			25.5
· 일반수용비(210-01)	62	62	61.2		0.8	65.6	65.6	65.6	64.6		10	64.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1	1	1			1
·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1	1	0		1	1.2
·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0.4	0.4	0.4	0.4			0.4
· 일반용역비(210-14)	352	352	352			318	318	318	318			1,018
· 국내여비(220-01)	16.2	16.2	15.3		0.9	16.2	16.2	16.2	8.2		8	16.2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	2	2			2	2	2	1		1	2
· 고용부담금(320-09)	5	5	5			5	5	5	5			5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10	210	210 (199)		(11)	210	210	210	210 (200)			211
· 자산취득비(430-01)	1	1	1			1	1	1	1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구역 내 국유재산 취득을 통한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
- 국유재산의 상시 관리를 통하여 국가재산권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정보 현실화 등을 통해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
-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통한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와 관리주체 일원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9조 (관리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체계적 DB화, 사유지 매입 및 교환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해소 및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 국유문화재 재산 중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가 곤란한 광활한 토지(임야)를 해당 시·군에 관리 위임함으로써 도벌, 무단점유 방지, 산불예방 등 문화재 및 동 보호구역 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733	768	666	668	6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지자체 6곳 (삼척, 영월, 부여, 전주, 경주, 고령)	100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항

사 업 명
(3)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1131-308)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8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지연 소장	강형도	손영찬
		055-211-9000	055-211-9050	055-211-900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	4,267	4,267	7,570	7,570	3,303	77.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267	4,267	4,267	946	272	3,049	7,570
·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	-	-	-	-	4,267	4,267	4,267	946	272	3,049	7,57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4,267	4,267	4,267	941	-	-	7,57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393	393	393	391	-	2	-
· 실시설계비(420-02)	-	-	-	-	-	787	787	787	548	232	7	-
· 공사비(420-03)	-	-	-	-	-	2,897	2,897	2,897	-	40	2,857	7,080
· 감리비(420-04)	-	-	-	-	-	183	183	183	-	-	183	465
· 시설부대비(420-05)	-	-	-	-	-	7	7	7	7	-	-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영·호남 가야문화권 전체의 대표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할 가야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발굴기록물들의 수집·보존·활용 수행
- 발굴기록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및 디지털화로 정보공개 서비스 수행
- 발굴기록 자료를 활용한 전시·체험·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1항
 -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17. 7.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채택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실천과제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채택('17.7.19.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발표)
☞ 연차별 이행계획에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명시

- 2018.12.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 2019.12.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구체화를 위한 심화연구 용역 완료
- 2020. 3.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20.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 가야역사문화센터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 2020. 7. 가야역사문화센터 건축설계 계약 및 설계 추진
- 2020. 11. 가야역사문화센터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 완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95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규모 :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0,1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 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1131-31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강화 문화재연구소	김인규 소장	김준호	김두희
		032-930-0010	032-930-0020	032-930-0022
	국립완주 문화재연구소	유재은 소장	태규욱	조현재
		063-290-9301	063-290-9302	063-290-930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	-	-	8,763	8,763	8,763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8,763
· 수도권 문화재 연구 센터 건립	-	-	-	-	-	-	-	-	-	-	-	1,015
·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	-	-	-	-	-	-	-	-	-	-	7,748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8,763
· 건설보상비(410-00)	-	-	-	-	-	-	-	-	-	-	-	7,696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	-	-	52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1,0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출토유물에 대한 신속한 보존처리 및 안전한 보관·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기반 강화
- 수도권역(서울·인천·경기) 및 전북권역 출토유물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문화권 조사·연구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반시설(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16.9.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건립 기본계획 용역 실시
- 2017.2.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
- 2018.8.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용역 실시
 - * 전북권역의 초기철기문화와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고분 유적, 후백제 도성·불교유적, 초기청자 생산유적 등 한반도 역사다양성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연구 시급
- 2019.7.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개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수도권문화재연구소 건립(해당없음), 전북문화재연구소 건립(299.2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규모
 - 수도권문화재연구소 건립 : 지상 4층(연면적 6,700㎡)
 - 전북문화재연구소 건립 :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7,5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 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1131-31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4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유산스마트보존활용기술개발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김지성	배준우	김소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042-481-4810	042-481-3115	042-860-913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문화유산스마트 보존·활용기술개발	-	-	-	7,875	7,875	7,875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7,875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	-	-	-	-	-	-	-	-	-	-	3,000
·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	-	-	-	-	-	-	-	-	-	-	4,500
· 연구개발사업관리	-	-	-	-	-	-	-	-	-	-	-	37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7,875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104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	-	-	-	-	-	1
· 임차료(210-07)	-	-	-	-	-	-	-	-	-	-	-	10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2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 (360-05)	-	-	-	-	-	-	-	-	-	-	-	7,500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스마트 보존기술 구현을 통한 문화유산 지능형 관리·활용 및 혁신 성장 산업 생태계 실현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현장 맞춤형 스마트 기술 개발 및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문화유산 원천 데이터의 지능형 활용을 위한 표준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가공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2(문화재연구개발)

- 문화재청장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7~'21)

- 추진전략 IV-3(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 연구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19~'23)

- 중점과제 4(문화재 수리기술 고도화)
 -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개발(R&D) 강화

▪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23)

- 전략 2(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 문화유산 기술 강국을 위한 R&D 로드맵을 수립, 과학기술 선도

▪ 국정과제 67-4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② 추진경위

주요 내용	기간
① 문화유산기술 개발 포럼 및 문화유산기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9. 1.~3.
② 문화유산기술 이슈 도출 및 문화유산 기술 아젠다 수립 ○ 문화유산기술 아젠다 도출, 비전·목표 설정 ○ 문화유산 기술수요 조사 실시 ○ 문화유산 기술 전문가 자문회의(3회) 검토·수정·보완 ○ 문화유산기술분류체계(안) 수립	'19. 3.~5.
③ 문화유산기술 개발(R&D) 기획사업 발굴 및 RFP 작성 ○ 사업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 면담을 통한 과제 발굴 ○ 문화유산기술 개발 추진 방향 설정	'19. 6.~'20. 3.
④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수립* * 2020년도 제10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20.5.13.)	'20. 5. 13.
⑤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20년도 제2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결('20.12.9.)	'20. 12. 9.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 사업규모 : 매년 10여개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사업(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대학, 출연연, 중소기업 등 산업체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호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사 업 명
(6) 무형문화재보호(1132-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문화재보호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0/50/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변지현	강재훈	우선희
		042-481-4960	042-481-4961	042-481-496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무형문화재 보호	15,841	21,752	20,152	25,442	22,849	2,697	13.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무형문화재보호	15,778	15,849	15,841 [13,315]		8	21,752	20,152	20,202	19,868 [17,062]		334	22,849
·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823	894	888		6	799	799	849	782		67	802
·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9,515	9,515	9,514		2	10,099	10,099	10,099	10,086		13	10,459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3,800	3,800	3,000			7,090	6,290	6,290	6,290		-	5,316
·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800	800	800			2,624	1,824	1,824	1,570		254	1,612
·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3,000
·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840	840	840			1,140	1,140	1,140	1,140			1,460
·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200
○ 비목별 분류(합계)	15,778	15,849	15,841		8	21,752	20,152	20,202	19,868 [17,062]		334	22,849
· 상용임금(110-03)	49	56	56		0.4	85	85	85	78		7	87
· 일반수용비(210-01)	225	239	239			227	227	240	240			22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	5	5		0.1	10	10	14	14			10
· 특근매식비(210-05)	7	2	2			7	7	1	1			7
· 임차료(210-07)	10	6	6			10	10	2	2		1	1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 일반용역비(210-14)	80	149	149			80	80	126	126			80
· 기타운영비(210-16)	1	1	1			1	1	1	1			1
· 국내여비(220-01)	73	78	78		0.1	72	72	72	60		12	72
· 국외업무여비(220-02)	40	26	26			40	40	40	-		40	40
·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17	17	17	17			17
· 일반연구비(260-01)	250	250	250			230	230	230	227		3	430
· 정책연구비(260-02)	50	50	45		5							
· 기타보전금(310-04)	9,515	9,515	9,514		2	10,099	10,099	10,099	10,086		13	10,459
· 민간위탁사업비(320-02)	840	840	840			2,170	2,170	2,170	2,170			1,552
· 고용부담금(320-09)	10	12	12		0.4	16	16	16	12		4	17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00	800	800			2,594	1,794	1,794	1,540 [1,194]		254	1,52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800	3,800	3,800			6,090	5,290	5,290	5,290 [2,830]			8,316
· 자산취득비(430-01)						3	3	3	3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조사 추진 등
-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등의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월정전수교육지원, 전승특별지원) 지원 등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한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시설 지원
-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전수교육관에서의 프로그램 추진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
-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예술인 행복주택, 생활SOC가 결합된 무형문화재 특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무형법 시행과 함께 확대된 신규분야 종목 중 전국적으로 전승된 종목 및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활성화 지원 등
-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무형유산의 거점별 가치 확산을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국가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10.17. 유네스코 총회 채택)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공개·전승활동 관련 규정
- ※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3.27. 공포/ 2016.3.28. 시행)

② 추진경위

-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국가무형문화재 보호 근거 마련
-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시 보조금 지원조항 신설)
- 1965년 전승활동 지원(구호비, 치료비 등)
- 1968년 60세 이상 보유자에게 생계보조금(월 3,000원) 지급 시작
- 1974년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작
- 198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 실시 규정 신설, 전수교육 소요 경비(전승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보유자 월 250,000원)

- 200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보유자 90→100만원 등)
- 2007년 보유단체 운영비 인상(100→120만원), 전수 장학생 장학금 인상(12→15만원),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 지원
- 2008년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의무조항 신설
- 2009년 월정전승지원금 인상 및 차등 지원 : 전승취약종목(50개 종목)(100→130만원)
- 2010년 전수교육관 건립 일반회계로 전환 ('05년 균특회계)
- 2013년 월정 전승지원금 약 25% 인상
- 201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5.3%, 단체종목 14.3%)
-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3.28. 시행)
- 2019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2.5%. 135만원)
- 국정과제(67-5)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
- 2019년 전통공예 공방개선 사업 추진('19년 신규, 지자체자본보조)
- 2020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11.1%. 150만원, 전승교육사 70만원)
- 2020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추진('20년 신규, 지자체경상보조)
- 2021년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추진('21년 신규, 지자체자본보조)
- 2021년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추진('21년 신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4~ 계속
- 사업규모
 - 국가무형문화재 7개 분야 148개 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등 전승자 7,000여명
 -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관 160여 개소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1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혜자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비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민간단체	정액(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조율
지자체 보조(경상/자본)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조율

사 업 명
(7)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유산원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5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김응례	장유진	이우진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무형유산원운영	23,980	27,739	27,401	29,904	28,628	1,227	4.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4,405	24,403	23,980		423	27,739	27,401	27,401	26,422	400	579	28,628
· 전승지원	10,604	10,604	10,602		2	11,831	11,727	11,727	10,425		250	12,745
· 조사연구기록	3,342	3,308	3,147		161	2,992	2,985	2,985	1,635		50	3,392
· 진흥활성화	5,742	5,767	5,767		0	7,560	7,333	7,333	3,672		150	7,050
· 시설관리 및 운영	4,717	4,724	4,464		260	5,356	5,356	5,356	2,916	400	129	5,441
○ 비목별 분류(합계)	24,405	24,403	23,980		423	27,739	27,401	27,401	26,422	400	579	28,628
· 상용임금(110-03)	2,248	2,240	2,122		118	2,217	2,217	2,217	2,160		57	2,358
· 일용임금(110-04)	62	62	62		0	112	112	112	98		14	112
· 일반수용비(210-01)	2,315	2,315	2,295		20	2,536	2,381	1,992	1,945		47	2,81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11	670	625		45	811	811	627	606		21	741
· 피복비(210-03)	39	39	39		0	39	39	39	39			39
· 특근매식비(210-05)	22	18	15		3	22	22	12	12			22
· 임차료(210-07)	214	91	87		4	214	214	58	58			194
· 유류비(210-08)	23	23	6		17	13	13	13	5		8	1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42	805	802		3	722	722	1,231	827	400	4	772
· 재료비(210-12)	181	162	161		1	181	181	153	147		6	181
· 복리후생비(210-12)	30	30	30		0	32	32	32	30		2	32
· 일반용역비(210-14)	3,874	4,003	3,962		41	4,378	4,378	4,636	4,584		52	3,968
· 관리용역비(210-15)	549	538	492		46	589	589	589	587		2	589
· 기타운영비(210-16)	2	2	1		1	7	7	7	6		1	7
· 국내여비(220-01)	128	136	132		4	175	175	175	85		90	175
· 국외업무여비(220-02)	85	92	92		0	85	3	3	3			76
·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0	20	19	19	1		18	2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0	3	3	3	1		2	3
· 일반연구비(260-01)	910	910	799		111	780	780	780	745		35	780
· 정책연구비(260-02)	50	50	43		7	40	40	40	39			-
· 민간경상보조(320-01)	3,181	3,181	3,180 [3,180]		1	2,410	2,410	2,410	2,410			1,33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7,189	7,189	7,189		0	9,440	9,340	9,340	9,140		200	11,262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고용부담금(320-09)	399	396	396		0	419	419	419	419			45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	100	100 [100]		0	500	500	500	500			500
· 실시설계비(420-02)						73	73	73	73			13
· 공사비(420-03)	116	116	116		0	861	861	861	842		19	1,061
· 시설부대비(420-05)	4	4	4		0	4	4	4	4			4
· 자산취득비(430-01)	1,106	1,106	1,105		1	956	956	956	956			1,006
· 무형자산(440-00)	100	100	100		0	100	100	100	100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승지원)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지원, 기·예능분야 전승 및 활성화 지원,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수행
- (조사연구기록)무형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중심 기관으로 무형유산 자료 수집·보존·연구·아카이브 구축 등 수행
- (진흥활성화)무형유산 교육·체험·공연·전시 서비스 제공으로 무형유산 인지도 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시설관리 및 운영)무형유산원 기관 및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행정지원인력 운영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1조(당사국의 역할)
 - 자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국정과제 67-5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영산재 등 인류무형유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② 추진경위

- 20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20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20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20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2과 14명) → 고위공무원(나급) 기관(4과 40명)
-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3.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무형문화재 전승자(6,987명) 및 보유단체(70곳), 무형유산원 시설(부지면적 61,923㎡, 연면적 29,828㎡, 7개동(공연, 전시, 교육, 아카이브, 국제회의장 등), 지하 1층/지상5층), 일반국민, 불교 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민간, 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보유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재)대한불교조계종 등
- 사업 수혜자 : 전승자 및 전승단체,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민간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재)대한불교조계종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1)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1232-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132	301
명칭	해양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임형진 061-270-2081	김병근연구관 061-270-2082	김혜정 061-270-2091
	전시홍보과	신종국 061-270-2041	정창운연구관 061-270-2042	이유민 061-270-2050
	기획운영과	김중수 061-270-2021	심유신사무관 061-270-2030	이광수 061-270-203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4,045	3,670	3,670	4,530	4,059	389	10.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 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953	4,108	4,045		63	3,670	3,670	3,670	3,474		196	4,059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584	580	554		26	698	698	698	558		140	812
·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205	205	205			204	204	204	204			204
·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116	116	116			116	116	116	98		18	116
· 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활용	2,087	2,246	2,221		25	1,614	1,614	1,614	1,591		24	2,081
· 해양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92	92	92			174	174	174	174			174
· 국제교류·교육· 홍보·자료실 운영	204	204	204			205	205	205	205			205
· 시설 및 전산관리	455	455	443		12	459	459	459	444		14	467
· 해양역사문화 복합공간조성						200	200	200	200			-
· 직원 관사 임차	210	210	210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3,953	4,108	4,045		63	3,670	3,670	3,670	3,474		196	4,059
· 상용임금(110-03)	371	363	342		21	369	369	369	369			382
· 일용임금(110-04)	25	25	25			25	25	25	24		1	28
· 일반수용비(210-01)	352	530	528		2	335	335	425	424		1	36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0	54	54			96	96	51	51			83
· 피복비(210-03)	17	17	13		5	18	18	8	8			18
· 특근매식비(210-05)	5	5	2		2	5	5	1	1			7
· 임차료(210-07)	55	67	67			39	39	34	34			32
· 유류비(210-08)	42	42	29		13	157	157	157	17		140	15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	23	22		1	2	2	2	2			2
· 재료비(210-11)	7	7	7			5	5	5	5			5
· 복리후생비(210-12)	6	6	6			5	5	5	5			5
· 일반용역비(210-14)	1,732	1,588	1,587		1	1,663	1,663	1,447	1,447			1,823
· 관리용역비(210-15)	97	97	85		12	106	106	96	96			126
· 국내여비(220-01)	58	62	62			58	58	58	57		1	56
· 국외업무여비(220-02)	40	36	36			40	40	40	0		40	3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9	9	9			10	10	10	10			9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
· 고용부담금(320-09)	68	68	68			70	70	70	70			73
· 실시설계비(420-02)	35	35	30		5	30	30	30	29		1	50
· 공사비(420-03)	630	726	726			500	500	500	489		11	260
· 감리비(420-04)		7	7			-	-	-	-			-
· 시설부대비(420-05)	7	7	6		1	7	7	7	6		1	7
· 자산취득비(430-01)	124	124	124			130	130	130	130			533
· 무형자산(440-00)	210	210	210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문화재의 핵심인 수중 발굴 고선박과 전통선박 연구를 통해 선박발달사 및 항해 기술 규명
- 수중발굴유물 및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존·활용방안 마련
- 교육·홍보·전시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확보
-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재 발굴·연구·전시·홍보 기관으로서 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종합정리, 전시,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의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시·교육으로의 활용과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해양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13조의2(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문화재보호법』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 『무형문화재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치), 제29조(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제5조(적용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3.21 개정, 법률 제14613호) 제13조(기록관), 『같은 법 시행령』 (‘18.1.1, 대통령령 제27460호 일부개정) 제10조(기록관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17.9.22, 행정안전부령 제11호) 제2조
-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17.9.29, 훈령 제446호) 제3조 (문화재청기록관의 소속)

② 추진경위

- '94. 5. 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3.15 : 해양유물연구과, 전시홍보과 신설(대통령령 제1998호)

- '09. 4.2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기관명칭 변경 (연구기능 강화)
- '16. 3. 1 : 책임운영기관 전환
- '17. 6.20 : 직제개편(고위 5과/72명, 대통령령 제28124호) 수중문화재에 대한 시설관리, 보존·복원 및 전시·교육인력 충원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추진
 - '16. 7.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시 '연구정보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10대 전략과제에 선정
 - 해양유물의 전시 및 홍보,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유물의 구입·대여·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제 학술교류, 학술도서 및 자료의 발간·배포, 그 밖의 해양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업무로 함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박물관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국제공동연구
 - 해양문화유산 소장품 국가귀속 및 등록관리(508㎡ / 54,083점)
 - 해양문화유산 전시·활용(18,872㎡ / 6,353점)
 - 국제교류·홍보·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
 - 전시관, 보존처리 시설 유지보수 관리(7동 / 9,946㎡)
 - 해양역사문화 복합공간 조성(28,3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해양문화유산 관련자 등

사 업 명
(2)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1232-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심영섭	양순석 연구관	박정선 주무관
		061-270-2061	061-270-2063	061-270-207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이주헌	김동훈 연구관	김범준 주무관
		041-419-7010	041-419-7020	041-419-7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임형진	김병근 연구관	김혜정 주무관
		061-270-2081	061-270-2082	061-270-209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7,641	10,561	10,511	9,845	9,277	△1,234	△11.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248	8,368	7,641		727	10,561	10,511	10,511	9,239	54	1,218	9,277
·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2,388	2,453	2,352		101	2,593	2,573	2,573	2,375		198	3,635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483	472	472		0	493	493	493	406	54	33	894
·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 국제교류	42	42	37		5	42	42	42	0		42	-
· 충청·경기관 수중문화 재 발굴 및 탐사	749	749	733		16	1,661	1,631	1,631	1,450		181	1,691
· 충청·경기관 유물 보존 처리 및 분석	309	309	267		42	3,184	3,184	3,184	2,801		383	239
· 충청·경기관 해양문화 유산 전시환경 구축 및 전시·교육	2,541	2,541	2,531		10	796	796	796	687		109	556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 관 시설관리	1,736	1,802	1,249		553	1,792	1,792	1,792	1,520		272	2,262
○ 비목별 분류(합계)	8,248	8,368	7,641		727	10,561	10,511	10,511	9,239	54	1,218	9,277
· 상용임금(110-03)	1,084	1,023	925		98	1,263	1,263	1,263	1,174		89	1,308
· 일용임금(110-04)	690	690	666		24	615	615	615	458		157	615
· 일반수용비(210-01)	710	913	887		26	662	612	687	665		22	57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57	280	229		51	509	509	429	240		189	440
· 피복비(210-03)	39	39	38		1	43	43	43	33		10	40
· 특근매식비(210-05)	12	12	2		10	10	10	10	1		9	6
· 임차료(210-07)	113	157	156		1	192	192	117	89		28	135
· 유류비(210-08)	599	599	367		232	483	483	428	225		203	45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65	736	726		10	889	889	949	936		13	878
· 재료비(210-11)	106	120	116		4	128	128	128	102		26	118
· 복리후생비(210-12)	17	17	5		12	18	18	18	15		3	18
· 일반용역비(210-14)	613	643	575		68	1,310	1,310	1,330	1,320		10	1,414
· 관리용역비(210-15)	-	96	74		22	-	-	-	-		-	-
· 국내여비(220-01)	210	210	160		50	216	216	216	97		119	212
· 국외업무여비(220-02)	25	25	20		5	25	25	25	-		25	2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3	13	13		-	12	12	12	9		3	12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60
· 배상금(310-02)	-	-	-	-	-	-	-	55	54	-	1	-
· 고용부담금(320-09)	260	260	195	-	65	285	285	285	283	-	2	312
· 실시설계비(420-02)	154	154	118	-	36	-	-	-	-	-	-	27
· 공사비(420-03)	1,000	1,000	988	-	12	2,946	2,946	2,946	2,640	-	306	466
· 감리비(420-04)	-	-	-	-	-	44	44	44	43	-	1	7
· 시설부대비(420-05)	-	-	-	-	-	10	10	10	9	-	1	-
· 자산취득비(430-01)	1,381	1,381	1,381	-	-	901	901	901	846	54	1	2,1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충청·경기권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국내 유일의 수중 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 강화, 수중문화재조사 전용선박(2척) 운용·관리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충청·경기권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수중발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유물의 복원
-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 국제교류)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분야 국제교류 운영
- (충청·경기권 해양문화유산 전시환경 구축 및 전시·교육)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관리)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운영을 위한 건물, 시설 등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32조(가지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제5조(적용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

② 추진경위

- '81.08.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 개설
- '90.01.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개소
- '94.05.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으로 직제개편
- '94.12.1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관, 전시·사회 교육사업
- '02.~현재 : 본격적인 자체 수중발굴 시작
- '07.03.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04.2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0.05.25 : 직제개편(고위, 4과/46명 ⇒ 고위, 4과/50명)
- '11.06.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3.05.30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누리안호) 발굴현장 운영 시작
- '17.06.20 : 직제개편(고위, 4과/64명 ⇒ 고위, 5과/73명)
서해문화재과 신설(충청·경기권역 조사·보존·전시·교육 사업 시작)
- '18.12.14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관(서해문화재과 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수중발굴조사, 학술탐사 및 유물확인해역 집중탐사, 유물신고해역탐사, 조사선박 2척 운용
 -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 노후 보존·분석장비 선진화
 - 4개국 4기관 인적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
 - 충청·경기권 수중발굴조사, 유물확인해역 등 탐사
 - 충청·경기권 수중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 충청·경기권 해양문화유산 관리, 전시·활용, 교육·운영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 운영·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서해문화재과, 해양유물연구과(보존처리)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발굴기관·관련기관 및 관계전문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1233-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3	한국전통문화	일반회계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이상협	박지영	김대환
		041-830-7200	041-830-7220	041-830-722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12,125	15,899	16,478	32,859	21,604	5,126	3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143	12,296	12,125	86	85	15,899	16,478	16,609	15,730	467	412	21,604
· 학부과정 운영	4,616	4,651	4,593	47	11	5,094	5,034	5,477	5,221		256	7,374
· 대학원과정 운영	1,735	1,595	1,595			3,582	3,582	3,031	3,026		5	3,582
· 학사운영 지원	1,457	1,583	1,577		6	1,709	1,608	1,608	1,560		48	1,609
· 시설관리	3,812	3,944	3,851	39	54	4,973	5,713	5,952	5,384	467	101	8,498
· 학술정보관 운영	523	523	509		14	541	541	541	539		2	541
○ 비목별 분류(합계)	12,143	12,296	12,125	86	85	15,899	16,478	16,609	15,730	467	412	21,604
· 상용임금(110-03)	3,594	3,655	3,650		5	3,921	3,921	3,936	3,934		2	4,180
· 일용임금(110-04)	61	61	61			61	61	91	88		3	61
· 일반수용비(210-01)	1,951	1,961	1,960		1	2,596	2,436	2,386	2,384		2	2,543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1	176	175		1	191	191	390	390			441
· 특근매식비(210-05)	13	10	10			13	13	10	9		1	13
· 임차료(210-07)	135	135	134		1	135	135	119	119			13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8	64	64			68	68	73	73			68
· 재료비(210-11)	271	269	268		1	338	338	376	376			338
· 복리후생비(210-12)	32	29	28		1	88	88	39	39			36
· 일반용역비(210-14)	-	26	26			160	160	38	38			80
· 관리용역비(210-15)	38	38	38		1	38	38	38	38			38
· 기타운영비(210-16)	96	96	96			96	96	94	94			96
· 국내여비(220-01)	67	71	70		1	71	71	81	36		45	67
· 국외여비(220-02)	54	40	40			54	54	44	8		36	49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11	10	10	10			10
· 일반연구비(260-01)		0	0			20	240	240	220		20	-
· 포상금(310-03)		0	0			12	12	12	12			12
· 기타보전금(310-04)	378	378	378			378	378	378	378			378
· 고용부담금(320-09)	421	421	421			740	740	740	520		220	621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00	100	70		30	100	100	100	85		15	100
· 실시설계비(420-02)	20	112	111		1	740	740	740	739		1	20
· 공사비(420-03)	2,837	2,837	2,761	45	31	2,827	2,999	3,044	2,524	467	53	8,682
· 감리비(420-04)	80	80	28	41	11	-	0	41	41			388
· 시설부대비(420-05)	4	4	4			7	7	7	-		7	14
· 자산취득비(430-01)	1,721	1,721	1,721			3,234	3,582	3,582	3,575		7	3,2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운영, 학사운영 지원, 시설관리, 대학도서관 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4조(설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 학술종합정보관 개관
- 2002. 3. 4 :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 학과 정원 560명 개설 완료
- 2008. 5. 13 : 학술종합정보관 종합정보자료실 개실
- 2012. 7. 15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
- 2012. 11. 30 : 학술정보관 증축공사 완료(1,880㎡)
- 2013. 3. 4 : 대학원 개원

- 추진배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4년제 국립대학으로 설립(개교 2000년 3월)
- 문화재정책 중장기비전 '문화유산 2011'의 핵심과제인 '핵심역량 강화'의 3개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 과제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 내실화·고도화 세부 추진과제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 학부 운영 : 560명 * 매년 140명 선발
 - 대학원 운영 : 220명('19년 기준) * 매년 석·박사과정 100명 선발
 - 시설관리 : 부지 225,478m²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41동(62,060m²)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사 업 명

(4)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12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전통문화교육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1
명칭	문화유산 교육연구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남상범	임은경	최영준
		041-830-7820	041-830-7822	041-830-782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2,020	2,115	2,115	4,829	3,645	1,530	72.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068	2,064	2,020	0	44	2,115	2,115	2,070	1,916	0	154	3,645
· 초빙강사료 및 교육운영지원(특안근비 등)	1,032	961	924	0	37	1,047	1,047	896	857	0	39	1,102
· 교육운영	619	697	697	0	0	571	571	666	666	0	0	571
· 교육개발·연구	130	130	125	0	5	110	110	190	187	0	3	775
· 시설 및 기자재	100	100	100	0	0	75	75	75	74	0	1	75
· 경상경비	187	176	174	0	2	312	312	243	132	0	111	312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운영	-	-	-	-	-	-	-	-	-	-	-	810
○ 비목별 분류(합계)	2,068	2,064	2,020	0	44	2,115	2,115	2,070	1,916	0	154	3,645
· 상용임금(110-03)	785	769	741	0	28	800	800	746	707	0	39	402
· 일용임금(110-04)	5	17	8	0	9	5	5	14	14	0	0	5
· 일반수용비(210-01)	554	589	589	0	0	541	541	483	483	0	0	1,45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	8	8	0	0	14	14	9	9	0	0	44
· 특근매식비(210-05)	7	3	3	0	0	6	6	2	2	0	0	6
· 임차료 (210-07)	107	107	107	0	0	97	97	72	72	0	0	13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10	10	0	0	9	9	9	9	0	0	9
· 재료비 (210-11)	200	176	176	0	0	175	175	163	163	0	0	255
· 복리후생비(210-12)	2	2	2	0	0	12	12	0	0	0	0	6
· 일반용역비(210-14)								84	84			
· 국내여비(220-01)	40	40	39	0	1	40	40	40	32	0	8	40
· 국외업무여비(220-02)	48	48	48	0	0	48	48	0	0	0	0	48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0	0	12	12	12	12	0	0	12
· 일반연구비(260-01)	130	130	125	0	5	110	110	190	187	0	3	775
· 포상금(310-03)	23	23	22	0	1	20	20	20	20	0	0	20
· 고용부담금 (320-09)	29	29	29	0	0	151	151	151	48	0	103	77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0	0	-
· 공사비(420-03)	20	20	20	0	0	18	18	18	17	0	1	118
· 자산취득비(430-01)	80	80	80	0	0	57	57	57	57	0	0	2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문화재 분야 종사자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 전문과정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양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전통문화교육원 건립(2005 ~ 2007.12. 완공)
 - 전통기능교육센터 건립(2012. 3. 개원)
 - 교육과정 운영(2008~)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과정별 수료생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통기능교육	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53	78	107	110	114	125	124	128
단기 집합교육	직무교육과정	674	1,209	866	978	618	676	654	641
	전문교육과정	482	459	837	608	707	369	345	331
	국제교육 협력과정	11	16	14	12	13	12	13	-
	사회교육 과정	72	91	66	16	-	-	26	-
이러닝	이러닝	3,119	6,750	10,294	10,391	6,864	8,692	11,866	13,520
수료생 합계		4,411	8,603	12,184	12,115	8,316	9,874	13,028	14,62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교육과정 72과정(298회) 운영
 - ※ 2019년 수료기준 : 수리기능인 22종목, 직무 20과정, 전문 6과정, 국제 1과정, 사회 1과정, 사이버 22과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문화재 담당공무원, 문화재수리업체 및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1235-5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3	한국전통문화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5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이상협	유정민 교수	지재학
		041-830-7200	041-830-4755	041-830-714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정보전산센터운영	895	934	934	1,043	1,043	109	11.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94	906	895		11	934	934	934	912		22	1,043
· 스마트 캠퍼스 구축	391	391	391			339	339	339	339			235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27	27	27			65	65	65	64			154
· 정보전산센터경상운영	476	488	477		11	530	530	530	509			654
○ 비목별 분류(합계)	894	906	895		11	934	934	934	912			1,043
· 상용임금(110-03)	53	65	64		1	65	65	65	50		15	67
· 일반수용비(210-01)	16	16	16			14	14	14	14			13
· 공공요금및체제(210-02)	46	46	46			70	70	70	70			87
· 임차료(210-07)			-									69
· 복리후생비(210-12)	1	1	-		1	1	1	1			1	1
· 관리용역비(210-15)	234	234	225		9	253	253	253	248		5	289
· 국내여비(220-01)	1	1	1			1	1	1	1			1
· 일반연구비(260-01)						180	180	180	179		1	
· 고용부담금(320-09)	11	11	11			12	12	12	12			13
· 자산취득비(430-01)	532	532	532			338	338	338	338			5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 교육행정, 대학경영, 학술정보 관리 등 업무전산화
- 학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컴퓨터 실습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대학은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 5월 : 전자계산소 개소
- 2001년 : 학사행정시스템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 2003년 : 모바일캠퍼스시스템 구축, 이중 방화벽시스템 구축
- 2004년 : 학술정보관 통합(전자계산소,중앙도서관), 학사행정시스템
- 2006년 : 정보보호 및 QoS 시스템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시행
- 2008년 : 개인정보보호 및 학사통합/교원업적관리시스템 구축
- 2009년 : 중장기 정보화 발전방안(ISP) 수립 e-포트폴리오 등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10년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2차) 추진
- 2011년 : 캠퍼스 무선랜 등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 2012년 : 대학원 입시 및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 2013년 : 전산기계실 확장이전 및 운영기반 마련, 통합전산실습실 구축
- 2014년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현장실습관리시스템/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2015년 : 자료유출방지(DLP)시스템 및 서버가상화 서비스 구축
- 2016년 :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고도화(반응형 웹 구축)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2017년 : DDoS/무선위협 차단시스템 및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구축(1차)
- 2018년 : 지능형 지속 공격 대응 장비 도입 및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구축(2차)
- 2019년 : 서버가상화 시스템 용량 증설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학사운영(대학 7개학과 560명, 대학원 5개학과 190명), 학사행정(1처 1원 5과, 부속기관 9), 전통문화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 서비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교직원, 전통문화 관심 예비대학생 등

사 업 명

(1) 사적관리(2132-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사적관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김동하	박판용	김도형
		042-481-4830	042-481-4831	042-482-483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사적관리	898	1,040	1,040	1,062	1,044	4	0.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55	1,025	898	0	127	1,040	1,040	872	788	0	84	1,044
· 사적 보존·관리	537	537	464	0	43	554	554	484	422	0	62	658
· 사적 관리방안 및 역사문화환경 관리 개선 연구	518	488	434	0	84	486	486	388	366	0	22	386
○ 비목별 분류(합계)	1,055	1,025	898	0	127	1,040	1,040	872	788	0	84	1,044
· 상용임금(110-03)	96	100	100	0	0	110	110	108	107	0	1	118
· 일반수용비(210-01)	269	261	209	0	52	270	270	200	197	0	3	26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	3	2	0	1	3	3	3	2	0	1	3
· 특근매식비(210-05)	10	10	5	0	5	10	10	10	4	0	6	9
· 임차료(210-07)	10	14	14	0	0	10	10	10	3	0	7	10
· 복리후생비(210-12)	2	2	2	0	0	2	2	2	2	0	0	2
· 일반용역비(210-14)												100
· 국내여비(220-01)	96	100	97	0	3	95	95	95	78	0	17	95
· 국외업무여비(220-02)	27	23	17	0	6	27	27	27	0	0	27	27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	6	6	0	0	6	6	6	5	0	1	6
· 일반연구비(260-01)	518	488	434	0	54	486	486	388	366	0	22	386
· 고용부담금(320-09)	18	18	12	0	6	21	21	23	23	0	0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적보존·관리) 동 내역사업은 문화재(사적) 지정·해제, 현상변경제도 운영·관리 및 제도개선,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검토,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을 지원하는 것임
- (사적 관리방안 및 역사문화환경 관리 개선 연구) 동 내역사업은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44조(정기조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적 지정·정비 및 실태조사,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검토,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추진('64년)
-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문화재 주변 지역의 바람직한 경관 관리 구현으로 효과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4년 ~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보존·관리(502건), 사적 유형별 매뉴얼 마련, 사적 정기조사,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운영), 현상변경 처리 및 허용기준 마련, 사적 실측 및 DB구축, 역사문화환경관리기준 개선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5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7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보존육성과 ▫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단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추진단 	이재필 곽창용 곽수철 042-481-3100 054-777-6718 041-852-9723	정규연 이순미 주충효 042-481-3101 054-777-6719 041-852-9724	문정운 김유리 박상익 042-481-3102 054-777-6723 041-852-97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고도보존 및 육성	2,953	5,971	5,971	9,850	9,588	3,617	60.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128	3,080	2,953		127	5,971		6,139	6,067			9,588
· 고도기반 구축운영	266	187	151		36	273		465	455			274
· 고도핵심유적정책운영	544	574	484		90	574		550	512			574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118	2,118	2,118 [470]		0	3,524		3,524	3,524 [1,793]			5,600
· 고도역사도시조성	200	200	200 [165]		0	1,600		1,600	1,600 [1,225]			3,140
○ 비목별 분류(합계)	3,128	3,080	2,953		127	5,971		6,139	6,067			9,588
· 상용임금(110-03)	23	25	23		2	29		29	24			30
· 일반수용비(210-01)	416	302	229		73	412		279	276			392.6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2	12	4		8	12		6	6			12
· 특근매식비(210-05)	7	7	1		6	7		1	1			7
· 임차료(210-07)	45	45	19		26	45		35	35			45
·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0	0.4		0.4	0.4			0.4
· 일반용역비(210-14)	120	79	79		0	120		161	153			142
· 국내여비(220-01)	70	77	76		2	75		75	70			73
· 국외업무여비(220-02)	20	17	17		0	20		20	0			20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0	11		11	11			10
· 일반연구비(260-01)	70	170	161		10	100		363	354			100
· 고용부담금(320-09)	4	4	4		0	6		6	2			6
· 자차단체 경상보조(330-01)	200	200	200 [165]		0	200		200	200 [180]			200
· 자차단체 자본보조(330-03)	2,118	2,118	2,118 [470]		0	4,924		4,924	4,924 [2,853]			8,540
· 자산취득비(430-01)	10	10	9		1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거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였던 고도(古都 : 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 특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고도 이미지를 창출하여 고도의 가치제고 및 주민생활 개선
 - (고도기반 구축·운영)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 고도 정책연구 및 경상운영비
 - (고도 핵심유적 정책·운영)신라왕경 및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책연구 및 경상운영비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한옥·담장·옛길·역사자원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통한 역사도시 이미지 찾기
 - (고도(古都)역사도시조성) 고도지정지구육성 및 고도주민활동지원 사업을 통한 고도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사업 비용)

※ 용어 정의(법 제2조)

- (고도)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
- (고도보존육성사업)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민지원사업)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② 추진경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5 공포) 및 시행('05.3.6)
- 고도 관리 정부정책 전환('11.7.21) : 고도 보존 → 고도 보존 + 육성

개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 '11.7.21, 시행 '12.7.22)

- 고도 지구 지정 완료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12.3.5)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14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628호, '14.4.28)→(특별법 '19.12.10)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17년~)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700호, '17.12.5)

- 고도 지정지구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17년, '20년)

고도 지정지구 현황 (단위:만㎡)					
구분	경주 (2017.9월 변경)	공주 (2020.6월 변경)	부여 (2017.12월변경)	익산 (2017.2월 변경)	계
특별보존지구	255.3	267.6	155.0	179.6	857.5
보존육성지구	105.3	156.3	125.3	128.9	515.8
계	360.6	423.9	280.3	308.5	1373.3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5~계속
- 사업규모 : 고도(古都 : 경주·공주·부여·익산/고도지정지구 1,373만㎡ 포함)대상
고도보존육성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보조율 국비 50%, 7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고도(古都; 경주·공주·부여·익산)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고도 거주 주민 및 관광객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고도 자치단체 보조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5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

사 업 명

(3)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3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문화재수리기술진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이정연	오택근	전재일
		042-481-4860	042-481-4861	042-481-486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수리기술진흥	1,194	3,327	3,327	7,841	7,482	4,155	124.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상액	불용액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49	1,298	1,194	77	27	3,327	3,327	3,327	3,170	50	107	7,482
· 건축문화재 교류협력	44	44	44			44	44	44			44	4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 등	67	67	67			167	167	167	167			67
· 문화재수리 기준 제 정 및 기술(기능)자 지원 등	699	748	721		27	1,077	1,077	1,077	1,003	50	24	1,132
· 국고보조사업 설계 심사 및 기술지도	239	239	239			239	239	239	200		39	239
· 문화재수리재료센 터 건립	200	200	123	77		1,800	1,800	1,800	1,800			6,000
○ 비목별 분류(합계)	1,249	1,298	1,194	77	27	3,327	3,327	3,327	3,170	50	107	7,482
· 상용임금(110-03)	55	52	51			55	55	55	48		7	56
· 일반수용비(210-01)	229	187	187			232	232	192	160		32	24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9	18	18		1	9	9	9	9			9
· 특근매식비(210-05)	6	6	3		4	6	6	6	6			6
· 임차료(210-07)	15	27	26			15	15	26	13		13	15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 일반용역비(210-14)		21	21					29	29			
· 국내여비(220-01)	88	73	65		8	87	87	87	68		19	83
· 국외여비(220-02)	22	22	22			22	22	22			22	20
· 관서업무비(240-02)	10	10	10			10	10	10	9		1	8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100	50	50		494
· 정책연구비(260-02)	320	388	388			446	446	446	440		6	
· 포상금(310-03)	14	14	2		12	14	14	14	14			14
·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200	200			200
·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262	262	262			312	312	312	312			312
· 고용부담금(320-09)	10	10	9		1	10	10	10	3		7	11
· 건설보상비(410-01)						1,000	1,000	1,000	1,000			2,66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200	200	123	77								
· 실시설계비(420-02)						800	800	800	800			217
· 공사비(420-03)												2,900
· 감리비(420-04)												160
· 시설부대비(420-05)												63
· 자산취득비(430-01)	8	8	8			8	8	8	8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2.3)에 따라 제도 개선한 정책(기술, 기준, 전통 재료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및 문화재수리업 발전 도모
-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을 통해 전통수리기법과 기능의 맥을 전수하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기술력 향상 및 자긍심 고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재수리 등의 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및 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 보호활동의 지원 등)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152호/'15.9.14)
-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69호/'16.9.19)
-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05.11.3)

○ 추진경위

- 직제개편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중요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전담부서 신설('09.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기능 맥 전승을 위한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보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지원, 문화재수리자격제도 운영, 문화재기능인작품전 및 문화재기능교육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사 업 명

(4)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2132-30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6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음자	국고보조율(%)	음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류시영 소장 041-753-8701	고민선 041-753-870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3,902	5,113	5,113	4,351	2,656	△2,457	△48.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941	3,953	3,902	33	18	5,113	5,113	5,126	4,510		616	2,656
·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61	61	61			61	61	61	40		20	61
· 칠백의총 경상관리	472	484	482		2	1,136	1,136	1,116	1,107		9	1,360
·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3,408	3,408	3,359	33	16	3,916	3,916	3,949	3,363		586	1,235
○ 비목별 분류(합계)	3,941	3,953	3,902	33	18	5,113	5,113	5,126	4,510		616	2,656
· 상용임금(110-03)	163	175	175			380	380	380	379		1	403
· 일용임금(110-04)	83	65	65			111	111	111	109		2	111
· 일반수용비(210-01)	77	82	82			160	160	124	119		5	14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5	28	28			87	87	34	34		-	87
· 특근매식비(210-05)	3	3	3			4	4	4	4		-	4
· 임차료(210-07)	16	15	15			16	16	16	14		2	16
· 유류비(210-08)	4	4	3		1	4	4	4	3		1	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8	41	41			79	79	152	141		11	79
· 재료비(210-11)	23	23	23			23	23	24	24		-	23
· 복리후생비(210-12)	4	4	4			5	5	5	4		1	5
· 일반용역비(210-14)	-	-	-			-	-	11	11		-	-
· 관리용역비(210-15)	52	42	42			82	82	66	63		3	82
· 국내여비(220-01)	6	6	5		1	7	7	7	7		-	5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3	3	3		-	2
· 고용부담금(320-09)	30	48	48			72	72	72	68		4	78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68
· 실시설계비(420-02)	16	16	13		3	22	22	22	22		-	191
· 공사비(420-03)	3,065	3,065	3,052		13	3,946	3,946	3,946	3,367		579	1,294
· 감리비(420-04)	314	314	281	33		20	20	53	51		2	11
· 시설부대비(420-05)	8	8	8			7	7	7	3		4	2
· 자산취득비(430-01)	11	11	11			85	85	85	84		1	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칠백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 및 위업 선양
- (칠백의총 경상관리)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 등을 통한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도모 및 대국민 관람서비스 향상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적지 내 경건한 분위기 조성, 관람환경 개선 및 항일 유적지로서의 위상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1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칠백의총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관람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칠백의사 순의 제향행사 거행, 칠백의총 관람환경 개선 및 유적종합정비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5) 현충사 유적관리(2132-307)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7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현충사 유적관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이재훈	김지나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현충사 유적관리	2,034	2,627	2,627	4,959	2,829	202	7.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061	2,061	2,034		27	2,627	2,627	2,619	2,573		46	2,829
· 현충사충무공기념관 운영	628	628	586		42	598	598	590	542		48	879
· 시설조경관리	585	585	567		18	514	514	514	609		-95	630
· 재난안전관리	30	30	72		-42	315	315	315	247		68	120
· 현충사 유적종합정비	818	818	809		9	1,200	1,200	1,200	1,175		25	1,200
○ 비목별 분류(합계)	2,061	2,061	2,034		27	2,627	2,627	2,619	2,573		46	2,829
· 상용임금(110-03)	117	117	114		3	129	129	129	104		25	201.2
· 일용임금(110-04)	80	80	79		1	80	80	80	80			80
· 일반수용비(210-01)	308	312	312			309	309	267	266		1	242
· 공공요금(210-02)	15	13	13			15	15	14	13		1	15
· 임차료(210-07)	31	27	27			31	31	18	18			3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5	36	36			35	35	49	49			21
·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4
· 일반용역비(210-14)	70	71	71			70	70	105	105			105
·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1		4	5.3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3	3			3
· 일반연구비(260-01)												202
· 포상금(310-03)	7	7	6		1	7	7	7	7			10
· 고용부담금(320-09)	23	23	21		2	25	25	24	21		3	39
· 건설보상비(410-00)												
· 실시설계비(420-02)	18	18	15		3	79	79	79	77		2	
· 공사비(420-03)	1,304	1,304	1,292		12	1,804	1,804	1,804	1,797		7	1,831
· 감리비(420-04)	26	26	21		5	26	26	26	23		3	32
· 시설부대비(420-05)	5	5	5			5	5	5	5			7.1
· 자산취득비(430-01)	12	12	1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과 함께 현충사의 경관 정비,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림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2005.08.)
 - ※ 1970년대 성역화 사업 때 조성된 관람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국민문화 수준에도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 제기
- (1단계)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2006~2007)
 - 2006년 : 이충무공기념관 기본설계 완료
 - 2007년 : 이충무공기념관 실시설계 완료
 - 2008년~2011년 : 기념관 건립공사(4개년 공사)
- (2단계) 현충사 주차장권역 정비(2012~2013)
- (3단계) 현충사 경내권역 정비(2015~2018)
 - 현충사(사당), 구현충사, 고택및활터, 연못, 참배로, 안내판 정비 등
- (4단계) 이충무공묘소 정비(2018~2022)
 - 2018년 : 이충무공묘 실시설계 완료
 - 2019년 : 이충무공묘소 정비(참배로, 홍살문 목재 교체, 조경)
 - 2020년 : 재실 및 화장실 신축 정비 등
 - 2021년 :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신축 등
 - 2022년 : 토지매입, 참배로 및 기타 조경, 안내판 정비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
- 사업규모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및 현충사 운영, 현충사 시설 및 조경관리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6)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2132-309)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9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사무관 063-636-9322	최민규 063-636-932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만인의총 시설관리운영	768	1,191	1,191	7,306	5,274	4,083	342.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85	778	768		10	1,191	1,191	1,191	1,152		39	5,274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400	400	400	400			4,477
· 만인의사 순의정신 선양	60	60	60			60	60	60	60			60
· 만인의총 경상경비	491	484	479		5	451	451	451	416		35	457
· 만인의총 시설정비	234	234	229		5	280	280	280	276		4	280
○ 비목별 분류(합계)	785	778	768		10	1,191	1,191	1,191	1,152		39	5,274
· 상용임금(110-03)	125	98	98			133	133	133	117		16	140
· 일용임금(110-04)	49	75	75			49	49	49	49			49
· 일반수용비(210-01)	99	91	91			89	89	86	86			8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0	19	19			26	26	20	20			26
· 피복비(210-03)	30	30	30									
· 임차료(210-07)	10	14	14			11	11	12	12			11
· 유류비(210-08)	4	4	3		1	2	2	2	2			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	34	34			19	19	27	27			19
· 재료비(210-11)	6	4	4			8	8	8	8			8
· 복리후생비(210-12)	2	2	1		1	2	2	2	2			2
· 일반용역비(210-14)						5	5	5	5			5
· 관리용역비(210-15)	60	57	55		2	64	64	64	60		4	64
· 국내여비(220-01)	3	3	3			3	3	3	2		1	3
· 일반연구비(260-01)	30	30	30									
· 고용부담금(320-09)	21	15	14		1	25	25	25	11		14	27
· 실시설계비(420-02)	9	9	8		1	419	419	419	417		2	19
· 공사비(420-03)	225	225	221		4	261	261	261	259		2	4,377
· 감리비(420-04)												350
· 시설부대비(420-05)												11
· 자산취득비(430-01)	8	8	8			15	15	15	15			15
· 무형자산(440-00)	60	60	60			60	60	60	60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만인의총의 가치 부각 및 교육·홍보기능 강화,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유적정비 추진
 - 기본계획("17년) 및 설계 용역("20년) 완료
 - 노후 및 협소한 기념관(1980년, 129㎡) 및 관리사무소(1977년, 133㎡) 시설개선, 노후화된 방재·보안 시설 최신화, 정문·담장·광장·주차장 정비 등 주요시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필요
 - 정유재탄 유적지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16.5월 이관) 유일한 사적지로 지방권역 핵심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갖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비 필요
- (만인의사 순의정신 선양) 만인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순의제향, 추모 예능대회 등 추진
- (만인의총 경상경비) 만인의총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 (만인의총 시설정비) 만인의총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를 위한 경상적 시설정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1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토지 : 24필지 95,594m²(28,968평)
 - 건물 : 기념관, 관리사무소 등 10동 연면적 762m²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만인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7)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2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10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이정연	오택근	전재일
		042-481-4860	042-481-4861	042-481-486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운영	3,447	4,976	4,976	10,796	9,805	4,829	97.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447	3,447	3,447	-	-	4,976	4,976	4,976	4,976 <4,225>	720	-	9,805
· 기관운영경비	2,626	2,626	2,626 <2,565>	-	-	2,726	2,726	2,726	2,726 <2,719>	-	-	2,735
· 전통건축부채수집· 보존 및 조사·연구	521	521	521 <450>	-	-	670	670	670	670 <656>	-	-	670
· 문화재수리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	-	-	-	-	-	-	-	-	-	5,000
· 운현궁 아카데미 재건 활용	200	200	200 <188>	-	-	900	900	900	900 <180>	720	-	1,400
· 전통건축부채 활용 콘텐츠 개발및 전시기획	100	100	100 <97>	-	-	680	680	680	680 <670>	-	-	-
○ 비목별 분류(합계)	3,447	3,447	3,447	-	84	4,976	4,976	4,976	4,976 <4,225>	720	-	9,805
· 민간경상보조	2,626	2,626	2,626 <2,565>	-	60	2,726	2,726	2,726	2,726 <2,719>	-	-	2,735
· 민간위탁사업비	821	821	821 <735>	62	24	2,250	2,250	2,250	2,250 <1,506>	720	-	7,0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통건축 수리 시 발생하는 해체 부재를 수집하여 전통건축 기술·기법의 조사·연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

- 소장 전통건축부재를 활용하여 부재 전시 및 교육을 통한 전통건축 가치 재조명, 문화재 재난 예방의 중요성 고취 등 전통건축문화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기술 개발·검증을 통한 관련 기준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및 기술 개선 추구
- 문화재수리 기록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 수리 결과 피드백을 통한 수리 정보 공개·활용, 예산 절감 효과 추구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기관 운영)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유지·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운영 예산
- (전통건축부재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전통건축부재 증가에 따른 수장고 보존환경 및 격납관리 고도화, 전통건축부재 고도화 방안 등 마련
- (문화재수리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이력관리 BIM 모델 구축 및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사진, 도면 및 수리이력보고서 등 수집 및 수리이력 관리를 통해 문화재 원형정보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가능
- (운현궁 아재당 재건·활용)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혼과 얼을 간직하고 맥을 이어가는 건축문화재의 진정성 확보 및 원형보존을 통해 전통건축 기법조사 및 복원을 통한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승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목적 및 예산 확보 규정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보고서의 작성)
 - 문화재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 권한 위탁 및 예산 확보
- 5.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6.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 「문화재청고시 제2018-70호」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② 추진경위

- 숭례문 부실복구를 계기로 문화재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VIP 국회 시정연설 '13.11.1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13.12.3)
 - 황진하의원 등 10명, 윤관석의원 등 11명
-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혁신대책 보고(VIP업무보고 '14. 2. 13)
 -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개선(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의결('15.12.31)
 - 법률공포('16. 2. 3) / 시행일('17. 2. 4)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17. 2. 6)
-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보양 및 수집, 보존처리('17.10.)
- 나주 불회사 대응전(보물 제1310호) 교체부재 수집('17.10.)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준공('17.6.29)
- 문화재청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18.01)
 - 문화재수리 전문기관 육성, 문화재수리이력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18.01~11)
- 문화재수리/감리보고서 제출 협조 요청 및 수집('18.5.29.)
- 문화재청고시 - 업무 위탁기관 지정('18.6.12.)
 -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 아재당 해체부재(3,209점) 수집 및 훈증처리('18.6~7.)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원형보존 및 전통 건축 수리기술 진흥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건축 문화재의 가치 등 제공
- 사업시행방법 : 보조금
- 사업시행주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전통건축문화재 수리·보존 유관단체 및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8)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2133-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자연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김기일	김소현
		042-481-4980	042-481-4989	042-481-499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1,242	2,375	2,375	6,583	2,764	389	16.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81	1,409	1,242	95	72	2,375	2,375	2,400	2,229	59	112	2,764
· 천연기념물·명승 지 정 및 보존관리	468	472	447		25	1,292	1,292	1,222	1,061	59	103	466
· 천연기념물·명승 활용												1,415
· 천연기념물·명승 자 원 및 실태 조사	583	757	635	95	27	883	883	977	973		4	883
· 천연기념물·명승 보 존 및 관리 연구	230	180	160		20	200	200	200	195		5	0
○ 비목별 분류(합계)	1,281	1,409	1,242	95	72	2,375	2,375	2,400	2,229	59	112	2,764
· 상용임금(110-03)	24	25	25			26	26	26	26			27
· 일반수용비(210-01)	239.6	227.6	227.6			238	238	254	247		7	249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1		2	4	4	1	1			4
· 특근매식비(210-05)	8	8	4		4	7	7	7	3		4	7
· 임차료(210-07)	24	40	39		1	24	24	11	11			24
·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0.4	0.4	0.4	0.4			0.4
· 일반용역비(210-14)	22	22	22		1	847	847	777	664	59	54	1,437
· 국내여비(220-01)	95	95	81		13	94	94	94	87		7	89
· 국외업무여비 (220-02)	31	31	27		4	31	31	31	0		31	25
· 사업추진비(240-01)	14	14	14			12.6	12.6	12.6	12.6			10.6
· 일반연구비(260-01)	583	757	635	95	27	883	883	977	973		4	883
· 정책연구비(260-02)	230	180	160		20	200	200	200	195		5	0
· 고용부담금(320-09)	4	3	3			5	5	6	6			5
· 자산취득비(430-01)	3	3	3			3	3	3	3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및 보존관리) 자연유산 지정·해제 조사,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천연기념물·명승 활용) 국민들이 자연유산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활용 콘텐츠를 마련하고 홍보 등을 통해 보호의식을 확산
- (천연기념물·명승 자원 및 실태 조사) 천연기념물·명승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자연유산(동물, 식물, 지질, 명승)의 지속적인 관리 및 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함
- (천연기념물·명승 보존 및 관리 연구)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계속
- 추진배경 : 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지정 및 보존, 조사 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9)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2134-7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7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음자	국고보조율(%)	음자율 (%)
			○		70, 50, 3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성조	이신복	윤관영
		042-481-4780	042-481-4784	042-481-47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보수정비	360,160	420,000	393,300	384,000	397,000	3,700	0.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60,060	360,160	360,160 (269,188)			420,000	393,300	393,300	393,300 (302,747)			397,000
· 문화재보수정비	360,060	360,160	360,160 (269,188)			420,000	393,300	393,300	393,300 (302,747)			397,000
○ 비목별 분류(합계)	360,060	360,160	360,160 (269,188)			420,000	393,300	393,300	393,300 (302,747)			397,000
· 지자체 자본 보조 (330-03)	320,354	320,454	320,454 (232,640)			400,940	375,240	375,240	375,240 (284,687)			397,000
· 지분취득비(490-00)	39,706	39,706	39,706 (36,548)			19,060	18,060	18,060	18,060 (18,06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1항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전국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

- 1962년 문화재관리특별회계로 사업 추진
- 1989년 일반회계로 전환 사업 추진
- 1999년 총액계상사업으로 전환 사업 추진
- 2005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이양
- 2011년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2017년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4,077건 및 국가등록문화재 865건 등 총 4,942건(‘20.6월 말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광역 및 기초)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전시관 유지보수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10) 유형문화재관리(2135-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유형문화재관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이종희	문영철	송시경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91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유형문화재관리	3,327	3,233	3,173	3,481	3,018	△155	△4.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계)	3,432	3,444	3,327 (3,183)		117	3,233	3,173	3,200	3,115 (3,105)		85	3,018
· 유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사업	1,200	1,222	1,199		23	994	994	1,064	1,020		44	1,200
·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100	100	66		34	100	100	66	66		0	100
· 동산문화재 훈증소독	250	218	208		10	250	250	185	181		4	250
· 중요 동산문화재 영 인·복제	178	178	153		25	178	178	168	168		0	178
·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DB구축	395	395	395		0	395	395	395	395		0	395
· 국보 건조물문화재 홍 보콘텐츠 개발	350	350	350 (206)		0	350	350	350	350 (340)		0	
· 재외공관 전시 및 국 보, 보물 지정·관리	959	981	956		25	966	906	972	935		37	895
○ 비목별 분류(계)	3,432	3,444	3,327 (3,183)		117	3,233	3,173	3,200	3,115 (3,105)		85	3,018
· 상 용 임 금 (110-03)	95	106	106			111	111	111	111			116
· 일 용 임 금 (110-04)	22					22	22	22			22	
· 일 반 수 용 비 (210-01)	768	766	737		29	754	714	727	724		3	769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5	17	5		12	35	35	36	36			35
· 특 근 매 식 비 (210-05)	15	6	4		2	15	15	4	3		1	15
· 임차료 (210-07)	6	23	23			6	6	19	19			6
· 복 리 후 생 비 (210-12)	2	4	2		2	2	2	2	2			2
· 일 반 용 역 비 (210-14)	250	218	208		10	250	250	261	258		3	250
· 국 내 여 비 (220-01)	127	185	171		14	129	129	159	153		6	129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80	60	49		11	60	40	10	5		5	60
· 관 서 업 무 추 진 비 (240-02)	13	13	13			12	12	12	12			12
· 일 반 연 구 비 (260-01)	1,250	1,272	1,235		37	1,064	1,064	1,064	1,020		44	1,200
· 민 간 위 탁 사 업 비 (320-02)	395	395	395			395	395	395	395			395
· 고 용 부 담 금 (320-09)	17	22	22			21	21	21	20		1	22
·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330-01)	350	350	350 (206)			350	350	350	350 (340)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자산취득비 (430-01)	7	7	7			7	7	7	7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사업) 외부에 노출되어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큰 중요동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기록화 사업, 중요기록유산 국역(연간 약 30만자), 동산문화재 유형별 보존처리 표준단가 마련,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조사연구 등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제별 대관 발간으로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동산문화재 훈증소독) 서화류·섬유류·목재류 등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의 충·균 등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여 문화재의 안전관리 도모
- (중요동산문화재 영인·복제) 영인 및 복제품을 활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시 및 연구 활성화로 활용도 제고
-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DB 구축)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원문 이미지·텍스트 DB구축 (연간 약 2만면·5백만자)을 통한 기록유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국보, 보물 건축문화재 종합조사) 건조물문화재 관련 기록물(편액, 주련, 시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DB구축으로 보존관리 기반마련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 (재외공관 한국문화재 전시사업 및 국보·보물 지정 보존관리 경상경비) 재외공관을 활용한 한국문화재 전시사업 및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건조물분과) 운영, 국보·보물의 지정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44조(정기조사),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낙산사 동종 소실('05)로 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기록사업 추진
- 국가기록유산 포털자료의 기록유산 필요성 지적('05년 감사원)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의무화적('06년)
- 고전 번역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 제기('11년 국정감사)
- '06년과 '11년 일본 궁내성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오대산본이 국내 반환에 따른 기록유산의 활용 제기(국정감사, 언론)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동산, 건조물] 지정 및 보존·관리
 - 2020. 12월 현재 지정 및 등록현황 : 국보 348건, 보물 2,235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사 업 명

(11)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21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5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2
명칭	문화재 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김동하	장구연	최지선
		042-481-4880	042-481-4881	042-481-488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1,655	1,272	1,272	10,519	4,573	3,801	298.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71	1,682	1,655		27	1,272	1,272	1,342	1,300			4,573
· 근대 및 국가민속 문화재 지정·등록 및 보존·관리	431	528	528		1	432	432	502	473		36	533
·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270	270	268		2	270	270	270	264		6	270
· 국가등록문화재 정기 조사	370	684	660		24	370	370	370	370			370
· 등록문화재 활용 특별전 개최	200	200	200		0	200	200	200	200			200
·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원형 회복												3,200
○ 비목별 분류(합계)	1,271	1,682	1,655		27	1,272	1,272	1,342	1,300			4,573
· 상용임금 (110-03)	24	25	25			28	28	28	27			29
· 일반수용비(210-01)	234	301	301			235	235	305	293			23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1	1			4	4	4	3			4
·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3	3	2			3
· 임차료(210-07)	3	15	14		1	3	3	3	7			3
· 복리후생비(210-14)	0	0	0			0	0	0	0			0
· 일반용역비(210-14)		11	11			0	0	9	9			0
· 국내여비(220-01)	118	139	139			116	116	116	108			116
· 국외업무여비(220-02)	23	13	13			23	23	23	0			23
· 사업추진비(240-01)	8	8	8			8	8	8	8			8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관서업무추진비(240-02)	5	5	5			5	5	5	5			5
· 일반연구비(260-01)	640	954	928		26	640	640	640	634			64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고용부담금(320-09)	4	5	5			5	5	5	2			5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
· 자치단체기본보조(330-03)												3,200
· 자산취득비(430-01)	2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현대문화유산 및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등록 및 보존·관리)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등록·지정 및 실태조사, 현상변경 등 체계적·효율적 보존·관리 및 문화재 활용 기반 조성
-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해마다 선정된 다양한 분야별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 용역 실시를 통한 집중 발굴
- (국가등록문화재 정기 조사) 국가등록문화재 동산, 건축·시설물 분야 정기조사 실시를 통한 문화재의 예방적·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토대 마련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행사) 2021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념 행사 지원 및 국가등록문화재 특별전 개최를 통한 문화재 활용 활성화 및 대국민 관심 제고
-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 건축 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역사 문화공간 6개소(군산, 목포, 영주, 익산, 영덕, 통영) 대상으로 근대 건축 자산 외관 정비 및 원형 회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등록문화재의 발굴·등록 및 보존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4조(정기조사), 제51조(보조금),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8조(등록의 말소) 및 제59조(준용규정)

○ 국가민속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가치 확대

- 「문화재보호법」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44조(정기조사)

※ 국가등록문화재 정의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구분	등록제도	지정제도
대상 시기	· 개화기 이후(1876년 이후)	· 개화기 이전
대상 범위	·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제외)	·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운영	· 보존과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완화된 보존 조치 시행	· 엄격한 보호 규제를 바탕으로 한 보존 조치 시행
도입	· 2001년	· 1962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 문화재보호법 제23~27조

※ 국가민속문화재 정의

- 국가민속문화재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중요한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② 추진경위

- 2001년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2005년 「문화재보호법」 건조물·시설물·유적·동산 포함 등록문화재 확대 및 현상변경 허가제도 도입
- 2005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 2010년 「문화재보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 도입
- 2017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등록 대상 범위 규정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제도 도입
- 2017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 직권조사(국가, 지자체 소유) 절차 규정 마련
- 2018년 「문화재보호법」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및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19. 12. 25. 시행)
-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 및 등록 확대 추진('20년 8월 기준, 총 871건 등록)
 - * 건조물 578건, 동산 293건
- 도시 재생과 연계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방식 개선
 - '18년 3개소 : 군산, 목포, 영주 / '19년 2개소 : 영덕, 익산 / '20년 1개소 : 통영
 -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
- 국가민속문화재(고택, 민속마을) 보존·관리 및 가치 활용 기반 조성
 - * 고택 180개, 민속마을 7개 ('20년 8월 기준, 총 187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가등록문화재 871건, 근대사적 40건, 국가민속문화재(고택, 민속마을) 187개소 ('20. 8월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50%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12)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2135-3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4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이종희	문영철	김근화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68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2,800	2,744	2,744	2,744	2,744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800	2,800	2,800	-	-	2,744	2,744	2,744	2,744	-	-	2,744
· 기록문화재 DB 구축	1,500	1,500	1,500	-	-	1,500	1,500	1,500	1,500	-	-	1,500
· 보존처리 지원	800	800	800	-	-	744	744	744	744	-	-	744
· 경상경비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	-	500
○ 비목별 분류(합계)	2,800	2,800	2,800	-	-	2,744	2,744	2,744	2,744			2,74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800	2,800	2,800	-	-	2,744	2,744	2,744	2,744			2,7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문화재 DB 구축) 규장각 소장 기록유산의 DB 구축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및 학문적 기반 마련
- (보존처리 지원) 자연훼손 대비 보존을 위해 문화재 정밀상태조사, 보존처리, 종합해충방제 등 관리에 따른 보존처리비 지원
- (경상경비) 서울대 소장 국유문화재 관리 협약('16.6.24) 체결에 따라 국유 문화재 24만 여점에 대한 경상관리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9조 (관리위탁)
-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서’ 제7조(문화재청 의무)

② 추진경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11.12.28)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 서울대학교와 위탁 국유문화재의 보존 활용 업무협약 체결 (‘16.6.24.)
 - * (문화재청) 24만 여건의 위탁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 (서울대학교) 위탁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서울대학교 국유문화재 242,570점의 보존관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앙도서관, 박물관)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13) 역사문화기념관 건립(2135-30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6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이종희	조규형	박중인
		042-481-4910	042-481-4914	042-481-491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	-	-	250	250	25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250
· 임청각 역사문화 공유관 건립 지원	-	-	-	-	-	-	-	-	-	-	-	25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250
· 자치단체 자본보조 (303-03)	-	-	-	-	-	-	-	-	-	-	-	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국난극복의 역사적 사실, 인물을 기념하고, 상징할 수 있는 역사문화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보조금)

② 추진경위

- '16년 VIP 임청각 방문,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 다짐

- '17년 8·15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임청각 등 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기념관 건립 지원을 통한 역사의식 제고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총사업비 : 70억원
- 사업규모 : 연면적 1,220m²(지하 1층, 지상 2층)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안동시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치단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1) 경북궁 종합정비(2231-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경복궁종합정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성희	박찬정	정현정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4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경북궁종합정비	15,021	11,108	6,838	6,082	5,782	△1,056	△15.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951	16,687	15,021 (4,098)	1,537	129	11,108	6,838	8,375	8,088 (3,222)	2	285	5,782
· 광화문월대등 복원 및 주변정비	13,336	13,336	13,336 (2,413)	-	-	7,650	5,100	5,100	5,100 (235)	-	-	2,400
· 계조당 권역 복원	1,854	2,144	581	1,513	50	3,320	1,600	3,113	2,858	2	253	2,990
· 취향교 복원	698	1,144	1,046	24	74	-	-	24	14	-	10	-
· 영훈당 권역 복원	-	-	-	-	-	-	-	-	-	-	-	254
· 관리운영비	63	63	58	-	5	138	138	138	116	-	22	138
○ 비목별 분류(합계)	15,951	16,687	15,021 (4,098)	1,537	129	11,108	6,838	8,375	8,088 (3,222)	2	285	5,782
· 일반수용비(210-01)	21	21	21	-	-	15	15	15	15	-	-	16
· 국내여비(220-01)	21	21	15	-	6	18	18	18	7	-	11	17
· 일반연구비(260-01)	-	-	-	-	-	80	80	80	74	-	6	80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13,336	13,336	13,336 (2,413)	-	-	7,650	5,100	5,100	5,100 (235)	-	-	2,250
· 실시설계비(420-02)	193	483	434	-	49	-	-	-	-	-	-	404
· 공사비(420-03)	1,948	2,298	963	1,270	65	2,800	1,480	2,750	2,537	2	211	2,395
· 감리비(420-04)	410	506	230	267	9	520	120	387	335	-	52	595
· 시설부대비(420-05)	22	22	22	-	-	25	25	25	20	-	5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조선의 법궁인 경북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역사성 회복 및 문화관광자원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조선왕궁 복원정화에 따른 관리개선 보고(1984. 5. 22, 대통령제가)
- 대통령 지시(경복궁의 완전한 복원, 88(06-25-03), 1993. 4. 1)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왕궁 원형복원 78-1-2, 1998. 6.)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보고(2011. 2월 장관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015.12월 청장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차. 2018. 8월 청장 결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2045년
- 사업규모 : 경복궁 소주방권역, 흥복전권역, 계조당권역, 영훈당권역 등 80동 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한함)
- 사업시행주체 : 국가(문화재청) 및 지자체(서울시)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보조 50%,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2) 덕수궁복원정비(2231-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2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덕수궁복원정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성희	박찬정	박준형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덕수궁복원정비	3,141	3,155	3,155	7,330	7,330	4,175	132.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180	3,622	3,141	367	114	3,155	3,155	3,522	2,901	449	172	7,330
· 운영비	30	30	30	-	-	60	60	60	50	-	10	60
· 돈덕전 재건사업	2,850	3,292	2,951	307	33	2,995	2,995	3,302	2,767	449	85	5,300
· 자격루 및 동종이전	200	200	76	60	64	-	-	60	-	-	60	1,270
· 선원전 발굴조사	-	-	-	-	-	-	-	0	-	-	-	600
· 선원전 학술조사	100	100	83	-	17	100	100	100	83	-	17	100
○ 비목별 분류(합계)	3,180	3,622	3,141	367	114	3,155	3,155	3,522	2,901	449	172	7,330
·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	-	10	10	10	5	-	5	10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100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83	-	17	100	100	100	83	-	17	700
· 실시설계비(420-02)	200	200	76	60	64	-	-	60	-	-	60	200
· 공사비(420-03)	2,500	2,942	2,673	235	33	2,695	2,695	2,930	2,498	346	85	5,874
· 감리비(420-04)	350	350	278	72	-	300	300	372	269	103	-	390
· 시설부대비(420-05)	20	20	20	-	-	50	50	50	45	-	5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제 강점기 및 개발 등에 의해 변형 훼손된 덕수궁 돈덕전 및 선원전 등의 주요 전각을 복원·정비하여 왜곡 단절된 역사 연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 조선왕궁 복원계획 수립(대통령 재가, 1984년)
- 2004년부터 일제에 의해 왜곡된 덕수궁의 원형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 「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15.3)
-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조정」('15.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2039
- 사업규모
 - (중심영역) 광명문 이전, 돈덕전 및 조원문 복원정비
 - (선원전영역) 주요 전각 부속건물 53동, 궁장, 상림원 및 지형 등 복원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영녕릉 보존정비(22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4
명칭	공능원관리	공능원종합정비	영녕릉 보존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김명준 031-880-4701	송봉규 031-880-4702	심미숙 031-880-470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영녕릉 보존정비	6,176	8,741	8,741	3,095	2,954	△5,787	△66.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894	6,207	6,176	0	31	8,741	8,741	8,741	8,644	0	97	2,954
· 유적종합정비	4,100	4,413	4,413	0	0	5,836	5,836	5,591	5,591	0	0	0
· 수목 및 시설관리	919	919	904	0	15	1,895	1,895	2,140	2,116	0	24	1,944
· 역사문화관 운영	755	770	754	0	16	915	915	956	884	0	72	915
· 송모제전	120	105	105	0	0	95	95	54	53	0	1	95
○ 비목별 분류(합계)	5,894	6,207	6,176	0	31	8,741	8,741	8,741	8,644	0	97	2,954
· 상용임금(110-03)	379	379	370	0	9	455	455	455	414	0	41	463
· 일용임금(110-04)	0	0	0	0	0	71	71	71	71	0	0	71
· 일반수용비(210-01)	121	100	100	0	0	68	68	74	74	0	0	73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5	72	72	0	0	71	71	69	69	0	0	71
· 특근매식비(210-05)	5	1	1	0	0	5	5	1	1	0	0	3
· 임차료(210-07)	5	25	25	0	0	8	8	29	29	0	0	1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6	23	23	0	0	34	34	37	37	0	0	34
· 재료비(210-11)	42	43	43	0	0	51	51	41	41	0	0	48
· 복리후생비(210-12)	5	5	5	0	0	10	10	10	6	0	4	6
· 일반용역비(210-14)	40	57	57	0	0	40	40	28	28	0	0	40
· 관리용역비(210-15)	18	33	33	0	0	31	31	30	30	0	0	31
· 기타운영비(210-16)	3	1	1	0	0	1	1	0	0	0	0	1
· 국내여비(220-01)	12	12	12	0	0	12	12	12	11	0	1	12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0	0	4	4	4	4	0	0	3
· 고용부담금(320-09)	70	70	63	0	7	99	99	99	72	0	27	93
· 건설보상비(410-00)	450	450	442	0	8	0	0	0	0	0	0	730
· 실시설계비(420-02)	113	113	106	0	7	0	0	0	0	0	0	182
· 공사비(420-03)	4,148	4,341	4,341	0	0	7,344	7,344	7,344	7,338	0	6	1,032
· 감리비(420-04)	287	407	407	0	0	359	359	359	341	0	18	0
· 시설부대비(420-05)	21	21	21	0	0	28	28	28	28	0	0	0
· 자산취득비(430-01)	50	50	50	0	0	50	50	50	50	0	0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적종합정비) 영릉(세종) 및 영릉(효종) 능제 원형 복원을 위한 유적정비사업
- (수목 및 시설관리) 관사동 건립, 영릉·영릉의 시설물, 수목 및 조경 등 경상적인 유지보수
- (역사문화관 운영) 공무원 등 근로자 인건비 및 경상관리, 활용프로그램 운영
- (승모제전) 세종대왕 탄신 기념 승모제전, 기획전시 및 부대행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2012. 3. 1.)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착공식 개최(2014. 9. 16.)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1단계) 공사 준공(2017. 2. 28.)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2단계) 공사 착공(2017. 4. 25.)
-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개관(2017. 5. 15.)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2단계) 준공(2020. 9. 3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영릉(세종) 및 영릉(효종) 능제 원형 복원
 - 관사동 이전 건립, 영·영릉 수목 및 시설 관리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 등 근로자 인건비, 경상관리, 활용프로그램 운영
 -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 기획전 전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4) 궁궐문화재관리운영(2232-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궐문화재관리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지홍	홍준기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궁궐문화재관리운영	20,747	26,498	26,444	30,804	26,240	△204	△0.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404	22,905	20,747	1,490	668	26,498	26,444	27,927	22,579	3,751	1,597	26,240
· 궁 시설관리인력 및 경상관리	6,642	6,693	6,439	81	173	7,206	7,152	7,226	6,668	0	558	7,439
· 궁궐 활용기반 구축	672	611	611	0	0	672	672	672	658	0	14	672
·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	7,988	10,694	8,888	1,409	397	9,493	9,493	10,902	8,946	1,217	739	10,548
· 종묘 정전 보수	735	735	735	0	0	3,940	3,940	3,940	1,940	1,912	88	2,885
· 사직단 복원	880	2,685	2,625	0	60	3,700	3,700	3,700	2,981	622	97	3,185
· 궁궐문화재 긴급보 수단 운영	1,487	1,487	1,449	0	38	1,487	1,487	1,487	1,386	0	101	1,511
○ 비목별 분류(합계)	18,404	22,905	20,747	1,490	668	26,498	26,444	27,927	22,579	3,751	1,597	26,240
· 상용임금(110-03)	4,492	4,427	4,248	0	179	4,956	4,956	4,956	4,495	0	461	5,110
· 일용임금(110-04)	82	82	78	0	4	82	82	82	46	0	36	82
· 일반수용비(210-01)	552	663	663	0	0	551	497	689	689	0	0	60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76	695	695	0	0	676	676	642	635	0	7	676
· 피복비(210-03)	215	215	134	81	0	223	223	303	303	0	0	222
· 특근매식비(210-05)	96	55	54	0	1	96	96	61	57	0	4	96
· 임차료(210-07)	68	178	178	0	0	68	68	69	66	0	3	68
· 유류비(210-08)	71	71	61	0	10	71	71	71	62	0	9	7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34	136	136	0	0	234	234	200	197	0	3	234
· 재료비(210-11)	63	33	33	0	0	63	63	77	77	0	0	63
· 복리후생비(210-12)	73	73	65	0	8	71	71	71	69	0	2	71
· 일반용역비(210-14)	672	611	611	0	0	672	672	603	589	0	14	762
· 관리용역비(210-15)	115	107	107	0	0	115	115	112	112	0	0	115
· 기타운영비(210-16)	8	6	6	0	0	8	8	8	7	0	1	8
· 국내여비(220-01)	185	185	182	0	3	182	182	182	143	0	39	182
· 국외업무여비(220-02)	38	38	38	0	0	37	37	6	6	0	0	38
· 사업추진비(240-01)	35	35	35	0	0	31	31	31	31	0	0	31
· 일반연구비(260-01)	0	0	0	0	0	162	162	162	161	0	1	750
· 고용부담금(320-09)	833	888	882	0	6	936	936	929	835	0	94	981
· 실시설계비(420-02)	1,293	1,311	1,182	0	129	560	560	560	472	0	88	769
· 공사비(420-03)	7,932	11,802	10,379	1,217	206	14,982	14,982	16,199	12,271	3,530	398	13,603
· 감리비(420-04)	470	1,093	802	192	99	1,462	1,462	1,654	1,038	221	395	1,285
· 시설부대비(420-05)	58	58	35	0	23	117	117	117	75	0	42	111
· 자산취득비(430-01)	143	143	143	0	0	143	143	143	143	0	0	3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궁 시설관리인력 및 경상관리) 4대궁 및 종묘에 대한 시설관리 인력 운영 및 경상관리
- (궁궐 활용기반 구축) 야간특별관람 및 종묘 제례의물 보수 등 궁궐 활용기반 구축
-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 4대궁, 종묘 내 문화재 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 유지
- (종묘 정전 보수) 국보 제227호 종묘 정전 보수
- (사직단 복원) 일제강점기 훼손된 사직단의 원형 복원
- (궁능문화재 긴급보수단 운영)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문화재 긴급 보수를 위한 보수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② 추진경위
 - 4대궁과 종묘의 사적지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자연적·인공적 훼손을 방지하고 적시에 보수함에 소요되는 유지관리경비
 - 4대궁과 종묘의 사적지 내 고건물 등의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가치관 고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4대궁 및 종묘(송례문, 사직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5) 조선왕릉보존관리(2232-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2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조선왕릉보존관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지홍	홍준기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조선왕릉보존관리	23,336	32,590	32,495	37,323	34,434	1,939	6.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3,937	24,320	23,336 (23,336)	152	832	32,590	32,495	32,647	27,545 (27,545)	3,196	1,906	34,434
· 조선왕릉 경상관리	5,890	5,887	5,798	51	38	6,185	6,090	6,141	5,862	0	279	6,369
· 조선왕릉 능계복원	13,490	13,876	13,388	101	387	18,086	18,086	18,187	14,397	2,166	1,624	21,146
· 조선왕릉 문화기반 구축	1,100	1,100	693	0	407	660	660	660	660	0	0	1,693
· 조선왕릉 원형고증 및 연구지원	435	435	435 (435)	0	0	2,868	2,868	2,868	1,835 (1,835)	1,030	3	435
· 조선왕릉 토지매입	3,022	3,022	3,022	0	0	4,791	4,791	4,791	4,791	0	0	4,791
○ 비목별 분류(합계)	23,937	24,320	23,336 (23,336)	152	832	32,590	32,495	32,647	27,545 (27,545)	3,196	1,906	34,434
· 상용임금(110-03)	3,333	3,332	3,198	0	134	3,571	3,571	3,571	3,406	0	165	3,746
· 일용임금(110-04)	60	60	59	0	1	60	60	60	57	0	3	60
· 일반수용비(210-01)	487	421	419	0	2	487	392	522	515	0	7	52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94	478	478	0	0	494	494	473	471	0	2	494
· 피복비(210-03)	108	108	57	51	0	113	113	164	164	0	0	113
· 특근매식비(210-05)	33	31	31	0	0	33	33	21	20	0	1	33
· 임차료(210-07)	38	159	159	0	0	38	38	33	33	0	0	38
· 유류비(210-08)	50	50	42	0	8	50	50	50	38	0	12	5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3	62	62	0	0	73	73	79	78	0	1	166
· 재료비(210-11)	106	92	92	0	0	106	106	112	112	0	0	106
· 복리후생비(210-12)	63	63	51	0	12	57	57	57	54	0	3	58
· 일반용역비(210-14)	730	717	515	0	202	600	600	536	536	0	0	1,430
· 관리용역비(210-15)	39	46	45	0	1	39	39	33	33	0	0	39
· 기타운영비(210-16)	6			0	0	6	6	6	5	0	1	6
· 국내여비(220-01)	103	103	101	0	2	101	101	101	86	0	15	101
· 국외업무여비(220-02)	34	34	32	0	2	34	34	0	0	0	0	34
· 사업추진비(240-01)	22	22	21	0	1	20	20	20	20	0	0	19
· 일반연구비(260-01)	934	982	792	101	89	44	44	145	138	0	7	1,273
· 민간경상보조(320-01)	435	435	435 (435)	0	0	435	435	435	435 (435)	0	0	435
· 고용부담금(320-09)	612	609	592	0	17	674	674	674	605	0	69	719
· 토지매입비(410-00)	3,022	3,022	3,022	0	0	4,791	4,791	4,791	4,791	0	0	4,791
· 실시설계비(420-02)	1,091	1,091	851	0	240	1,193	1,193	1,193	1,091	0	102	1,422
· 공사비(420-03)	11,635	11,967	11,858	0	109	18,281	18,281	18,120	13,865	2,780	1,475	17,413
· 감리비(420-04)	160	166	154	0	12	235	235	396	326	41	29	1,084
· 시설부대비(420-05)	90	90	90	0	0	85	85	85	74	0	11	104
· 자산취득비(430-01)	180	180	180	0	0	970	970	970	592	375	3	1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선왕릉 경상관리) 조선왕릉 118기에 대한 시설관리 인력 운영 및 경상관리
- (조선왕릉 능제복원) 조선왕릉 118기 중 훼손된 능제의 원형 복원 및 시설물 보수, 전통조경 조성관리
- (조선왕릉 문화기반 구축) 조선왕릉 118기에 대한 다양한 활용 콘텐츠 개발 등
- (조선왕릉 원형고증 및 연구지원) 조선왕릉 제향행사의 원형고증 등 지원
- (조선왕릉 토지매입) 조선왕릉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원형복원을 위한 주변 사유지 매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조선왕릉 내 문화재 훼손방지 및 문화유산 원형보존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사업규모 : 조선왕릉 118기(관리면적 15,778,75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100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1항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1항 3호

사 업 명

(6)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2232-3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4
명칭	공능원보존관리	공능원시설관리운영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성희	이소연	김대웅
		02-6450-3840	02-6450-3841	02-6450-384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전통수목양묘사업 소운영	366	376	376	380	380	4	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 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68	381	366	0	15	376	376	382	362			380
· 전통수목양묘사업소 운영	368	381	366	0	15	376	376	382	362			380
○ 비목별 분류(합계)	368	381	366	0	15	376	376	382	362			380
. 상용임금(110-03)	24	30	30	0	0	31	31	31	31			32
. 일용임금(110-04)	115	115	114	0	0	115	115	115	113		2	112
. 일반수용비(210-01)	14	11	11	0	0	13	13	15	15			16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0	0	0	0	1	1	0	0			1
. 특근매식비(210-05)	4	3	3	0	0	3	3	4	4			4
. 임차료(210-07)	8	10	10	0	0	8	8	8	8			8
. 유류비(210-08)	13	13	13	0	0	13	13	13	8		5	1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	5	5	0	0	5	5	5	5			5
. 재료비(210-11)	20	23	23	0	0	20	20	20	20			20
. 복리후생비(210-12)	0	0	0	0	0	0	0	0	0			1
. 국내여비(220-01)	16	16	6	0	10	16	16	16	9		7	16
. 고용부담금(320-09)	5	12	12	0	3	6	6	13	7		6	11
. 공사비(420-03)	134	134	130	0	3	134	134	134	133		1	134
. 시설부대비(420-05)	1	1	1	0	0	1	1	1	1			1
. 자산취득비(430-01)	8	8	8	0	0	8	8	8	8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4대궁·종묘·조선왕릉의 전통조경 복원 및 유지 관리용 맞춤형 고유 수종 생산·보급
- 문화재 복원, 보수용 특수·특대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맞춤형 공급을 위한 삼척 준경묘·영경묘 소나무숲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및 조선왕릉 보전관리계획(2007. 12.)
- 문화재청 훈령 조경관리규정

② 추진경위

- 1972년 궁·능·원 전통조경 정비 및 경관 유지를 위한 고유 수종 양묘 생산 사업 추진
- 1999년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 일부 수입 목재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
*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 생산을 위한 삼척 준경묘·영경묘 산림 관리 추진 (대통령 보고)
- 2013년 남양주 사릉 개방 및 사릉 양묘장 '조선왕릉 자연 생태학습장' 설치 운영
* 남양주 사릉 개방에 따른 사릉 능제 복원 대상지 내의 양묘장 이전 문제 제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통수목양묘장 5개소(132,093㎡), 삼척 준경묘·영경묘(5,078,0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2232-65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65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지홍	홍준기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공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10,647	12,022	12,022	11,071	10,787	△1,235	△10.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678	10,678	10,647 (10,647)	5	26	12,022	12,022	12,027	11,206 (11,206)	0	821	10,787
· 관람지원인력 운영	8,104	8,104	8,088	0	16	9,262	9,262	9,262	8,493	0	769	9,544
· 문화행사 및 관람시 설 운영	2,574	2,574	2,559 (2,559)	5	10	2,760	2,760	2,765	2,738 (2,738)	0	52	1,243
○ 비목별 분류(합계)	10,678	10,678	10,647 (10,647)	5	26	12,022	12,022	12,027	11,206 (11,206)	0	821	10,787
· 상용임금(110-03)	6,734	6,698	6,692	0	6	7,689	7,689	7,689	7,025	0	664	7,906
· 일용임금(110-04)	121	121	112	0	9	121	121	121	100	0	21	121
· 일반수용비(210-01)	1,784	1,791	1,790	0	1	1,783	1,783	1,795	1,778	0	17	71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5	40	40	0	0	35	35	31	25	0	6	35
· 피복비(210-03)	57	57	52	5	0	57	57	62	61	0	1	57
· 특근매식비(210-05)	30	7	7	0	0	30	30	11	6	0	5	30
· 임차료(210-07)	27	44	44	0	0	27	27	24	24	0	0	2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5	39	39	0	0	45	45	31	29	0	2	0
· 복리후생비(210-12)	107	107	101	0	6	110	110	110	107	0	3	110
· 일반용역비(210-14)	200	209	209	0	0	200	200	207	207	0	0	0
· 관리용역비(210-15)	80	71	71	0	0	80	80	101	100	0	1	80
· 일반연구비(260-01)	54	54	51	0	3	238	238	238	222	0	16	100
· 포상금(310-03)	10	10	10	0	0	10	10	10	10	0	0	10
· 민간경상보조(320-01)	80	80	80 (80)	0	0	80	80	80	80 (80)	0	0	80
· 고용부담금(320-09)	1,249	1,285	1,284	0	1	1452	1452	1452	1,368	0	84	1,517
· 자산취득비(430-01)	65	65	65	0	0	65	65	65	64	0	1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람지원인력 운영) 궁능 내 관람지원인력 배치 및 운영
-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 궁능의 관람시설 개선 및 문화행사 등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업무보고 시 관광산업 육성 지시('98.3.7.)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람환경 개선과 경상관리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4년~계속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의재발견 (사)우리문화습결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1항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1항 3호

사 업 명
(8) 공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2233-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1
명칭	공능원관리	공능원활용활성화	공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공능서비스기획과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능유적본부	공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흥년	박상훈
		02-6450-3820	02-6450-3836	02-6453-383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공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	16,523	16,523	20,693	20,473	3,950	23.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16,523	16,523	16,523	16,513 <16,513>		3	20,473
· 궁궐 의례재현 및 일상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	5,200	5,200	5,200	5,200			5,500
· 궁궐 전통공연 및 답사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4,935	4,935	4,935	4,935			6,405
· 궁중문화축전						4,700	4,700	4,700	4,700			4,700
· 비대면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	-	-	-			850
· 야간관람콘텐츠 확충- 포레스타루미나콘텐츠						-	-	-	-			1,300
· 궁궐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128	128	128	118			127.3
· 왕릉 활용프로그램 개발운영						1,560	1,560	1,560	1,560 <1,560>			2,440
○ 비목별 분류(합계)				-	-	16,523	16,523	16,523	16,513 <16,513>		3	20,473
· 일반수용비(210-01)				-	-	46	46	46	39.3		6.7	45.3
· 일반용역비(210-14)				-	-	70	70	70	67.1		2.9	270
· 국내여비(220-01)				-	-	10	10	10	10			10
· 사업추진비(240-01)				-	-	2	2	2	2			2
· 민간 위 탁 사업비 (320-02)				-	-	16,395	16,395	16,395	16,395 <16,395>			19,045
· 실시설계비(420-02)				-	-							73
· 공사비(420-03)				-	-							1,012
· 감리비(420-04)				-	-							13
· 시설부대비(420-05)				-	-							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정착,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 등 늘어나는 문화유산 향유 수요 증대에 능동적 대비 및 문화유산 창조적 활용,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구축
-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왕실문화 재현사업 지속 추진
-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궁궐, 조선왕릉 문화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문화유산 활용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우수사례로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82조

- 제9조 제1항(한국문화재단의 설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단을 설립한다.
-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9년)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 착수
- ('19년) 조선왕궁·왕릉의 체계적 복원·정비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궁·능의 역사적 가치회복 및 향유기반 확대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 신설.
이에 궁궐활용사업과 조선왕릉 활용사업을 포괄하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궁능유적만들기」 사업 추진
- ('20년)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신규 세부사업 편성
※ 문재인정부 공약(194-4) 및 국정과제(67-5) :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사업규모 : 궁·능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궁중문화축전, 궁궐활용프로그램, 조선왕릉문화제, 궁능포레스타루미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국가(문화재청), 민간위탁(한국문화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외국인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 매장문화재보존(2332-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보존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김수현	노승연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매장문화재 보존	718	781	781	7,720	7,715	6,934	887.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 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28	729	718		11	781	781	781	724		57	7,715
· 매장문화재 조사보 호 경상관리	518	521	514		7	521	521	521	466		55	525
· 보존유적 지적측량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100
·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 연구용역	80	78	78			130	130	130	128		2	130
· 매장문화재 발견신 고 보(포)상금	30	30	26		4	30	30	30	30		0	30
· 발굴유물 역사문화 공간 조성									-		-	6,930
○ 비목별 분류(합계)	728	729	718		11	781	781	781	723		58	7,715
· 상용임금(110-03)	77	77	72		5	82	82	82	72		10	87
· 일반수용비(210-01)	241	266	266			243	243	247	244		3	23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2	2			3	3	3	1		2	3
· 특근매식비(210-05)	6	3	3			6	6	6	2		4	6
· 임차료(210-07)	7	13	13			7	7	7	4		3	7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0	1
·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100			100	100	120	118		2	100
· 국내여비(220-01)	130	105	104		1	127	127	103	95		8	127
· 국외업무여비(220-02)	18	19	19			18	18	18	-		18	1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1	11	11			10	10	10	10		0	10
· 일반연구비(260-01)	80	78	78			130	130	130	128		2	130
· 기타보전금(310-04)	30	30	26		4	30	30	30	30		0	30
· 고용부담금(320-09)	14	14	14			14	14	14	8		6	17
· 실시설계비(420-02)												261
· 공사비(420-03)												6,000
· 감리비(420-04)												69
· 자산취득비(430-01)	10	10	9		1	10	10	10	10		0	6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지표·발굴)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안된다”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3년
- 추진배경 :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2332-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김수현	정은주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800	800	4,995	8,953	6,610	1,615	32.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에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 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00	800	800			800	4,995	4,995	4,995 [4,995]			6,610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	-	-			-	4,195	4,195	4,195 [4,195]			2,310
·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	-	-			-	-	-	-			3,500
○ 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800			800	4,995	4,995	4,995 [4,995]			6,610
· 자치단체경상보조 (320-01)	-	-	-			-	-	-	-			3,5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800	800	800			800	4,995	4,995	4,995 [4,995]			3,1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교육 시행과 학술 연구 활동 지원으로 매장문화재조사 및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분실·훼손 우려가 큰 대학박물관 내 미정리 유물 일제 정리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국가주도의 전국토 대상 매장문화재 정밀 지표 조사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항
 -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2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 및 정보제공의무를 갖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지표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필요

□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 총사업비 : 계속비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매장문화재조사연구 종사자 및 일반국민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 총사업비 : 104.8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립박물관 및 공·사립박물관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 총사업비 : 343억원(49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및 일반국민

사 업 명
(3)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2332-3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4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김미란	송태인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5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2,500	2,500	2,500	2,600	2,600	100	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2,081]	- [160]	- [259]	2,500	2,500	2,500	2,500 [2,068]	-	-	2,600
· 보존유적 토지매입	2,500	2,500	2,500 [2,081]	- [160]	- [259]	2,250	2,250	2,250	2,250 [1,838]	200	-	2,000
· 보존유적 보수정비	-	-	-	-	-	250	250	250	250 [230]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2,081]	- [160]	- [259]	2,500	2,500	2,500	2,500 [2,068]	-	-	2,600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2,500	2,500	2,500 [2,081]	- [160]	- [259]	2,500	2,500	2,500	2,500 [2,068]	-	-	2,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존유적 토지매입) 동 내역사업은 발굴조사 후 가치가 높아 보존조치 되는 유적 중에서 현지보존으로 인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국민의 사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보존유적 보수정비) 동 내역사업은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보존유적의 보수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제1항
-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한나라당 문화재관리제도 개혁특위 제6차 회의('08.03.16)
 - 보존결정 유적의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조치 및 직접 관리
 - 보존유적 토지의 매수청구권 인정
-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보존조치유적 관리 방안 및 보존조치된 사유지의 보호를 위한 토지매입 예산 확보 필요
- 2018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선정('18.8월)
 - 국민참여단 평가결과 사회분과 1위 선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규모 :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한 현지보존유적 매입 및 보수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4) 문화재예방관리강화(2334-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문화재예방관리강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홍창남	고정주, 이명선, 전의건, 김태구	연은희
		042-481-4933	042-481-4923, 4821, 4972, 4820	042-481-492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예방관리강화	1,805	1,749	1,749	3,508	3,508	1,759	100.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48	1,847	1,805		42	1,749	1,749	1,749	1,546		203	3,508
· 문화재감정관실운용	1,375	1,375	1,371		3	1,322	1,322	1,322	1,322		190	1,493
· 문화재사범단속활동	105	105	104		1	95	95	95	95		0	95
· 문화재안전관리	368	368	330 (150)		38	232	232	232	219 (52)		13	333
·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1,487
· 문화재 유통질서 지원						100	100	100	100 (57)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1,848	1,847	1,805		42	1,749	1,749	1,749	1,546		206	3,508
· 상용임금(110-03)	87	87	58		29	72	72	72	59		13	78
· 일반수용비(210-01)	934	894	894			851	851	825	701		124	97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95	94	92		2	95	95	98	98		0	95
· 특근매식비(210-05)	5	8	8			5	5	5	5		0	5
· 임차료(210-07)	330	339	338		1	330	330	343	343		0	372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0	1
· 일반용역비(210-14)		20	19		1			10	8		2	272
· 기타운영비(210-16)	24	21	21			25	25	25	22		3	25
· 국내여비(220-01)	74	86	86			74	74	74	57		17	73
· 국외업무여비(220-02)	16	15	15			16	16	16	0		16	1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	12	12			12	12	12	11		1	12
· 특정업무경비(250-03)	5	5	4		1	5	5	5	4		1	5
· 포상금(310-03)	24	24	24			24	24	24	6		18	24
· 민간경상보조(320-01)	160	160	160			180	180	180	180 (109)		0	280
· 고용부담금(320-09)	16	16	8		8	14	14	14	6		8	15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0	1,000
· 자산취득비(430-01)	65	65	65			45	45	45	45		0	2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국제공항, 항만 및 국제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여 비문화재 확인 업무수행을 통한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사범단속 활동 강화를 통한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안전점검, 안전관리교육 등을 통해 문화재 재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재 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 (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매매업자의 법령·소양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유지관리) 문화재 재난안전현장에 드론기술 도입하여 재난시 신속대응과 평상시 정보수집 및 예찰활동을 통해 상황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예방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문화재청장은 화재 등 문화재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 1968년부터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983년부터 시·도 위임운영, 2007년부터 문화재청 직접 운영

<문화재사범단속활동>

- 문화재의 도난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05년부터 국민의식 계도 홍보 추진 및 사범단속활동 강화

<문화재안전관리>

- 2008년 승례문 화재 계기로 종합방재대책을 마련 연차적 추진, 문화재 화재,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교육훈련홍보활동을 통한 문화재 현장 방재력 강화 추진,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한 문화재 방재 과학화 실현

<문화재 유통질서 지원>

- 문화재보호·육성 발전을 위한 문화재매매업자 교육의 필요성 국회 지속 제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68 ~ 계속
- 사업규모
 - 인천국제공항 등 19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 문화재안전점검, 교육훈련, 행사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등
 - 문화재매매업자 교육
 -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소방안전원, (사)한국고미술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소방안전원 등 3개기관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한국고미술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1)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31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10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인건비	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신동열	이상원	황소연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R&D)	13,893	15,436	14,962	16,516	15,795	833	5.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102	14,087	13,893	-	194	15,436	14,962	14,962	13,979	-	983	15,795
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R&D)	14,102	14,087	13,893	-	194	15,436	14,962	14,962	13,979	-	983	15,795
○ 비목별 분류(합계)	14,102	14,087	13,893	-	194	15,436	14,962	14,962	13,979	-	983	15,795
· 보수(110-01)	12,492	12,443	12,354	-	90	13,762	13,462	13,326	12,399	-	927	14,033
· 기타직보수(110-02)	1,428	1,520	1,471	-	49	1,498	1,498	1,634	1,580	-	54	1,607
· 연가보상비(110-05)	182	123	68	-	55	176	2	2	-	-	2	1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직원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등),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정규직 인건비(인건비, 기타직 보수, 연가보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31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1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신동열	이상원	우윤정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R&D)	1,688	1,759	1,759	1,792	1,742	△17	△1.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75	1,690	1,688	-	2	1,759	1,759	1,759	1,753	-	-	1,742
· 인건비(110)	154	163	163	-	-	170	170	170	168	-	2	172
· 운영비(210)	1,339	1,338	1,336	-	2	1,383	1,383	1,398	1,397	-	1	1,367
· 여비(220)	36	36	36	-	-	45	45	30	30	-	-	43
· 업무추진비(240)	23	23	23	-	-	25	25	25	25	-	-	23
· 직책수행경비(250)	97	97	97	-	-	104	104	104	101	-	3	104
· 민간이전(320)	26	32	32	-	-	32	32	32	32	-	-	33
○ 비목별 분류(합계)	1,675	1,690	1,688	-	2	1,759	1,759	1,759	1,753	-	6	1,742
· 상용임금(110-03)	154	163	163	-	-	170	170	170	168	-	2	172
· 일반수용비(210-01)	159	257	257	-	-	167	167	254	254	-	-	16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14	549	547	-	2	592	592	589	589	-	-	554
· 피복비(210-03)	12	7	7	-	-	11	11	9	9	-	-	12
· 특근매식비(210-05)	14	11	11	-	-	15	15	10	10	-	-	15
· 일·숙직비(210-06)	34	10	10	-	-	28	28	9	9	-	-	28
· 임차료(210-07)	65	64	63	-	-	115	115	113	112	-	1	141
· 유류비(210-08)	58	39	39	-	-	62	62	30	30	-	-	5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08	331	331	-	-	312	312	313	313	-	-	315
· 복리후생비(210-12)	8	8	8	-	-	8	8	4	4	-	-	8
· 기타운영비(210-16)	67	62	62	-	-	73	73	67	67	-	-	71
· 국내여비(220-01)	36	36	36	-	-	45	45	30	30	-	-	43
· 관서업무비(240-02)	23	23	23	-	-	25	25	25	25	-	-	23
· 직책수행경비(250-02)	97	97	97	-	-	104	104	104	101	-	3	104
· 고용부담금(320-09)	26	32	32	-	-	32	32	32	32	-	-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연구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성과창출능력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17조의 3
 -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 제1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3. 03. 09.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개정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88. 09. 01.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4. 05. 04. 서무과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0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운영 기본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및 관련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3118-25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5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신동열	이상원	우윤정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R&D)	589	799	799	843	843	44	5.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18	618	589	-	29	799	799	799	750	-	49	843
· 인건비(110)	515	503	481	-	22	675	675	673	626	-	47	698
· 운영비(210)	7	7	6	-	1	10	10	10	9	-	1	10
· 민간이전(320)	78	90	84	-	6	114	114	116	115	-	1	135
· 유형자산(430)	18	18	18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618	618	589	-	29	799	799	799	750	-	49	843
· 상용임금(110-03)	515	503	481	-	22	675	675	673	626	-	47	698
· 복리후생비(210-12)	7	7	6	-	1	10	10	10	9	-	1	10
· 고용부담금(320-09)	78	90	84	-	6	114	114	116	115	-	1	135
· 자산취득비(430-01)	18	18	18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구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연구소 공무원 인건비 지급 및 복리후생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17조의 3
 -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 제1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3. 03. 09.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개정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88. 09. 01.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4. 05. 04. 서무과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0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사업규모: 문화재연구소 운영 기본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 문화재 국제교류(3331-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1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문화재국제교류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세계유산팀	김지성	이종규	박지연
		여성희	박형빈	심소이
		042-481-4730	042-481-4731	042-481-4738
		042-481-3180	042-481-3185	042-481-318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문화재 국제교류	1,008	1,034	1,034	1,223	1,222	188	18.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34	1,011	1,008	-	3	1,034	1,034	1,008	998	-	10	1,222
· 국가간 교류협력	65	73	70	-	3	65	65	65	55	-	10	65
· 문화재 해외홍보	120	120	120	-	-	120	120	120	120	-	-	120
· 유네스코 및 세계 유산 관련 국제기 구 지원	827	796	796 [796]	-	-	827	827	801	801 [801]	-	-	1,016
· 기타 경상비	22	22	22	-	-	22	22	22	22	-	-	21
○ 비목별 분류(합계)	1,034	1,011	1,008	-	3	1,034	1,034	1,008	998	-	10	1,222
· 일반수용비(210-01)	108	108	107	-	1	108	108	114	114	-	-	10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	28	28	-	-	20	20	14	14	-	-	20
· 특근매식비(210-05)	2	2	1	-	1	2	2	2	2	-	-	2
· 임차료(210-07)	7	7	6	-	1	7	7	7	7	-	-	7
· 국내여비(220-01)	14	14	14	-	-	14	14	14	14	-	-	13
· 국외업무여비(220-02)	50	50	50	-	-	50	50	50	40	-	10	50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	-	4
· 국제부담금(340-02)	827	796	796 [796]	-	-	827	827	801	801 [801]	-	-	1,016
· 자산취득비	2	2	2	-	-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간 문화재 교류 협력으로 경험과 성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증진 및 국제사회 내 교류협력 파트너십 형성
- 우리나라 문화재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문화강국 한국의 국제사회 내 인지도 제고
- 세계유산관련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세계유산 등의 원활한 등재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문화협정
- 유네스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ROM) 등 국제기구과 체결한 협정

② 추진경위

- 기관 간 교류 협력
 -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ROM) 규약 가입('68년)
 - 한-중 문화재 교류 합의서 체결, 갱신('98년 '05년, '17년)
 - 한-멕시코 간 문화유산의 보존 감정을 위한 합의서('01년)
 - 한-일 문화재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토의기록 체결('03년)
 - 한-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갱신('06년, '16년)
 - 한-몽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갱신('06년, '16년)
 - 한-호주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09년)
 -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 한-멕시코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18년)
 - 한-필리핀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 문화재청-UNESCO 세계유산센터 간 아태지역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MOU 체결('11년)

- * '북한고구려 고분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종료로 동 기금을 북한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확대 설치
- * '12년~현재 고구려고분군 보존, 실�크로드 및 중앙아시아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워크숍 등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련 사업 지원 / '17년 갱신
- 문화재청-ICCROM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12년)
- *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연수(CollAsia) 등 운영 / '17년 갱신
- 한-미얀마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2년)
- 한-캄보디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 한-라오스 세계유산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 한-베트남 세부실행계획 체결, 갱신 ('14년, '16년, '19년)
- 한-이탈리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4년)
- 문화재청-ICOMOS 세계유산협약 주제연구 준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7년)
- 아태지역 암각화, 차 문화경관 등 세계유산 관련 주제연구 시행
- 문화재청-ICCROM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갱신('17년)
- 문화재청-멕시코 문화부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8년)
- 한-우즈베키스탄 문화부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19년)
- 문화재 해외홍보
 - '08~'19 : 'KOREAN HERITAGE' 영문 홍보지 연간 4회 발행·배포
(총 2,076개소, 연 14,000부 배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베트남, 중국 등 문화재 대표단 상호 교류, 국제교류 신탁기금 사업 추진 및 분담금 납부, 영문 홍보소식지 연 4회 발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교류 대상국, 국제기구

사 업 명
(2) 문화재국제협력(ODA)(3331-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2
명칭	문화재 국제교류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국제협력(ODA)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세계유산팀	조동주	김병연	홍인수
		여성희	박형빈	심소이
		042-481-4730	042-481-4734	042-481-4736
		042-481-3180	042-481-3185	042-481-318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문화재국제협력 (ODA)	2,380	2,073	2,073	2,773	2,773	700	33.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8월말)						2020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350	2,381	2,380	-	1	2,073	2,073	2,099	2,069		30	2,773
· 양자ODA	2,141	2,141	2,141 <2,141>	-	-	1,909	1,909	1,909	1,879 <1,802>		30	2,609
· 다자ODA	209	240	239 <239>	-	1	164	164	190	190 <189>		0	164
○ 비목별 분류(합계)	2,350	2,381	2,380	-	-	2,073	2,073	2,099	2,069		30	2,773
· 민간경상보조(320-01)	2,141	2,141	2,141 <2,141>	-	-	1,909	1,909	1,909	1,879 <1,802>		30	2,609
· 국제부담금(340-02)	209	240	239 <239>	-	1	164	164	190	190 <189>		0	1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험에 처한 협력국의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 지원 및 국제기구(UNESCO, IUCN) 기여를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에 서 한국의 입지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외국(미얀마,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등과 체결한 문화협정
-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6조(의무분담금)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6조(의무분담금)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규약 제12조(의무 분담금)
- 문화재청-IUCN 세계유산협약 및 보호구역 주제연구 및 안내서 마련에 관한 양해각서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사업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문화유산분야 MOU 체결('11)
 - '동아시아 크메르유적 기초조사 및 라오스 세계유산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11~'12)
 - 홍낭시다 유적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2)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세계유산(홍낭시다) 보존복원 협력 약정 체결('13.11.)
 - 보존환경 모니터링·지층분석, 정밀실측, 현장사무소 건립('13)
 - 지표·시굴조사, 암석 성분분석, 복원 추정도 작성, 유적 고증연구('14)
 - 시·발굴조사, 진입로 구축, 고증연구, 유적 보수설계, 지반 안전성 연구, 부재 수습·실측, 지하 유구 조사 위한 GPR 탐사, 영상 기록화사업, 국제심포지엄, 초청연수 등('15~'16)
 - 유적 답도 발굴조사, 석재 보존처리 연구용역, 주신전 보수공사 등('17)
 - 유물 실측 및 DB 구축, 주신전 부재현황 전수조사, 유물 분석 및 부재수습 등('18)
-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관리 지원사업
 - 문화재청장-유네스코 사무총장 간담회('12.8.)
 - ..“바간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지원 요청”
 - 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12.9.)
 - 미얀마 ODA 추진 정부 간(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협의('13.2.)
 -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처리장비 지원('13.9.)
 - 바간유적(난파야 사원, 짜쿠 사원) 내 보존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14.11.)
 - 바간 고고학박물관 보존환경 개선사업(수장시설 구축, 장비 지원)('15.~'17.)
 - 바간지역 지진 발생('16.8), 미얀마 측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 요청('17.1.)
 -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17.7.)
 - 바간유적 보존을 위한 기술조정포럼에서 '바간벽화 보존처리사업'계획 발표('18.3.)

-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DoA 간 관리자급 업무협약('18.3.)
 - 벽화 재료분석 기초연구, 역사고증연구(문화·건축·미술), 주요사원 디지털 기록화
 - 구조부문 지진피해 현황파악, 벽화 분석장비 지원('18.)
 -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 사업
 - 라오스 정보문화부 문화유산국 국장 면담, 무형유산 ODA 지원 요청('15.3.)
 - 라오스 무형유산(캔, 람봉) 기록화 작업 추진('15.)
 - 라오스 무형유산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원('15.11.)
 - 캄보디아 무형유산(보카토) 기록화 및 인지도 제고 활동 지원('15~'16)
 - 라오스 무형유산(까오뽀, 꺾사랑쌈싸오) 기록화 작업 추진('16.)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도예기법, 전통회반죽장식) 인벤토리 작성('17.)
 - 카자흐스탄 무형유산(전통악기 제작·연주 등) 인벤토리 작성('17.)
 - 라오스 전통악기(캔, Khaen)의 인류무형유산 등재('17.)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은공예, 전통춤 낭개오) 인벤토리 작성 및 기 작성된 종목 (인형극, 구슬연행, 래커그릇, 전통음식, 금실자수, 수공예 종이) 인벤토리 보완조사('18.)
 - 카자흐스탄 무형유산 종목(베식, 제티겐) 인벤토리 작성('18.)
 -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미등재국·과소등재국 대상 등재역량강화 지원('11.~'18.)
 - 라오스,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 지원('14.~'17.)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협약 의무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채택 ('72.)
 - 대한민국 협약 가입 ('88. 9월 가입)
 - 총 14건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재 ('19.7월 현재)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협약 의무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03)
 - 대한민국 협약 가입 ('05. 9월 가입)
 - 총 20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9.7월 현재)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의무분담금 납부
 - 문화재청 가입 ('09년)
- ※ IUCN은 UNESCO 협력기관으로 심사대상인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호 지역 지정에 영향력이 큰 전문 기관임. 이에 천연기념물 지정 등 국내 생물권 보호를 총괄하며 세계자연유산을 등재 하는 문화재청은 동 기관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의무분담금 납부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7~계속

- 사업규모 : 양자 및 다자간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
 - (양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점협력국 20여개국 대상
 - (다자) UNESCO, IUCN 국제기구 대상 분담금 및 신탁기금 공여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100%), 해외이전(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양자) 한국문화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다자) UNESCO, IUCN 등
- 사업 수혜자 :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태 10여개국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단	100	「문화재보호법」 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0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2호)

사 업 명
(3)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3331-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3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여성희	박형빈	심소이
		042-481-3180	042-481-3185	042-481-318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2,685.6	2,825	2,825	3,225	3,225	400	14.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686	2,686	2,686 [2,686]			2,825		2,825	2,825 [2,825]			3,225
· 유네스코 아태무형 유산센터 운영	2,686	2,686	2,686 [2,686]			2,825		2,825	2,825 [2,825]			3,225
○ 비목별 분류(합계)	2,686	2,686	2,686 [2,686]			2,825		2,825	2,825 [2,825]			3,225
· 민간경상보조(320-01)	2,686	2,686	2,686 [2,686]			2,825		2,825	2,825 [2,825]			3,2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공유체계 활성화) 아태지역 48개국 대상 무형유산 보호활동 정보 보급, 각국 정보역량 강화 지원
- (무형유산 네트워크 다변화 및 강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정부, 전승자, 교육기관, 비정부기구 등 이해관계자 간 인적 교류와 공동협력을 지원
- (무형유산 가시성 및 인식제고)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의 인지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공개 행사 등을 지원함
- (무형유산 정보공유 메커니즘 구축)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 서비스 등 정보 활용을 지원
- (사업기획 및 관리체계효율화) 국제 리더십 발휘를 위해 대 유네스코 협력을 강화 하고, 내부 기획역량 및 관리 강화를 도모함
- (기획 및 행정관리) 보수, 복리후생, 사무실 임차료 등 기관운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2015.3.)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간 협정(조약 2440호)(2019.12.)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체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홍보하고 아태지역 내의 무형유산 보호를 지원
- 사업 시작년도: 2005년
 - 2005. 10.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정부, 센터유치 의사 공식 표명
 - 2006. 09.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발족
 - 2008. 02. 유네스코에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제안서 제출
 - 2008. 08. 한중일센터 중점기능 분담 합의 양해각서 체결
 - 2009. 01. 유네스코본부,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수행
 - 2009. 04. 제181차 집행이사회, 유네스코 C2기구 설립 승인 권고

- 2009. 10. 제35차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 설립 승인
- 2009. 12. 센터 법정법인화 관련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상정
- 2010. 05. 한-유네스코 협정 체결에 대한 국무회의 승인 및 대통령 재가
- 2010. 06.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을 위한 한-유네스코 간 협정 체결
- 2011. 03. 센터 설립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298차 국회 본회의)
- 2011. 07.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
- 2012. 01. 제1대 이삼열 사무총장 취임
- 2014. 05. 사무소 전주 이전
- 2015. 04. 제2대 허권 사무총장 취임
- 2019. 01. 제3대 금기형 사무총장 취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사업규모 :
 -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개국 정부와 각 국에 소재하는 무형유산 관련 이해관계자 (정부, 전승자, NGO, 전문가 등)
 - 유네스코(본부)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8개 지역사무소(북경, 방콕 등)
 - 무형유산 분야 7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유네스코 가입국 48개국과 각 국에 소재하는 무형유산 관련 이해관계자(정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비정부기구, 연구자, 전승자, 일반국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사 업 명
(4)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3331-3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4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70, 50, 3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여성희	이예나 박형빈	김용갑 박영록 심소이
		042-481-3180	042-481-3181 042-481-3185	042-481-3183 042-481-3182 042-481-3186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비목별 분류(합계)	36,267	36,269	36,258 (14,997)	-	11	45,253	44,203	44,203	43,977 (23,649)	-	226	42,702
· 상용임금(110-03)	70	72	72	-	-	76	76	76	74	-	2	79
· 일반수용비(210-01)	190	167	167	-	-	990	940	206	187	-	19	188
· 공공요금(210-02)	3	4	4	-	-	3	3	3	3	-	-	3
· 특근매식비(210-05)	2	2	1	-	1	2	2	2	2	-	-	2
· 임차료(210-07)	-	15	15	-	-	-	-	3	3	-	-	-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	-	1
· 일반용역비(210-14)	-	-	-	-	-	380	380	1,110	1,059	-	51	600
· 국내여비(220-01)	29	35	34	-	2	29	29	29	24	-	5	29
· 국외여비(220-02)	59	59	59	-	-	59	59	59	8	-	51	59
· 업무추진비(240-01)	7	7	7	-	-	7	7	7	4	-	3	7
· 일반연구비(260-01)	67	67	66	-	1	467	467	467	424	-	43	567
· 민간경상보조(320-01)	50	50	49 (49)	-	1	650	650	650	600 (493)	-	50	85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 고용부담금(320-09)	13	13	13	-	-	14	14	14	14	-	-	15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442	3,442	3,436 (2,804)	-	6	4,765	4,765	4,765	4,765 (3,726)	-	-	4,765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2,132	32,132	32,132 (11,503)	-	-	37,607	36,607	36,607	36,606 (19,230)	-	1	34,334
· 국제부담금(340-02)	-	-	-	-	-	-	-	-	-	-	-	1,000
· 자산취득비(430-01)	3	3	3	-	-	3	3	3	3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리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관광 효과 증대
-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보수정비) 지원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학술 및 연구 지원
- 세계유산 홍보 관련 지원
- 세계유산 관련단체의 국제 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원근거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② 추진경위

- '68년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UM) 규약 가입
- '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 '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첫 등재
- '97년 훈민정음 및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유산 첫 등재
- '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첫 선정
- '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 '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
- '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첫 등재
- '08년 무형유산협약 위원국 진출
- '0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문화재청 가입
- '09년 무형유산협약 심사보조기구 진출
- '09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 '09년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 '09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인류무형유산 등재

- '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문화유산 등재
- '11년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2년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 '14년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 '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 '15년 줄다리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 '16년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7년 제12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주, 12.4~12.8)
- '18년 씨름 인류무형유산 등재
- '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 '18년 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카테고리II급) 설립 제안서 제출
- '19년 5월 '한국의 서원'(9개소) 세계유산 등재권고
- '19년 5월 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 타당성 현지실사
- '19년 7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 '19년 11월 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 설립 승인
- '20년 12월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세계유산 14건, 인류무형유산 21건, 세계기록유산 16건, 잠정목록 13건에 대한 홍보 관리사업 및 신규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코모스한국위원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자체 보조	70/50/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5)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보조)(3331-305)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5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보조)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3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곽수철	주충효	박상익
		041-852-9723	041-852-9724	041-852-972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보조)	23,351	31,000	25,100	32,900	31,900	6,800	27.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3,351	23,351	23,351 (17,581)	-	-	31,000	25,100	25,100	25,100 (22,408)	-	-	31,900
· 공주 유적지구 보존관리	3,256	3,256	3,256 (1,413)	-	-	10,767	10,292	10,292	10,292 (10,244)	-	-	6,667
· 부여 유적지구 보존관리	14,416	14,416	14,416 (13,525)	-	-	13,058	8,863	8,863	8,863 (7,482)	-	-	18,058
· 익산 유적지구 보존관리	5,679	5,679	5,679 (2,643)	-	-	7,175	5,945	5,945	5,945 (4,682)	-	-	7,175
○ 비목별 분류(합계)	23,351	23,351	23,351 (17,581)	-	-	31,000	25,100	25,100	25,100 (22,408)	-	-	31,900
· 자치단체지원보조(330-03)	23,351	23,351	23,351 (17,581)	-	-	31,000	25,100	25,100	25,100 (22,408)	-	-	31,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9개소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정비를 통해 백제왕도 기본골격을 회복, 민족문화 부흥과 문화융성 기반 확대
- (사업내용)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문화유산 정비 및 관람환경개선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문화재청장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문재인대통령 지역공약(충남3-2 / 2017.5월)
 -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88년 가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1988년)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2005년)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청-5개 광역·기초 지자체)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2015년 7월)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 문화재위원회 승인(2016년 10월)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시행(2017년~)
- 대통령 충청남도 지역공약(2017년 5월)
 - :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발족(2017년 12월)
 -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00호, 2017. 12. 5. 제정)
- 공주·부여·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마련(2018년)
-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2019~2020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규모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부여·익산 9개소에 대한 보존·관리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공주·부여·익산)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6)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331-30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6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조동주	김병연	홍인수
		042-481-4730	042-481-4734	042-481-473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당초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5,206	5,758	5,758	10,519	6,653	895	15.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221	5,211	5,206	-	5	5,758	5,758	5,758	5,691		67	6,653
· 국외소재 문화재 재 단 조사 및 환수활 용 사업	4,112	4,112	4,112	-	-	4,636	4,636	4,636	4,636 <4,343>		0	5,531
· 주미대 한제 국공사 관관리 및 운영	891	891	891	-	-	891	891	891	891 <748>		0	891
·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정책기반 구축	218	208	204	-	5	231	231	231	164		67	231
○ 비목별 분류(합계)	5,221	5,211	5,206		5	5,758	5,758	5,758	5,691		67	6,653
· 상용임금(110-03)	67	65	64	-	1	77	77	75	69		6	79
· 일반수용비(210-01)	45	49	49	-	-	45	45	45	28		17	4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	-	1	1	1	1		0	1
· 임차료(210-07)	6	2	2	-	-	6	6	6	2		4	6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0	1
· 국내여비(220-01)	24	16	16	-	-	23	23	24	17		7	24
· 국외업무여비(220-02)	52	52	52	-	-	53	53	53	25		28	52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8	8		0	8
· 민간경상보조(320-01)	5,003	5,003	5,003 <4,965>	-	-	5,527	5,527	5,527	5,527 <5,091>		0	6,422
· 고용부담금(320-09)	12	12	8	-	4	15	15	16	11		5	15
· 자산취득비(430-01)	2	2	2	-	-	2	2	2	2		0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환수를 통해 국민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현지 활용
- 환수 분야의 특수성(외교적·정치적 상황 영향 등)을 고려, 민간(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의 협업(Two-track)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유연성 및 효과성 제고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향후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7조~제69조의3
 - 국외문화재 환수에 관한 정부의 책무 및 예산 확보 규정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및 운영 규정
-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발효: 1972.4.2./가입: 1983.5.14.)
 -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 및 환수 업무를 위해 각 국가는 충분한 조직과 인력 보유 규정 (제5조)

② 추진경위

- 1992년~2011.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등 반환
- 2006년 4월 : MBC 느낌표 '위대한유산 74434' 방송
- 2006년 7월 : 동경대 소장 조선왕조실록 환수
- 2007년 7월 : 김시민 공신교서 환수
- 2007년 10월 : 어재연장군기 장기 대여
- 2007년 10월 : 미국 LA카운티 박물관 소재 한국문화재 홍보물 제작 지원
- 2008년 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 자료 대국민 서비스
- 2010년 11월 : APEC 계기 한-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합의
- 2010년 11월 : G-20계기 한-불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 반환 합의
- 2011.2.4. 국가가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예산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67, 68, 69조 시행)
- 2011.4월 대통령 지시사항 : 외규장각도서 환수를 계기로 국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2011년, 문화재환수 원년)
- 1992년~2011.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 2011.5월 : 국외문화재 환수전담 조직 설립
- 2011.6월 : 대통령 지시사항 : 문화재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는 것이 역사 복원에 큰 역할이므로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일에 노력할 것(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 시)
- 2012년 7월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 2013년 한미 수사공조에 따른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 2014년 한미 수사공조에 대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환수
- 2015년 문화재청 - 美 시애틀미술관 협상을 통한 덕종어보 환수
- 2015년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으로부터 덕혜옹주 유품 7점 수증
- 2015년 미국 경매 출품 도난(선암사불화) 불화 환수
- 2016년 독일성오틸리엔수도원 곤여전도 병풍 배접지 등 환수
- 2016년 수빈박씨 인장함 1점 수증
- 2017년 한미 수사공조에 따른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반환
- 2017년 미국 경매 출품 도난문화재 옥천사 나한상 환수
- 2017년 미국 경매 출품 강노 초상 매입 환수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 국외소재문화재(약 16만여점)의 환수 및 현지 활용 도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단체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00%	·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3

사 업 명
(1) 문화유산 활용 진흥(3431-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1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0~5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김중승	김용복, 이광구	정현정, 황은미 정석경, 조혜연
		042-481-4740	042-481-4742,4745	042-481-4808,4746 042-481-4744,474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유산 활용 진흥	33,820	40,190	40,133	58,088	51,162	11,029	27.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3,863	33,863	33,820 [30,656]		43	40,190	40,133	40,133	40,087 [35,463]		46	51,162
·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14,035	14,035	14,035		-	13,980	13,980	13,980	13,980 [13,624]			21,650
·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개발·운 영	12,168	12,168	12,168 [11,937]		-	18,168	18,168	18,168	18,145 [15,557]		23	19,468
· 문화유산 활용 전 문인력 육성	71	71	71		-	200	200	200	200 [188]			300
· 문화유산 스토리텔 링 등 활성화	234	234	227		7	234	234	234	233		1	234
·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6,099	6,099	6,099 [3,166]		-	3,531	3,531	3,531	3,531 [2,464]			2,931
· 문화유산 관람서비 스 구축						3,000	3,000	3,000	3,000 [2,400]			3,000
· 문화유산 향유 서 비스 개선												2,500
· 사업운영경비	1,256	1,256	1,220		36	1,077	1,020	1,020	998		22	1,079
○ 비목별 분류(합계)	33,863	33,863	33,820 [30,656]		43	40,190	40,133	40,133	40,087 [35,463]		48	51,162
· 상용임금(110-03)	82	82	80		2	82	82	82	78		4	85
· 일반수용비(210-01)	845	572	564		8	745	712	465	463		2	489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5	5		-	5	5	5	2		3	5
· 특근매식비(210-05)	3	3	1		2	3	3	3	1		2	3
· 임차료(210-07)	10	15	10		5	10	10	10	3		7	1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1	1	1	1			1
· 일반용역비(210-14)	500	768	765		3	710	710	957	953		4	790
· 국내여비(220-01)	41	43	41		2	31	31	31	31			31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24	22	22		-	24	-	-	-			24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10	10	10	10			10
· 일반연구비(260-01)	60	60	53		7	60	60	60	59		1	60
· 정책연구비(260-02)	80	80	67		13	-	-	-	-			-
· 포상금(310-03)	45	45	45		-	45	45	45	45			55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371	371	371 [371]		-	3,500	3,500	3,500	3,500 [2,888]			3,640
· 민 간 위 탁 사 업 비 (320-02)	14,035	14,035	14,035		-	12,300	12,300	12,300	12,300 [12,246]			15,150
· 고용부담금(320-09)	15	15	14		1	16	16	16	16			16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2,168	12,168	12,168 [11,937]		-	19,848	19,848	19,848	19,825 [16,934]		23	25,893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5,568	5,568	5,568 [2,635]		-	2,800	2,800	2,800	2,800 [1,733]			4,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정착, 외국인 관광객 이천만시대 도래 등 늘어나는 문화유산 향유 수요 증대에 능동적 대비 및 문화유산 창조적 활용,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전개
- (세계유산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인류 자산인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활용한 축전, 활용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고, 고품질 복합 콘텐츠 보급
- (문화유산 글로벌 활용사업)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를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 '19년 기준 259억원(국비122+지방비137)을 투입하여 약 8배의 경제파급효과(2,298억원)와 약 1,82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었으며, ' 20년에는 예산 442억원(국비182+지방비260)을 투입하여 2,300억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와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함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 및 이야기자원의 재가공으로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등 문화유산 부가가치 극대화 실현

-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공공시설물(안내판) 및 관람편의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문화유산의 품격에 맞는 관람환경 개선으로 관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문화재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 개선·점검과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재 활용 제고의 효과 도출 및 콘텐츠 발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2007년
- 문재인정부 공약(194-4) 및 국정과제(67-5)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 사업 추진배경
 - 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문화재 정책의 기본 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적절한 활용이 바람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심과제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역사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례와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요구 대두
 - 국가차원의 문화재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사업 전개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세계유산축전 및 활용 사업 운영
 -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개발·운영(생생문화재, 향교·서원·산사 활용, 문화재야행)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운영(이야기자원 발굴, 활용 프로그램)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등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한국문화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호)

사 업 명
(2)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3431-3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4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제작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전기선	김용구 서기관 조용대 사무관	이정엽 김혜원 이상미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52	042-481-3153 042-481-3145 042-481-314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2,018	16,152	16,152	19,359	16,232	80	0.4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515	2,513	2,018		495	16,152	16,152	15,992	14,702			16,232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1,015	1,013	817		196	252	252	252	198			252
·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3,640	3,640	3,640	3,640			4,000
· 대표유산체험·전 시 콘텐츠 제작보급						1,760	1,760	1,760	1,620			2,500
· 디지털문화유산 나눔방 운영 및 콘텐츠 확대	1,500	1,500	1,201		299	1,500	1,500	1,500	1,500			1,480
· 한양도성 타임머신						9,000	9,000	8,840	7,744			8,000
○ 비목별 분류(합계)	2,515	2,513	2,018		495	16,152	16,152	15,992	14,702			16,232
· 상용임금(110-03)	47	42	0		42	44	44	35				0
· 일용임금(110-04)		3	2		1			9	7			0
· 일반수용비(210-01)	30	22	22			97	97	97	95			139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	1	1			1	1	1	1			1
·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1	1	1			1
· 복리후생비(210-12)												0
· 일반용역비(210-14)		8	8			9,299	9,299	8,895	7,694			9,531
· 국내여비(220-01)	6	6	6			9	9	9	9			7
· 국외여비(220-02)												20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 일반연구비(260-01)	940	940	794		146	50	50	294	252			5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6,640	6,640	6,640	6,640			6,480
· 고용부담금(320-09)	8	8	0		8	8	8	8	0			0
· 실시설계비(420-02)	82	82	78		4	-	-	-	-			-
· 공사비(420-03)	1374	1374	1084		290	-	-	-	-			-
· 감리비(420-04)	17	17	16		1	-	-	-	-			-
· 시설부대비(420-05)	9	9	6		3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3D 스캐닝 및 모델링) 및 일반 국민이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유산 향유 콘텐츠 제공을 위한 경상경비
- (실감형 문화유산 제작 및 보급)
 - 유형, 무형, 유무형 통합문화유산, 세계유산 등 최적의 실감형 기술을 적용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 및 온오프라인 보급으로 국민 향유기반 확대
-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사업)
 - 국보·보물 및 세계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및 원형데이터 구축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보급함.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운영 및 콘텐츠 확대)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능동적 관심과 참여기회 제공
- (한양도성 타임머신)
 -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을 빅데이터로 구축, 인공지능 기술로 연결·맥락화하여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4차원(3D+시간) 가상공간에 실물 크기로 기록·복원·재현한 실감 콘텐츠 서비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단의 설치) 2호, 8호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2의제2호(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에 관한 MOU 체결 (문화재청-행복도시건설청/'11.3월)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건립방안 연구용역('11.11월)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협약식 체결 (5개부처, '12.6월)

- 디지털문화유산 임시영상관 운영('12.7월~, 세종시)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추진 TF 운영('15.4.15.~'16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전시기본계획 및 공간구성 연구용역('16년)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보급('11~'19년, 25편 제작, 21,932건 배포)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개관('20.4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 : '19년~
- 사업규모 : 연차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영상, AR,VR 등)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3) 한국문화재단지원(3431-30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6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한국문화재단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김종승	김용복	권주향
		042-481-4740	042-481-4741	042-481-474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한국문화재단지원	9,679	11,004	11,004	11,754	11,331	327	3.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679	9,679	9,679 [9,679]	-	-	11,004	11,004	11,004	11,004 [11,004]	-	-	11,331
· 경상운영비	4,117	4,117	4,117 [4,117]	-	-	5,029	5,029	5,029	5,029 [5,029]	-	-	5,356
· 정보화사업	448	448	448 [448]	-	-	448	448	448	448 [448]	-	-	448
·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 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	500	500	500 [500]	-	-	600	600	600	600 [600]	-	-	600
·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600	600	600 [600]	-	-	600	600	600	600 [600]	-	-	600
· 한국의 명인명창 공연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전통예술공연 홍보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 전수교육관 활성화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전수교육관 관리위탁	1,406	1,406	1,406 [1,406]	-	-	1,406	1,406	1,406	1,406 [1,406]	-	-	1,406
·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700	700	700 [700]	-	-	700	700	700	700 [700]	-	-	700
· 국유재산 시설보수	1,308	1,308	1,308 [1,308]	-	-	1,621	1,621	1,621	1,621 [1,621]	-	-	1,621
○ 비목별 분류(합계)	9,679	9,679	9,679 [9,679]	-	-	11,004	11,004	11,004	11,004 [11,004]	-	-	11,331
· 민간경상보조 (320-01)	4,765	4,765	4,765 [4,765]	-	-	5,677	5,677	5,677	5,677 [5,677]	-	-	6,00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914	4,914	4,914 [4,914]	-	-	5,327	5,327	5,327	5,327 [5,327]	-	-	5,3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단 지원을 통해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도모
 - 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경상운영비, 정보화사업)
 - 전통문화 홍보사업 및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전수교육관 공연전시, 한국문화의집 공연, 한국의 명인명창 공연, 전통예술 공연 홍보,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전수교육관·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국유재산 시설보수)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단의 설치)
 - 제9조(한국문화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89년
 - 추진배경 :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증진하고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89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민 수혜 대상(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전통문화 홍보사업,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전통문화유산 향유계층) /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4) 문화재 사회적 기업 육성(3431-31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10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재사회적기업육성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전기선	장영기	선우훈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문화재사회적기업 육성	-	-	-	1,500	500	50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500
·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	-	-	-	-	-	-	-	-	-	-	5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500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개발비지원)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통합,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하여 문화유산 보존·활용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지침(2014.5월 개정)
-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문화재분야 사회적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을 위하여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관리함

② 추진경위

-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1.6.9.)」 결과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지원키로 결정
- 문화유산 관련분야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지침」 제정(2012.4.)
- 2012년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58개(누적) 기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6월 기준 지정 기업 20개기업(지정만료 등으로 감소)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개 기업(누적 지정기업 50개, 연평균 신청기업 10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문화재형사회적경제연합회
- 사업 수혜자 : 문화재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사 업 명

(5)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신규)(34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12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김종승	이광구	정현정
		042-481-4740	042-481-4745	042-481-480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	-	-	0	350	35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350
· 정읍 문화유산 방 문자센터 건립	-	-	-	-	-	-	-	-	-	-	-	35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350
· 자치단체 자본보 조(330-03)	-	-	-	-	-	-	-	-	-	-	-	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관람·해설 등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전시·체험·공연하는 복합공간을 지역별로 조성
- 문화유산 활용과 지역 문화 향유권 확대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21년
- 사업 추진배경
 - 문화재 활용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지역별 활용 사업 및 콘

텐츠·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전시·공연·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지역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별로 필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광역별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호)

사 업 명
(6) 국립고궁박물관 운영(34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01
명칭	문화재 활용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박근용	강경보	여찬원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5
	전시홍보과	김충배	이경은	채혜련
		02-3701-7630	02-3701-7651	02-3701-7653
	유물과학과	김성배	권혁남	김효윤
		02-3701-7660	02-3701-7681	02-3701-769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10,042	18,041	17,948	18,089	14,704	△3,244	△18.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465	10,501	10,042	-	459	18,041	17,948	18,108	17,396 [15,490]	[1,906]	712	14,704
.왕실문화 전시 및 교육 운영	4,610	4,644	4,427	-	217	4,238	4,193	3,004	2,887		117	5,085
.왕실문화재 보존 및 조사연구	2,686	2,686	2,644	-	42	3,336	3,298	3,321	3,207		114	4,299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3,169	3,170	2,970	-	200	3,767	3,757	5,083	4,602		481	4,006
.인천공항미디어월 설치	-	-	-	-	-	6,700	6,700	6,700	6,700 [4,794]	[1,906]	0	1,314
○ 비목별 분류(합계)	10,465	10,501	10,042	-	459	18,041	17,948	18,108	17,396 [15,490]		712	14,704
.상용임금(110-03)	2,332	2,334	2,334		0	2,767	2,767	2,767	2,478		289	2,856
.일용임금(110-04)	305	305	98		207	125	125	125	27		98	125
.일반수용비(210-01)	1,297	1,191	1,190		0	1,290	1,215	1,359	1,356		3	1,279
.공공요금및제세(210-02)	656	687	686		1	607	607	683	682		1	738
.피복비(210-03)	25	25	25		0	25	25	18	17		1	28
.특근매식비(210-05)	18	12	10		2	18	18	10	10			18
.임차료(210-07)	107	100	98		2	102	102	55	55			101
.시설장비유지비(210-09)	411	422	420		2	417	417	404	404			535
.재료비(210-11)	60	60	60		0	60	60	60	60			60
.복리후생비(210-12)	34	34	30		4	39	39	39	39			39
.일반용역비(210-14)	1,416	1,527	1,527		0	1,349	1,349	1,414	1,409		5	1,464
.국내여비(220-01)	47	47	44		3	46	46	46	41		5	44
.국외업무여비(220-02)	72	72	71		1	67	51	0	0			59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0	17	16	16	16			15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7		3	40	40	40	37		3	690
.민간위탁사업비(320-02)	0	0	0		0	6,700	6,700	6,700	6,700 [4,794]	[1,906]		1,314
.고용부담금(320-09)	436	436	319		117	522	522	522	479		43	548
.실시설계비(420-02)	126	126	102		24	119	119	119	68		51	176
.공사비(420-03)	1,914	1,914	1,824		90	1,720	1,720	1,720	1,586		134	1,729
.감리비(420-04)	0	0	0		0	11	11	11	10		1	-
.시설부대비(420-05)	10	10	8		2	8	8	8	7		1	8
.자산취득비(430-01)	1,082	1,082	1,080		2	1,992	1,992	1,992	1,915		77	2,8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왕실문화 전시 및 교육 운영) 상설전시실 운영 및 왕실문화 특성을 살린 전시회 개최, 왕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전시실 시설정비
- (왕실문화재 보존 및 조사연구)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연구 및 과학적 보존처리·분석
-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노후시설 보수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사업)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국립중앙박물관 임시이전 계획 보고(대통령 결재, '93.10.19.)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상설전시실(7실, 5,608㎡) 운영, 특별전 2회 개최
 - 대상자별 맞춤형 왕실문화 교육 개발, 운영
 - 소장품(72,000여 점) 조사·연구·관리 및 보존처리
 - 박물관(연면적 29,665㎡) 시설관리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3502-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02	10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종수	김영미	박순홍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해양문화재연구소 인건비(총액인건 비대상)	4,912	5,458	5,280	5,667	5,667	387	7.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261	5,261	4,912		349	5,458	5,280	5,280	5,148	-	132	5,667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5,261	5,261	4,912		349	5,458	5,280	5,280	5,148	-	132	5,667
○ 비목별 분류(합계)	5,261	5,261	4,912		349	5,458	5,280	5,280	5,148	-	132	5,667
· 보수(110-01)	4,662	4,662	4,360		302	4,829	4,709	4,709	4,625	-	84	5,010
· 기타직보수(110-02)	534	534	524		10	571	571	571	523	-	48	604
· 연가보상비(110-05)	65	65	28		37	58	0	0	-	-	-	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동 내역사업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지급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 개설
- '90. 01. 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개소
- '94. 05. 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2)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518-2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18	21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종수	김영미	박순홍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	231	261	261	284	284	23	8.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47	247	231		16	261	261	261	248	-	13	284
· 인건비(110)	84	84	84			96	96	96	92	-	4	99
· 운영비(210)	114	114	99		15	109	109	109	106	-	3	125
· 직무수행경비(250)	33	33	33			32	32	32	32	-	0	33
· 민간이전(320)	16	16	15		1	24	24	24	18	-	6	27
○ 비목별 분류(합계)	247	247	231		16	261	261	261	248	-	13	284
· 상용임금(110-03)	84	84	84			96	96	96	92	-	4	99
· 특근매식비(210-05)	2	2	1		1	1	1	1	0	-	1	1
· 일.숙직비(210-06)	87	87	73		14	86	86	86	86	-	-	104
· 복리후생비(210-12)	8	8	8			8	8	8	6	-	2	6
· 기타운영비(210-16)	17	17	17			14	14	14	14	-	-	14
· 직책수행경비(250-02)	33	33	33			32	32	32	32	-	0	33
· 고용부담금(320-09)	16	16	15		1	24	24	24	18	-	6	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동 사업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원 인건비(무기계약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를 지급하는 것임
-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 경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도모함
- 그 외 기관·선박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기본경비인 일·숙직비 및 특근매식비를 지원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 개설
- '90. 01. 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개소
- '94. 05. 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인건비(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및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및 공무원 근로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3518-25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18	25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중수	김영미	박순홍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	827	859	859	823	823	△36	△4.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65	865	827		38	859	859	859	795	-	64	823
· 인건비(110)	330	330	326		4	338	338	338	337	-	1	350
· 운영비(210)	390	390	371		19	361	361	361	332	-	29	315
· 여비(220)	53	53	52		1	58	58	58	41	-	17	55
· 관서업무추진비(240)	20	20	20		-	21	21	21	18	-	3	19
· 보전금(310)			-		-	7	7	7	7	-	-	7
· 민간이전(320)	62	62	48		14	64	64	64	50	-	14	67
· 기타유형자산(430)	10	10	10		-	10	10	10	10	-	-	10
○ 비목별 분류(합계)	865	865	827		38	859	859	859	795	-	64	823
· 상용임금(11-03)	330	330	326		4	338	338	338	337	-	1	350
· 일반수용비(210-01)	75	115	113		2	84	84	84	84	-	-	7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6	179	172		7	181	181	181	157	-	24	181
· 피복비(210-03)	9	9	9			9	9	9	9	-	-	9
· 임차료(210-07)	2	4	4			2	2	2	0	-	2	2
· 유류비(210-08)	18	13	3		10	5	5	5	2	-	3	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8	58	58			68	68	68	68	-	0	32
· 재료비(210-11)	6	6	6			6	6	6	6	-	-	6
· 복리후생비(210-12)	6	6	6			6	6	6	6	-	-	6
· 국내여비(220-01)	53	53	52		1	58	58	58	41	-	17	55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0	20	20			21	21	21	18	-	3	19
· 포상금(310-03)			-			7	7	7	7	-	-	7
· 고용부담금(320-09)	62	62	48		14	64	64	64	50	-	14	67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동 사업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원 인건비(무기계약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를 지원함
-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경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도모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임
- 전시관 환경관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관람객에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국고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 개설
 - '90. 01. 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개소
 - '94. 05. 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공무원 인건비 및 관람환경편의시설 및 유지보수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람객, 관련 전문가 외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1) 공능유적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36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01	101
명칭	공능유적본부운영	공능유적본부인건비	공능유적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능유적본부	공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지홍	홍준기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공능유적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14,829	14,451	15,868	15,081	630	4.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829	14,451	14,451	13,513		938	15,081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14,829	14,451	14,451	13,513		938	15,081
○ 비목별 분류(합계)						14,829	14,451	14,451	13,513		938	15,081
· 보수(110-01)						13,787	13,577	13,537	12,618		919	14,027
· 기타직보수(110-02)						873	873	913	895		18	903
· 연가보상비(110-05)						169	1	1	0		1	1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공능유적본부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궁능유적본부

사 업 명

(2) 공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6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11
명칭	공능유적본부운영	공능유적본부기본경비	공능유적본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능유적본부	공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지홍	홍준기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공능유적본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193	193	206	206	13	6.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3	193	193	184		9	206
· 공능유적본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3	193	193	184		9	206
○ 비목별 분류(합계)						193	193	193	184		9	206
· 특근매식비(210-05)						2	2	2	1		1	2
· 일숙직비(210-06)						87	87	86	80		6	87
· 복리후생비(210-12)						5	5	5	3		2	5
· 기타운영비(210-16)						39	39	40	40			52
· 직책수행경비(250-02)						60	60	60	60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능유적본부 및 4대궁·종묘, 세종대왕유적, 조선왕릉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의 과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궁능유적본부

사 업 명
(3)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3618-25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51
명칭	궁능유적본부운영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지홍	홍준기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공능유적본부기본경비	-	543	543	841	841	298	54.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43	543	543	499		44	841
· 공능유적본부기본경비						543	543	543	499		44	841
○ 비목별 분류(합계)						543	543	543	499		44	841
· 상용임금(110-03)						85	85	85	83		2	88
· 일반수용비(210-01)						115	115	160	153		7	19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9	129	95	94		1	129
· 피복비(210-03)						17	17	17	16		1	0
· 임차료(210-07)						0	0	0	0		0	240
· 유류비(210-08)						13	13	13	11		2	1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	11	4	4		0	11
· 복리후생비(210-12)						3	3	3	1		2	3
· 관리용역비(210-15)						2	2	0	0		0	0
· 기타운영비(210-16)						15	15	13	12		1	15
· 국내여비(220-01)						50	50	50	24		26	4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2	22	22	22		0	20
· 포상금(310-03)						2	2	2	2		0	2
· 고용부담금(320-09)						16	16	16	15		1	17
·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62		1	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궁능유적본부 및 4대궁·종묘, 세종대왕유적, 조선왕릉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궁능유적본부

사 업 명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7101-1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성조	문선경	장해숙
		042-481-4780	042-481-4785	042-481-478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43,595	34,489	33,730	36,908	35,329	1,599	4.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5,074	45,074	43,595		1,479	34,489	33,730	33,695	31,099			35,329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45,074	45,074	43,595		1,479	34,489	33,730	33,695	31,099			35,329
○ 비목별 분류(합계)	45,074	45,074	43,595		1,479	34,489	33,730	33,695	31,099			35,329
· 보수(110-01)	42,299	42,299	41,195		1,104	32,925	32,572	32,482	29,926			33,743
· 기타직보수(110-02)	2,203	2,203	2,125		78	1,158	1,158	1,213	1,173			1,222
· 연가보상비(110-04)	572	572	275		297	406	0	0	0			3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문화재청(본청)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보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본청)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7101-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음자	국고보조율(%)	음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이상협	김영아	이다인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21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총액인건 비대상)	6,435	7,261	7,113	7,769	7,376	263	3.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720	6,720	6,435		285	7,261	7,113	7,148	6,715		433	7,376
· 인건비(총액대상)	6,720	6,720	6,435		285	7,261	7,113	7,148	6,715		433	7,376
○ 비목별 분류(합계)	6,720	6,720	6,435		285	7,261	7,113	7,148	6,715		433	7,376
· 보수(110-01)	6,664	6,664	6,411		253	7,212	7,112	7,112	6,682		430	7,332
· 기타직보수(110-02)							0	35	33		2	0
· 연가보상비(110-05)	56	56	24		32	49	1	1	0		1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직원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청장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 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0년
- 추진배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94. 5. 2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개교(‘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11.7.14 제정/‘12.7.15 시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개원(2개 대학원 3개학과)(‘13. 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14.1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년~계속
- 사업규모
 - 교 직 원 : 총 102명(총장 1명, 교원 37명, 조교 8명, 직원 56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사 업 명
(3)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단위사업명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안형순	최영호	조선희
		042-481-4620	042-481-4630	042-481-463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본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144	1,230	1,230	1,235	1,23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30	1,224	1,144		80	1,230	1,230	1,230	1,138		92	1,230
· 기관운영	310	304	293		11	312	312	312	295		17	312
· 직원복리후생	920	920	851		69	918	918	918	843		75	918
○ 비목별 분류(합계)	1,230	1,224	1,144		80	1,230	1,230	1,230	1,138		92	1,230
· 특근매식비(210-05)	27	17	14		3	22	22	15	9		6	17
· 일숙직비(210-06)	19	19	19		0	19	19	19	19		0	19
· 복리후생비(210-12)	920	920	851		69	918	918	918	843		75	918
· 기타운영비(210-16)	43	53	53		0	49	49	56	54		2	54
· 직책수행경비(250-02)	203	197	189		8	203	203	203	194		9	203
· 특정업무경비(250-03)	17	17	17		0	19	19	19	19		0	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세부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상경비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청 기본경비 중 일부비목을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편성·운영, 경직적 정원·보수관리방식을 탈피하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 부여하고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 제5조 (하부조직) 제1항 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 및 문화재활용국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4) 본청기본경비(7111-25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단위사업명	본청기본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안형순	최영호	조선희
		042-481-4620	042-481-4630	042-481-463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본청기본경비	2,369	2,545	2,477	2,646	2,487	10	0.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391	2,391	2,369	0	34	2,545	2,477	2,449	2,366	0	83	2,487
· 기관운영지원	1,435	1,435	1,489	0	21	1,550	1,536	1,601	1,583	0	18	1,601
·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512	512	525	0	2	553	548	568	540	0	28	490
· 문화재정책국 기본경비	70	70	89	0	0	70	55	42	35	0	7	56
· 문화재보존국 기본경비	88	88	46	0	3	87	68	47	28	0	19	74
· 문화재활용국 기본경비	73	73	62	0	0	73	58	41	38	0	3	66
· 신리왕경추진단 기본경비	109	109	92	0	5	109	109	76	69	0	7	103
· 백제왕도추진단 기본경비	104	104	67	0	2	103	103	74	73	0	1	97
○ 비목별 분류(합계)	2,391	2,403	2,369	0	34	2,545	2,477	2,449	2,366	0	83	2,487
· 상용임금(110-03)	189	193	190	0	3	208	208	206	198	0	8	219
· 일반수용비(210-01)	673	749	748	0	0	695	656	771	767	0	4	54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0	69	65	0	4	70	70	68	67	0	1	70
· 특근매식비(210-05)	13	8	7	0	1	16	17	7	6	0	1	16
· 임차료(210-07)	213	190	184	0	6	218	218	201	200	0	1	254
· 유류비(210-08)	24	24	21	0	3	24	24	15	14	0	1	2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1	76	75	0	1	61	61	57	57	0	0	61
· 복리후생비(210-12)	6	6	2	0	4	6	6	3	3	0	0	6
· 일반용역비(210-14)	30	51	51	0	0	110	110	105	105	0	0	116
· 기타운영비(210-16)	39	39	38	0	1	39	39	36	36	0	0	41
· 국내여비(220-01)	371	331	324	0	7	371	371	278	239	0	39	354
· 국외업무여비(220-02)	77	44	43	0	1	69	69	17	0	0	17	45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58	156	155	0	1	163	140	140	138	0	2	151
· 연구용역비(260-01)	0	0	0	0	0	0	0	22	21	0	1	
· 포상금(310-03)	39	39	39	0	1	39	39	39	33	0	6	39
· 고용부담금(320-09)	34	34	34	0	0	39	39	74	72	0	2	56
· 자산취득비(430-01)	94	94	94	0	0	116	110	110	110	0	0	186
· 무형자산(440-00)	300	300	299	0	1	300	300	300	300	0	0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세부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21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 활용국, 신라왕경추진단, 백제왕도추진단)을 위한 기본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 학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이상협	김영아	이다인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21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83	195	195	195	195	0	0.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5	195	183		12	195	195	195	182		13	195
· 운영경비	195	195	183		12	195	195	195	182		13	195
○ 비목별 분류(합계)	195	195	183		12	195	195	195	182		13	195
· 특근매식비(210-05)	23	21	12		9	23	23	14	9		5	23
· 일숙직비(210-06)	19	21	21			19	19	24	22		2	19
· 기타운영비(210-16)	36	36	34		2	39	39	39	39		0	36
· 직무수행경비(250-02)	117	117	116		1	117	117	117	111		6	1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청장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 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0년
- 추진배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94. 5. 2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개교(‘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11.7.14 제정/‘12.7.15 시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개원(2개 대학원 3개학과)(‘13. 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14.1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년~계속
- 사업규모
 - 교 직 원 : 총 102명(총장 1명, 교원 37명, 조교 8명, 직원 56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사 업 명

(6)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응자	국고보조율(%)	응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박근용	강경보	여찬원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 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06	122	122	125	125	3	2.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7	117	106		11	122	122	122	111		11	125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17	117	106		11	122	122	122	111		11	125
○ 비목별 분류(합계)	117	117	106		11	122	122	122	111		11	125
.상용임금(110-03)	51	51	51		1	55	55	55	55			57
.일·숙직비(210-06)	19	19	19		0	19	19	19	19			19
.복리후생비(210-12)	1	1	0		1	1	1	1	1		1	1
.기타운영비(210-16)	12	12	12		0	12	12	12	12			13
.월정직책급(250-02)	24	24	24		0	24	24	24	24			24
.고용부담금(320-09)	9	9	0		9	10	10	10	0		10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 현충사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이재훈	김지나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현충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377	446	446	461	461	15	3.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09	409	377		32	446	446	446	434		12	461
· 현충사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409	409	377		32	446	446	446	434		12	461
○ 비목별 분류(합계)	409	409	377		32	446	446	446	434		12	461
· 상용임금(110-03)	315	315	293		22	345	345	345	336		9	357
· 특근매식비(210-05)	3	3	2		1	3	3	3	2		1	3
· 일숙직비(210-06)	13	13	13			13	13	13	13			13
· 복리후생비(210-12)	5	5	5			4	4	4	4			4.4
· 기타운영경비(210-16)	7	7	6		1	7	7	7	6		1	7.3
· 직무수행경비(250-02)	7	7	7			7	7	7	7			7.3
· 고용부담금(320-09)	59	59	51		8	66	66	66	65		1	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충사관리소 인건비성 조직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 ② 추진경위 :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8)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류시영 소장 041-753-8701	고민선 041-753-870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9	19	19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	19	19			19	19	19	19			19
·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9			19	19	19	19			19
○ 비목별 분류(합계)	19	19	19			19	19	19	19			19
·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1	1	1			1
· 일·숙직비(210-06)	13	13	13			13	13	13	13			13
· 기타운영비(210-18)	3	3	3			3	3	3	3			3
·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칠백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칠백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9) 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김응례	장유진	이우진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69	73	73	73	73	0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3	73	69		4	73	73	73	73	-	-	73
· 기본경비	43	43	41		2	43	43	43	43	-	-	43
· 직책수행경비	30	30	28		2	30	30	30	30	-	-	30
○ 비목별 분류(합계)	73	73	69		4	73	73	73	73	-	-	73
· 특근매식비(210-05)	5	5	5			3	3	3	3	-	-	3
· 일숙직비(210-06)	19	19	17			19	19	19	19	-	-	19
· 복리후생비(210-12)	6	6	4		1	6	6	6	6	-	-	6
· 기타운영비(210-16)	13	13	15		1	15	15	15	15	-	-	15
· 직책수행경비(250-02)	30	30	28		2	30	30	30	30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무형유산원 인원, 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20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20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20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20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2과 14명) → 고위공무원(나급) 기관(4과 40명)
-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3.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10)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9)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9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사무관 063-636-9322	최민규 063-636-932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9	19	19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	19	19			19	19	19	19			19
·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9			19	19	19	19			19
○ 비목별 분류(합계)	19	19	19			19	19	19	19			19
· 특근매식비(210-05)	2	2	2			2	2	2	2			2
· 일숙직비(210-06)	13	13	13			13	13	13	13			13
·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2	2	2			2
·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만인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규모 : 만인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만인의총관리소

사 업 명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7118-25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3	한국전통문화	일반회계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이상협	박지영	김대환
		041-830-7200	041-830-7220	041-830-722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본경비	1,402	1,417	1,417	1,462	1,397	△20	△1.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14	1,404	1,402		2	1,417	1,417	1,417	1,405		12	1,397
· 운영경비	1,414	1,404	1,402		2	1,417	1,417	1,417	1,405		12	1,397
○ 비목별 분류(합계)	1,414	1,404	1,402		2	1,417	1,417	1,417	1,405		12	1,397
· 일반수용비(210-01)	137	185	184		1	130	130	182	182			9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64	688	688			664	664	646	645		1	664
· 피복비(210-03)	7	24	24			7	7	32	32			22
· 임차료(210-07)	12	12	12			12	12	12	12			12
· 유류비(210-08)	165	165	165			165	165	165	165			16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1	108	108			131	131	131	131			131
· 재료비(210-11)	129	68	68		1	129	129	86	86			129
· 관리용역비(210-15)	126	110	110			126	126	110	110			126
· 여비(220-01)	25	25	25			35	35	35	24		11	33
· 업무추진비(240-02)	8	8	8			8	8	8	8			7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운영 및 시설관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례·반복적 운영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 1항(교육재정 등)
 -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조 직 : 1원 1처 5과, 2개 대학원(5개 학과), 2개 단과대(7개 학과)
 - 교직원 : 총 99명(총장 1명, 교원 36명, 조교 8명, 직원 54명)
 - 시설현황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41동(62,0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및 교직원

사 업 명

(12)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71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음자	국고보조율(%)	음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박근용	강경보	여찬원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 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127	127	127	131	110	△17	△13.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4	134	127		6	127	127	127	115		12	110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134	134	127		6	127	127	127	115		12	110
○ 비목별 분류(합계)	134	134	127		6	127	127	127	115		12	110
.일반수용비(210-01)	61	66	66		0	54	54	54	54			44
.임차료(210-07)	22	22	22		0	22	22	22	22			22
.유류비(210-08)	8	3	2		1	8	8	8	4		4	6
.복리후생비(210-12)	5	5	5		0	5	5	5	2		3	5
.기타운영비(210-16)	6	6	6		0	6	6	6	6			6
.국내여비(220-01)	18	18	13		5	18	18	18	13		5	14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0	4	4	4	4			3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0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현충사 기본경비(7118-25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 기본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이재훈	김지나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현충사기본경비	397	388	388	399	344	△44	△11.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01	401	397		4	388	388	379	354		25	344
· 현충사 기본경비	401	401	397		4	388	388	379	354		25	344
○ 비목별 분류(합계)	401	401	397		4	388	388	379	354		25	344
· 일반수용비(210-01)	102	115	113		2	76	76	85	82		3	6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0	139	139			160	160	130	125		5	150
· 피 복 비(210-03)	10	10	10			10	10	10	10			10
· 임 차 료(210-07)	12	11	11			12	12	32	31		1	12
· 유 류 비(210-08)	13	10	9		1	13	13	13	7		6	1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4	40	40			24	24	34	34			14
· 관리용역비(210-15)	40	36	36			40	40	31	26		5	40
· 국내 여비(220-01)	19	19	18		1	19	19	19	15		4	18
· 국외업무여비(220-02)	7	7	7			10	10	1			1	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4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20	20	20	2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 현충사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 ② 추진경위 :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14) 칠백의총기본경비(7118-25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류시영 소장 041-753-8701	고민선 041-753-870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칠백의총기본경비	83	80	80	82	77	△3	△3.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3	83	83			80	80	72	65		7	77
· 칠백의총기본경비	83	83	83			80	80	72	65		7	77
○ 비목별 분류(합계)	83	83	83			80	80	72	65		7	77
· 일반수용비(210-01)	18	25	25			18	18	13	12		1	1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4	4			5	5	5	5		-	5
· 피복비(210-03)	7	7	7			12	12	15	15		-	12
· 유류비(210-08)	9	5	5			5	5	5	3		2	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18	18			8	8	5	4		1	1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	1
· 국내여비(220-01)	13	13	13			16	16	13	10		3	1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	3
· 자산취득비(430-01)	6	6	6			11	11	11	11		-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칠백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15) 무형유산원기본경비(7118-257)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김응례	장유진	이우진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무형유산원기본경비	79	82	82	86	75	△7	△8.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9	79	79			82	72	72	58	-	14	75
· 경상경비	79	79	79			82	72	72	58	-	14	75
○ 비목별 분류(합계)	79	79	79			82	72	72	58	-	14	75
· 일반수용비(210-01)	57	57	57			55	45	45	45	-	-	50
· 국내여비(220-01)	12	12	12			17	17	17	3	-	14	16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	10	10			10	10	10	10	-	-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무형유산원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20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20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20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20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2과 14명) → 고위공무원(나급) 기관(4과 40명)
-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3.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16) 만인의총기본경비(7118-26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60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사무관 063-636-9322	최민규 063-636-932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만인의총기본경비	29	32	32	33	29	△3	△9.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2	32	29		3	32	32	32	31		1	29
· 만인의총기본경비	32	32	29		3	32	32	32	31		1	29
○ 비목별 분류(합계)	32	32	29		3	32	32	32	31		1	29
· 일반수용비(210-01)	4	2	2			4	4	6	6			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0	0			1	1	0	0			1
· 피복비(210-03)	4	4	4			4	4	4	4			4
· 임차료(210-07)	0	0	0			0	0	2	2			0
· 유류비(210-08)	3	3	0		3	3	3	1	1			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5	5			2	2	6	6			2
· 국내여비(220-01)	9	9	9			9	9	4	3		1	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3
· 자산취득비(430-01)	5	5	5			5	5	5	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만인의총기본경비)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 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만인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규모 : 만인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만인의총관리소

사 업 명
(17) 문화재 정책대변(7132-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변인실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 정책대변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이재원	이안진	이안재
		042-481-4670	042-481-4674	042-481-467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문화재 정책대변	1,031	931	931	1,404	1,404	473	50.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29	1,035	1,031		4	931	931	986	984		2	1,404
· 문화재청 소식지 제작	654	654	654			651	651	679	679			681
· 소통능력 강화	133	133	133			33	33	58	58			470
· 대변인실 운영	242	248	244		4	247	247	249	247		2	253
○ 비목별 분류(합계)	1,029	1,035	1,031		4	931	931	986	984		2	1,404
· 상용임금(110-03)	137	137	133		4	140	140	142	142			148
· 일반수용비(210-01)	587	568	568			511	511	550	550			62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4	216	216			188	188	216	216			218
· 특근매식비(210-05)	8	5	5			8	8	6	6			8
· 임차료(210-07)	2	2	2			2	2	0	0			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0
·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 일반용역비(210-14)								6	6			76
· 국내여비(220-01)	34	40	40			34	34	21	21			32
· 국외업무여비(220-02)	4	2	2			4	4	0	0			3
· 사업추진비(240-01)	11	13	13			10	10	10	8		2	9
· 포상금(310-03)	3	3	3			3	3	3	3			3
· 고용부담금(320-09)	24	24	24			26	26	27	27			28
· 자산취득비(430-01)	23	23	23			3	3	3	3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높이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5조의3
·제5조(하부조직)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제5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 주요정책 등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2005년 ~ 계속)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정책고객 38,000여 명, 소식지 구독회원 38,000여 명, 각종 언론 매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소식지 구독회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문화재 행정효율성증진 및 성과관리(7132-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 행정제도개선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원성규	류소명	김현숙
		042-481-4710	042-481-4716	042-481-472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문화재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408	385	385	546	543	158	41.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27	424	408		16	385		385	375		10	543
· 정부혁신 행정효율성 증진	209	209	200		9	182		182	179		3	180
· 성과관리 및 정부 업무평가운영	218	215	208		7	203		203	196		7	363
○ 비목별 분류(합계)	427	424	408		16	385		385	375		10	543
· 상용임금(110-03)	21	25	25		-	27		27	26		1	29
· 일반수용비(210-01)	159	164	158		6	116		131	129		2	11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2		1	1		-	2
· 특근매식비(210-05)	2	2	2		-	2		2	2		-	2
· 임차료(210-07)	18	14	14		-	12		12	12		-	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0		2	1		1	1		-	1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1		1	1		-	1
· 일반용역비(210-14)	-	-	-		-	-		33	33		-	-
· 관리용역비(210-15)	27	27	26		1	27		15	14		1	-
· 국내여비(220-01)	37	33	31		2	37		23	20		3	35
· 국외업무여비(220-02)	21	21	19		2	21		-	-		-	1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	12	12		-	11		11	9		2	10
· 일반연구비(260-01)	95	91	87		3	95		95	94		1	220
· 포상금(310-03)	25	25	25		-	25		25	25		-	25
· 고용부담금(320-09)	4	5	5		-	5		5	5		-	5
· 자산취득비(430-01)	3	3	3		-	3		3	3		-	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적 가치 등을 실현하는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 구현
- 정부 혁신으로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위한 중점과제 지속 추진

- 조직분야 과제 추진(기능강화 마련 및 업무기능 분류(BRM)사용자 교육 등 체계적 관리), 부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필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으로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 및 문화재 행정의 대국민 업무품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 등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 제14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직 운영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정부혁신 등 :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 정부혁신 추진방침에 따라 과제별 혁신추진을 시작('04년 ~ '07년)
 - 실용정신과 변화관리 강조 [대통령 취임사('08.2.20.)]
 - 행안부 「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시달 ['11. 2월]
 - 국정과제 정부3.0 구상발표('12.7.11)
 - 안행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시달('13. 5월)
 - '06년 성과 중심 정부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업무평가 수행 및 성과관리 운영 시작
 -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문화재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지속 시행
 - 사회적 가치 등을 실현하는 정부혁신 필요성[대통령 신년기자회견('18.1.10)],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말씀('18.1.16)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20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509	429	450	427	385

- 기타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수혜자 : 문화재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3-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운영경비	전산운영경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김성일	이태호	박찬수
		042-481-4750	042-481-4755	042-481-462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990	907	907	962	917	10	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72	1,031	990		41	907	907	907	816		91	917
· 공무원 상용임금 및 사업자부담금	256	256	246		10	252	252	252	244		8	259
· 전산장비 유지보수관리	318	307	279		28	384	384	384	326		58	384
· 장비구입	136	306	304		2	108	108	108	108		0	108
· 전산운영경비 및 기록 물관리	162	162	161		1	163	163	163	138		25	166
○ 비목별 분류(합계)	872	1,031	990		41	907	907	907	816		91	917
· 상용임금(110-03)	209	209	203		6	209	209	209	202		7	214
· 일용임금(110-04)						5	5	5	2		3	5
· 일반수용비(210-01)	69	68	68			64	64	64	69		-5	6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7	37	37			40	40	40	37		3	46
· 특근매식비(210-05)	3	2	2			3	3	3	3			3
· 임차료(210-07)		2	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	9	9									
· 복리후생비(210-12)	3	3	3			3	3	3	3			3
· 관리용역비(210-15)	318	307	279		28	384	384	384	326		58	384
· 국내여비(220-01)	24	25	24		1	24	24	24	20		4	23
· 국외여비(220-02)	16	12	12			16	16	16	0		16	14
· 사업추진비(240-01)	7	7	7			7	7	7	3		4	6
· 포상금(310-03)						4	4	4	4			4
· 고용부담금(320-09)	44	44	40		4	40	40	40	39		1	42
· 자산취득비(430-01)	136	306	304		2	108	108	108	108			1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내용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
- 행정업무용 노후 PC 및 전산장비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기록정보 자원 수집·관리 및 기록관 운영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및 문화재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향상과 문화향유 서비스 확대
- 유·무형의 문화유산 핵심아카이브 구축으로 새로운 전통문화 재현
- 문화유산 보존·복원의 핵심자료인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 도서 등 공공저작물 및 아카이브 수집·보존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3항(정수·상태점검)
- 도서관법 제7조,41조,43조(도서관의 이용 제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6조

② 추진경위

- '05.08.16 기록관리담당관실 신설(이전 : 문화재교류과 정보화계)
- '08.03.03 정보화팀으로 명칭변경
- '09.04.27 정보화기획팀으로 명칭변경
- '11.05.25 직제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으로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 체계구축' 업무 소관 변경(발굴제도과→정보화기획팀)
- '13.03.23 정보화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통신회선 사용료 등 경상운영, 행정업무용 노후 PC 및 프린터 교체,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매, 한글, 오피스, 바이러스 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록정보자원 관리업무 수행 및 기록관·자료실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공공기관, 전국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 조사연구기관, 문화재 관련단체, 문화재 소장자 등 문화재 유관기관 전체 및 일반국민 등

사 업 명
(20)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7134-5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음자	국고보조율(%)	음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실	김성일	이태호, 최연규, 도레미, 박미혜, 차창민	박찬수,한현, 김영진,권정훈, 황성환, 송소현
		042-481-4750	042-481-4755, 4752, 4760, 4774, 4971	042-481-4628,4757, 4772,4762,4767,476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3,938	5,626	5,626	35,572	17,716	12,090	214.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990	3,990	3,938		52	5,626	5,626	5,626	5,547	32	110	17,716
·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610	610	594		16	706	706	706	673		33	400
·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320	320	316		4	300	300	300	288		12	300
· 문화유산 기록정보 자원 통합 DB구축	795	795	791		4	2,280	2,280	2,280	2,172		108	14,524
·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472	472	391		81	400	400	400	381		19	252
·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183	1,183	1,106		7	1,183	1,183	1,183	1,183			1,183
·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560	560	630		0	707	707	707	730	32	-55	707
·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50	50	110		-60	50	50	50	120		-7	50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품질관리												300
○ 비목별 분류(합계)	3,990	3,990	3,938		52	5,626	5,626	5,626	5,547	32	110	17,716
· 일반수용비(210-01)						30	30	30	29		1	
· 관리용역비(210-15)	1,323	1,253	1,245		8	1,636	1,636	1,636	1594		105	1,636
· 일반연구비(260-01)	2,107	2,107	2,064		43	3,385	3,385	3,385	3,353	32		15,576
· 자산취득비(430-01)	560	630	629		1	575	575	575	571		4	5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 문화재청과 지자체, 협업기관 등의 문화재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문화재 행정업무 개발, 문화재 전자행정, 협업 및 행정포털, 스마트 행정서비스 등 운영
-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 지정 및 매장문화재 구역 보호, 체계적 관리, 규제지역 안내를 위한 문화재 지리 정보체계(GIS), 공간DB 구축 운영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 DB구축)
 -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복원을 위해 전국에 산일된 기록정보자원 수집, DB구축, 영구보존, 공유 활용, 문화콘텐츠 자원화
 - 연구자, 협회, 단체 등 민간 소장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도서 등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수집, 목록화 등
- (문화유산 정보시스템 개선)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문화재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 문화유산 빅데이터 발굴 로드맵 수립 및 시범 과제 발굴
 - 공공데이터 발굴 로드맵 수립, 단계별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문화재청 운영 정보시스템의 전문 민간업체 위탁을 통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 운영
-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 정보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효율적 예방 및 안정적 정보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의거 문화재청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법인을 통한 감리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시행규칙 제15조(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변경신고), 제17조(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제9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
- 2020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
- 정부 3.0 기본계획(국민이 원하는 정보 사전공개), 문화유산 3.0 실행계획(매장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정보공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제39조제1항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316호)
-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문화재청훈령 제508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시행)
- 『공공데이터법』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6월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 '00.12월 :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01~'05) 수립(건교부)
 -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필요성 감사원 지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02~'11)
 -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3.1), 문화재 전자행정 예산확보
 - '04.6월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 '05년~'06년 : 문화재 행정업무 재설계 실시(BPR)
 - '05.6월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시(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05.12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 수립(건교부)
 - '04년~'07년 : 문화재 24개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 '06.6월 : 토지구제개혁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시행
 - '07.6월 :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BH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07.12월 : 문화재청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표준안 마련
 - '08.3월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 수립(문화재 분포정보 구축)
 - '08.4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문화재 GIS 구축 추진)
 - '08.12월 : 차세대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U-ISP) 수립
 - '08. 12월 문화유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
 - '09.4월~12월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총 6회)
 - '10.1.27.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10.3~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10.3월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 '10.4월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보고사항(문화재 GIS의 지속적 확대·활용 추진)
 - '09년~'13년 : 지표·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11.1월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국가정보원)
 - '11.5월 :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개정
 - '11.3월 :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11.4~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사업 추진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암호화 예산 관련 자료 제출(행정안전부)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12.1월 : 2012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2.3월 : 문화재청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2년~'16년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12.12월 : 문화재 전자행정 기반 32종의 정책정보 제공
- '13.1월 : 2013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3.3월 : 문화재청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3.6월 : 「2014년 국가공간정보시행계획」 (국토교통부)
- '13.6월 : 「정부 3.0 기본계획」, 「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
- '13.9월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3~'17)(국토해양부)
- '14.1월 : 2014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4.3월 : 문화재청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5.6-9월 : 「문화재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16.2월 : 「문화재청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12년~'19년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09년~'19년 : 지표·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18.4월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기초연구' 추진
- '19.9월 : 「제3차(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문화재 지표·발굴 및 조사·연구기관, 건설사업 시행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전승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소 및 구조센터, 대한수의사협회 등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전체, 소장자, 일반국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지표·발굴 조사기관 등 문화재 유관 기관·단체, 소장자, 일반국민 등

Ⅲ.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 총괄

가. 2021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 해당사항 없음

나. 2021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25,047	6,200	5,200	8,000	4,075	△1,125	34.3
3235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지역자율계정)	24,547	0	0	0	0	0	0.0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3235-301)	24,547	0	0	0	0	0	0.0
3237 지역문화유산개발 (지역지원계정)	500	6,200	5,200	8,000	4,075	△1,125	34.3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3237-303)	500	2,000	2,000	5,500	2,000	0	0.0
보은 범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3237-304)	0	4,200	3,200	2,500	2,075	△1,125	△35.2

사 업 명

(1)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3237-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지역지원 계정	060	064
명칭	특별회계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7	303
명칭	문화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정영훈	길태현	양호열
		042-481-4830	042-481-4835	042-481-483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500	2,000	2,000	5,500	2,000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00	50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 광주 세계유산 남한 산성 박물관 건립		500	50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2,000	2,000	2,000	2,000			2,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03-03)		500	500			2,000	2,000	2,000	2,000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
 - ※ 10차에 걸친 시·발굴조사의 출토유물을 각 발굴기관(7곳)에 보관중
- 남한산성의 종합적인 연구 및 교육, 홍보 강화
- 국내·외 성곽의 조사 및 보존 연구를 통한 국제적인 성곽 연구 중심 특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 및 제51조(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추진경위

- 세계문화유산 등재('14.6.22.)
-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17.10.)
- 설계용역 추진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총사업비 : 240억원 *기투자액 8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약25,925m², 건축연면적 5,900m²(지하1, 지상 2층)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치단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2) 보은 법주사 정보박물관 건립(3237-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지역지원	060	064
명칭	특별회계			계정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7	304
명칭	문화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보은 법주사 정보박물관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이종희	문영철	김근화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68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	4,200	3,200	2,500	2,075	△1,125	△3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00	300	300	-	-	4,200	3,200	3,200	3,200	(-)	-	-	2,075
·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300	300	300	-	-	4,200	3,200	3,200	3,200	(-)	-	-	2,075
○ 비목별 분류(합계)	300	300	300	-	-	4,200	3,200	3,200	3,200	(-)	-	-	2,075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00	300	300	-	-	4,200	3,200	3,200	3,200	(-)	-	-	2,075

* '19년 일반회계(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서 '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법주사 내 문화유산의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 및 51조(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추진경위

- 세계문화유산 등재('18.6.30.)
-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19.9.)

- 설계용역 추진 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총사업비 : 180억원 *기투자액 13억원(일반회계/국비 3억원, 지방비 10억원)
- 사업규모 : 연면적 3,391.19㎡, 지상 4층(전시실, 연구실, 문화센터, 수장고 등)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충청북도(보은군)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IV. 문화재 보호기금

1. 총괄

가. 2021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수입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계획액		2021년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총계	143,303	151,076	151,076	141,879	141,879	△9,197	△6.1
51 관유물대여료	16						
건물대여료 (51-512)	16						
54 기타이자수입 및재산수입	522	340	340	340	340	0	0
기타재산수입 (54-545)	522	340	340	340	340	0	0
57 변상금및위약금	7						
위약금 (57-572)	7						
59 기타경상이전 수입	6,825	3,000	3,000	3,000	3,000	0	0
기타경상이전 수입 (59-596)	6,825	3,000	3,000	3,000	3,000	0	0
64 입장료수입	5,022	5,600	5,600	2,600	2,600	△3,000	△53.6
입장료수입 (64-641)	5,022	5,600	5,600	2,600	2,600	3,000	△53.6
69 잡수입	2						
기타잡수입 (69-691)	2						
85 정부예금회수	20,280	13,930	13,930	2,000	2,000	△11,930	△85.6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1,500						
비통화금융기 관 예치금회수 (85-853)	18,780	13,930	13,930	2,000	2,000	△11,930	△85.6
91 전입금	101,290	95,106	95,106	92,947	92,947	△2,159	△2.3
기금전입금 (91-913)	101,290	95,106	95,106	92,947	92,947		
94 예수금	9,338	33,100	33,100	40,992	40,992	7,892	23.8
기금예수금 (94-943)	9,338	33,100	33,100	40,992	40,992		

나. 2021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지출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결산	2020계획액		2021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총 계	143,303	151,076	151,076	156,934	141,879	△ 9,197	△ 6.1
1136 민간보존역량강화	6,923	13,257	13,257	10,144	8,944	△ 4,313	△ 32.5
문화재보호 민간 참여 활성화 (1136-301)	1,893	2,308	2,308	2,559	2,559	251	10.9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1136-302)	1,110	2,019	2,019	1,677	1,077	△ 942	△ 46.7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1136-303)	1,017	968	968	1,168	1,168	200	20.7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1136-304)	2,114	2,740	2,740	3,640	3,540	800	29.2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1136-307)	289	350	350	600	600	250	71.4
불교문화재 연구 시설건립(1136-308)	500	4,872	4,872	500	0	△ 4,872	△ 100
1138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4,219	4,012	4,012	5,262	4,603	591	14.7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138-302)	1,830	1,739	1,739	1,989	1,929	190	10.9
문화유산채널 구축· 운영(1138-303)	2,389	2,273	2,273	3,273	2,674	401	17.6
1236 문화유산연구	27,879	34,028	33,948	36,937	34,439	491	1.4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 (R&D)(1236-301)	6,519	7,924	7,844	9,637	9,418	1,574	20.1
문화유산 조사연구 (R&D)(1236-302)	21,360	26,104	26,104	27,300	25,021	△ 1,083	△ 4.1
2133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15,207	16,379	16,379	18,079	17,881	1,502	9.2
문화재 돌봄사업 (2133-301)	13,535	14,703	14,703	16,403	16,205	1,502	10.2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 조사 (2133-302)	1,672	1,676	1,676	1,676	1,676	0	0

구 분	2019결산	2020계획액		2021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2331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30,537	41,972	41,972	40,816	39,171	△2,801	△6.7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331-301)	18,904	25,835	25,835	25,486	24,482	△1,353	△5.2
궁능방재시스템 구축(2331-303)	11,633	16,137	16,137	15,330	14,689	△1,448	△9.0
2332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10,077	9,121	9,121	9,121	9,121	0	0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2332-301)	4,121	4,121	4,121	4,121	4,121	0	0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2332-302)	5,956	5,000	5,000	5,000	5,000	0	0
2334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25,518	25,059	25,059	20,319	20,594	△4,465	△17.8
군부대 주둔지문화재 조사 보호 (2334-301)	386	385	385	385	385	0	0
소규모·긴급 매장 문화재 조사 지원(2334-302)	18,141	18,234	18,234	19,934	20,209	1,975	10.8
출토유물보관센터 건설지원(2334-306)	6,991	6,440	6,440	0	0	△6,440	△100
2376 기금운영비	141	143	143	143	138	△5	△3.5
기금운영비 (2376-201)	141	143	143	143	138	△5	△3.5
8990 기금간거래	255	884	884	1,583	1,388	504	57.0
공자금 예유자상환 (8990-891)	255	884	884	1,583	1,388	504	57.0
8999 복권기금반환금	2,171	2,500	2,500	2,500	2,500	0	0
복권기금전출금 (8999-840)	2,171	2,500	2,500	2,500	2,500	0	0
9701 여유자금운용	20,376	3,721	3,801	12,030	3,100	△701	18.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20,376	3,721	3,801	12,030	3,100	△701	18.4

사 업 명

(1)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11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기금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전기선	장영기	선우훈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1,893	2,308	2,308	2,559	2,559	251	10.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898	1,898	1,898	1,893 [1,879]		19	2,308	2,308	2,308	2,286 [2,226]		22	2,559
· 문화재지킴이 운영경비	205	205	205	200		5	206	206	206	184		22	207
·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818	818	818	818 [804]		14	818	818	818	818 [776]		0	1,168
· 문화유산국민 신탁법인 지원	875	875	875	875 [875]		0	1,284	1,284	1,284	1,284 [1,266]		0	1,184
○ 비목별 분류(계)	1,898	1,898	1,898	1,893 [1,879]		19	2,308	2,308	2,308	2,286 [2,226]		22	2,559
· 상용임금(110-03)	26	26	26	25		1	29	29	29	28		1	31
· 일반수용비(21001)	49	49	49	46		3	50	50	50	49		1	51
· 공공요금및제세(200)	1	1	1	1			1	1	1	1		0	1
· 임차료(210-07)	4	4	4	4			4	4	4	0		4	4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0	1
· 국내여비(220-01)	20	20	20	20			20	20	20	8		12	19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10			10	10	10	10		0	9
· 일반연구비(26001)	80	80	80	79		1	75	75	75	72		3	75
· 포상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10		0	10
· 민간경상보조(300)	1,693	1,693	1,693	1,693 [1,679]		14	2,102	2,102	2,102	2,102 [2,042]		0	2,352
· 고용부담금(32009)	4	4	4	4			6	6	6	5		1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지킴이활동지원)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하고자 민간단체의 문화재보호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지원)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 운영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제5호(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 2005.12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 업무
- 참여정부 중점공약(민간 문화재보호단체 육성 지원)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및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추진 경위
 - 2003. 6 : 신탁법 제정을 국정주요과제로 선정(16대 대통령 공약사항)
 - 2004. 11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추진계획 수립(기존의 명예관리인 제도 개선)
 - 2005. 4 : 1문화재 1지킴이 신규 위촉
 - 2005. 12 :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 업무
 - 2006. 1 : '명예관리인', '문화재행정모니터'를 1문화재 1지킴이로 통합 운영
 - 2007. 4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 2008. 국정감사 지적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2013. 12 : 삼성에버랜드 등 47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5,604건 위촉(5만9천여 명 활동 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2만5천여명 활동
 - 2014. 12 : 포르쉐코리아 등 50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7,109건 위촉(6만여 명 활동 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2만여 명 활동
 - 2015. 12 : 동서식품 등 55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8,450건 위촉(61,000여 명 활동 중)
 - 2016. 12 : KT&G 등 56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문화재지킴이 6만여명 활동 중
 - 2017. 12 : 우리카드 등 57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문화재지킴이 8만4천여명 활동 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지킴이(8만4천여명), 문화유산국민신탁(보전·위탁재산 10개소, 회원 1만5천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특)문화유산국민신탁,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	정액(공모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문화유산국민신탁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사 업 명

(2)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1136-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김지성	이종규	박지연
		042-481-4730	042-481-4731	042-481-4738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1,110	2,019	2,019	1,677	1,077	△942	△46.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 (합계)	1,410	1,410	1,410	1,110 (638)	-	300	2,019	2,019	2,019	295	-	1,724	1,077
· 남북공동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보존	1,410	1,410	1,410	1,110 (638)	-	300	1,969	1,969	1,969	250 (195)	-	1,719	1,027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운영비	-	-	-	-	-	-	50	50	50	45	-	5	50
○ 비목별 분류 (합계)	1,410	1,410	1,410	1,110 (638)	-	300	2,019	2,019	2,019	295	-	1,724	1,077
· 일반수용비 (210-01)	-	-	-	-	-	-	50	50	50	45	-	5	50
· 민간경상보조 (320-01)	1,410	1,410	1,410	1,110 (638)	-	300	1,969	1,969	1,969	250 (195)	-	1,719	1,0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족공동유산이자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 공동 조사 통해 민족문화유산 보호 및 남북 협력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동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 * **법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 * **법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 **법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 '05.12.13~16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 개성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사업 상호협력 합의
- '06.1.22 :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간 합의서 체결
 - 민족 공동의 역사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관리 사업 협력 추진 합의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환으로 개성역사유적 1곳 시범적 공동 발굴 실시 합의
- '06.3.18 : 남북 실무검토 회의 개최
 - (남측)문화재청, 통일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측)문화보존지도국, 민족화해협의회
- '06.4.19~5.2 : 고구려고분군 공동 실태조사 실시
- '06.4.24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남과 북 문화유적 보존 협력사업 추진 합의)
- '07.5.15~7.1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시굴조사 실시(1차)
- '07.5.30~6.9 : 고구려 벽화고분 2기 공동 보존사업(벽화내벽 탈락 보존조치 등)
- '07.9.3~11.9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실시(2차)

- '08.11.4~12.2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3차)
- '09.2.23~12.31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존관리사업 실시
- '10.1.26 : 개성 만월대 3개년(2010-2012년) 공동발굴조사 합의서 체결
- '10.3.23~5.18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실시(4차)
- '11.11.14~12.31 : 개성 만월대 유적 수해 피해복구 및 유적 보존 실시(5차)
- '13. 6 : 개성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14.7.23~8.16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재개(6차)
 - 대형계단 2개소, 출입문지(門址) 확인, 대형배수로 4기, 출토유물 1,800여점
- '15.3.24. : 남북 실무협약(고구려고분 발굴합의서 초안 제시)
- '15.6.1~11.30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7차/6개월)
 - 건물지 19동 및 금속활자, 용두 등 중요유물 포함 약 3,500여점 발굴

< '07~'15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성과 >

- ❖ '07년 1차 조사(시굴조사) 시작으로 '15년까지 총 7차 발굴 추진
 - 전체 조사면적 33,000㎡ 중 약 19,000㎡(약 57%) 조사 완료
 - 제2정전(건덕전)을 비롯, 대형축대 2개소·건물지 39여동·대형계단 2개소 조사 및 출토 유물 16,500여점 수습
 - 투입예산 : 총 51억 원(문화재보호기금 26억,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5억)

- '15.10~11 :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특별전 및 학술회의' 남북 동시 개최
 - 서울(고궁박물관, 10.13~11.6), 개성(고려박물관, 10.15~11.15) / 약 600여명 남측 인원 방북
- '16~'17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교류사업 잠정 중단)
- '17. 7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

[국정과제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우선적 교류 재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도 재개

- '18. 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계기로 남북간 상호 적극적 교류 시작
 - *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1.3),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1.9),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및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2.9~3.18), 남북 예술단 평양 합동공연(4.3)
- '18.3.19 : 북측에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협약의 개최 제안
- '18.4.2.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차 방북시 박춘남 문화상에 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 제의
- '18.4.27. : 남북정상회담 개최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사업' 판문점 선언 후속 이행과제에 포함
 - * 4.27 판문점 선언 :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함”
- '18.5.26. :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18.9.19. :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 '19.3. : 문화재청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구성 및 운영
- '19.4.16. : 유엔 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대북 제재 면제 결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개성 만월대 유적,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 북한 문화유산 대상
 - (개성 만월대) 전체 면적(250,000m²) 중 서부건축군(33,000m²) 발굴 추진 중
 - (평양 고구려고분) 세계유산 등재 고분 63기 중 연차적 추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북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3)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1136-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이달희	이광자
		042-481-4980	042-481-4992	042-481-498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	(B-A)/A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017	968	968	1,168	1,168	200	△20.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19	1,019	1,019	1,017 [1,006]		2	968	968	968	968		111	1,168
·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619	619	619	619 [609]			603	603	603	603		39	803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	283	283	283	283 [280]			280	280	280	280		20	400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191	191	191	191 [190]			180	180	180	180		7	220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145	145	145	145 [139]			143	143	143	143		12	183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260	260	260	260 [258]			230	230	230	230		7	230
· 자연유산 민속 행사 지원	140	140	140	138 [138]		2	135	135	135	135		65	135
○ 비목별 분류(계)	1,019	1,019	1,019	1,019 [1,005]			968	968	968	968		111	1,168
· 민간경상보조 (320-01)	879	879	879	879 [867]			833	833	833	833		46	1,033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40	140	140	138 [138]		2	135	135	135	135		65	1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최근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구조·치료·보호 및 홍보 등의 활동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에 기여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조난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전국적인 보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구조·치료 시스템 기반 조성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보존 및 민속행사 재현으로 향토문화 구심점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의거 관리단체(3개 단체)를 지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따라 경비를 지원함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를 대행지급법인으로 지정·고시하여 동물 치료소의 치료경비를 지급토록 함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의거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개최 경비를 지원함

② 추진경위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조수류) 관리단체 지정('96. 6. 11. 고시)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수달) 관리단체 지정('05. 6. 10. 고시)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9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산양) 관리단체 지정('09. 4. 10. 고시)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제도 근거 마련('00. 1.12.)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대행 법인 지정·고시('05.10.25.)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법령 명시('08.12.14.)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3년(2012년부터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행)
 -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고취, 자발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피해 발생 이후 사후조치 보다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협력 도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1998년~계속)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2005년~계속)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2009년~계속)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2005년~계속)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2012년~계속)
- 사업규모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3개 단체)지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204개소),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14개 광역자치단체, 69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100%), 자치단체경상보조(7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대한수의사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조류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한국수달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한국산양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대한수의사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4)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11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4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박희웅	이동융 박수희	신태웅 김지혜
		042-481-4910	042-481-4920 042-481-4985	042-481-4684 042-481-4687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2,114	2,740	2,740	3,640	3,540	800	29.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114	2,114	2,114	2,114 [2,114]			2,740	2,740	2,740	2,740 [2,740]			3,540
· 불교문화재일 제조사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920
· 대형불화정밀 조사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 문화재다량소 장처보존관리 지원	868	868	868	868 [868]			1,494	1,494	1,494	1,494 [1,494]			2,094
○ 비목별 분류(계)	2,114	2,114	2,114	2,114 [2,114]			2,740	2,740	2,740	2,740 [2,740]			3,540
· 민간경상보조 (320-01)	2,114	2,114	2,114	2,114 [2,114]			2,740	2,740	2,740	2,740 [2,740]			3,5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향후 학술연구 기초자료와 보존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원형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지원
- (대형불화 정밀조사) 재난·재해 등 훼손에 대비하고 원형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형불화를 대상으로 인문학적·보존과학적 조사를 위해 지원
-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교육을 통한 관리자 보존·관리 의식 함양, 다량소장처 유물의 선제적 예방처리를 위한 학예인력 배치 등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의 훼손·도난·망실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② 추진경위

- 2010. 2.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반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불교문화재일제조사(3,000여장/년), 대형불화정밀조사(7~8점/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지원(전국 5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사)정보문화재연구원, (재)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간송미술문화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관련기관 연구자, 문화재 소장자·관리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정보문화재연구원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재)대한불교조계종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재)간송미술문화재단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5)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1136-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7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김지성	배준우	이경화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정책 연구기관 운영지원	289	350	350	600	600	250	71.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89	289	289	289			350	350	350	350			600
· 문화재정책연구 기관운영지원	289	289	289	289			350	350	350	350			600
○ 비목별 분류(계)	289	289	289	289			350	350	350	350			600
· 민간경상보조 (320-01)	289	289	289	289			350	350	350	350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 기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② 추진경위

- 2012년 국정감사시 설립 필요성 지적 / 문방위 조해진 의원('12년)
- 핵심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보고 지시 / VIP('13.4.22)
- 문화재정책연구원 설립 등 관리체계 개선 BH 보고('13.10.14)
- 문화재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방안 연구용역(한국행정학회, '13.12월)
-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16.2.3)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 정책 전문연구기관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6) 문화유산교육 활성화(1138-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전기선	김용구	이상미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	(B-A)/A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1,830	1,739	1,739	1,989	1,929	190	10.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830	1,830	1,830	1,830 [1,796]			1,739	1,739	1,739	1,730 [1,630]			1,929
· 직접운영비	106	106	106	106			106	106	106	97		9	106
· 민간문화유산 교육사업 지원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844
·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20	1,320	1,320	1,320 [1,286]			1,229	1,229	1,229	1,229 [1,129]			979
○ 비목별 분류(계)	1,830	1,830	1,830	1,830 [1,796]			1,739	1,739	1,739	1,730 [1,651]			1,929
· 일반수용비(21001)	61.2	61.2	69.2	69.2			61.2	61.2	39.2	60.6		0.6	61.2
· 임차료(210-07)	1	1	1	1			1	1	1	0		1	1
·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0	22	20		2	0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10	10	10	6		4	10
· 사업추진비(24001)	3.8	3.8	3.8	3.8			3.8	3.8	3.8	3.7		0.1	3.8
· 일반용역비(26001)	30	30	22	22			30	30	30	29		1	30
· 민간경상보조(300)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844
· 자차단체경상보조(300)	1,320	1,320	1,320	1,320 [1,286]			1,229	1,229	1,229	1,229 [1,129]			9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접운영비) : 자유학기제 교재 발간 및 문화유산교육 가이드북 제작 등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과 학교문화유산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역사인식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 (민간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 : 초,중,고, 소외계층 등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원 직무 연수 운영, 지역문화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등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문화재교육 업무의 위탁)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 주변국과의 역사분쟁, 송례문 방화 등 문화유산 훼손사태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유산교육 실시
- 사업시작년도: 2006년~
- 문화유산교육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기초 연구('10/서울교대 산학협력단)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2/(주)컬처앤로드)
- 교육부 「역사교육 강화 방안(안)」 발표('13.8)

(중략)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체험 중심 역사교육 강화 ②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 ③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④ 학술지원 확대 및 역사 왜곡 대응 강화
- ⑤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

-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
- 문화유산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중('17.10월)
- 문화유산교육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시행(문화재보호법 시행: '19.11.26. /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5.26.)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사업규모 : 50여개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운영, 문화유산교육 지원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원 문화유산교육 직무연수, 문화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자유학기제 교재 인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민간단체,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지역문화유산교육(방문학교, 체험교실, 테마학당 등) 수혜학생, 장애인, 소외지역학생등 소외계층 학생, 자유학기제 중학생, 일반인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단 민간단체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7)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1138-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전기선	김용구	김혜원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2,389	2,273	2,273	3,273	2,674	401	17.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 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계)	2,392	2,392	2,389		3	2,273		2,273	2,272		1	2,674
·문화유산채널 운영	60	60	57		3	60		60	59		1	61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운영	2,332	2,332	2,332 [2,332]			2,213		2,213	2,213 [2,213]			2,613
○ 비목별 분류(계)	2,392	2,392	2,389		3	2,273		2,273	2,273			2,674
·상용임금(110-03)	29	29	26		3	26		26	25		1	26
·일반수용비(210-01)	14	14	14			17		17	17			19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사업추진비(240-01)	6	6	6			6		6	6			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332	2,332	2,332 [2,332]			2,213		2,213	2,213 [2,213]			2,613
·고용부담금(320-09)	5	5	5			5		5	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채널 운영)

- 동 내역사업은 문화유산콘텐츠 기획·제작 및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를 위해 자체 집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임

-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운영)

- 동 내역사업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고품질 문화유산 콘텐츠(영상·사진·이야기 등)로 제작하여 문화유산채널 웹사이트 및 국내외 30여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급하고 있는 사업임
-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채널 콘텐츠를 통해 문화유산을 접하고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유산 대중화와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2009년 헤리티지채널 설립 타당성 및 수요예측 연구용역
- 2009년 10월 헤리티지채널 시범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제작
-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오픈
- 2012년 헤리티지채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년 업무협약 체결(구글 등 14개 기관)로 콘텐츠 대국민 서비스 확대
- 2014년 업무수행 체계개선(단기용역 방식→한국문화재단)
- 2014년 6월 명칭변경(헤리티지채널→문화유산채널)
- 2015년 UCI 기반 동영상분할시스템 개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0~계속
- 사업규모 : 수요자 맞춤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자체 홈페이지와 30여개 외부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보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단	100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8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사 업 명

(8)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12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오춘영	배현정	고건우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	6,519	7,924	7,844	9,637	9,418	1,574	20.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6,138	6,138	6,659	6,519 [6,519]	-	140	7,924	7,844	7,844	7,556	-	288	9,418
· 문화재연구소 본소 운영	3,446	3,446	3,961	3,887	-	74	3,567	3,487	3,490	3,365	-	125	3,602
· 천연기념물 센터운영	1,064	1,064	1,107	1,088	-	19	1,159	1,159	1,168	1,139	-	29	2,096
· 문화유산연구 종합자료관운영	1,077	1,077	1,034	1,006	-	28	1,097	1,097	1,124	1,105	-	19	1,806
· 지방문화재 연구소 운영	551	551	557	538	-	19	2,101	2,101	2,062	1,947	-	115	1,324
· 출토유물분석 연구센터 운영	-	-	-	-	-	-	-	-	-	-	-	-	590
○ 비목별 분류(계)	6,138	6,138	6,659	6,519 [6,519]	-	140	7,924	7,844	7,844	7,556	-	288	9,418
· 상용임금(110-03)	2,208	2,208	2,075	2,028	-	47	2,339	2,339	2,339	2,136	-	203	2,428
· 일용임금(110-04)	15	15	15	15	-	-	15	15	15	15	-	-	15
· 일반수용비(21001)	713	713	1,009	1,008	-	1	1,357	1,277	1,068	1,068	-	-	1,202
· 공공요금및제세(210)	720	720	702	700	-	2	696	696	714	709	-	5	924
· 피복비(210-03)	4	4	4	3	-	1	4	4	7	7	-	-	4
· 특근매식비(21005)	12	12	9	9	-	-	12	12	6	6	-	-	12
· 일숙직비(210-06)	24	24	22	22	-	-	24	24	22	22	-	-	24
· 임차료(210-07)	37	37	52	52	-	-	61	61	50	50	-	-	83
· 유류비(210-08)	6	6	8	7	-	1	6	6	6	6	-	-	6
· 시설장비유지비(210)	505	505	526	525	-	1	505	505	484	484	-	-	565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재료비(210-11)	6	6	6	6	-	-	6	6	6	6	-	-	6
· 복리후생비(210-12)	33	33	33	28	-	5	33	33	33	32	-	1	34
· 일반용역비(210-14)	-	-	-	-	-	-	53	53	285	259	-	26	164
· 관리용역비(210-15)	104	104	104	98	-	6	104	104	115	113	-	2	139
· 국내여비(220-01)	32	32	227	224	-	3	132	132	151	151	-	-	126
· 국외업무여비(220-02)	34	34	17	15	-	2	34	34	0	0	-	-	34
· 사업추진비(240-01)	6	6	6	6	-	-	6	6	6	6	-	-	5
· 관사업무추진비(240-02)	6	6	6	6	-	-	6	6	6	6	-	-	5
· 일반연구비(260-01)	338	338	338	333	-	5	338	338	338	337	-	1	1,038
· 포상금(310-03)	20	20	20	20	-	-	20	20	20	20	-	-	20
· 고용부담금(320-09)	411	411	544	538	-	6	442	442	442	437	-	5	464
· 실시설계비(420-02)	-	-	-	-	-	-	39	39	39	32	-	7	31
· 공사비(420-03)	482	482	479	419	-	60	1,188	1,188	1,188	1,180	-	8	1,439
· 감리비(420-04)	4	4	7	7	-	-	38	38	38	10	-	28	14
· 시설부대비(420-05)	2	2	1	1	-	-	10	10	11	9	-	2	5
· 자산취득비(430-01)	416	416	449	449	-	-	456	456	456	455	-	1	6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연구소본소 운영) 문화재연구소본소 연구 환경 기반구축 및 고품질 성과관리를 위한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원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자연유산 전시·교육을 위한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문화유산연구종합자료관 운영) 문화유산 연구정보 공개 등을 통한 연구정보 대국민 서비스 및 문화재연구소 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문화재연구소 운영) 지방문화재연구소 연구 환경 기반구축 및 시설관리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운영)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의 안전한 운영 기반구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연구소정보화전략계획
- 문화유산연구 종합정보관(아카이브) 운영 중장기 발전방안

② 추진경위

- '04. 12.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전으로 청사 이전에 따라 자체관리
- '06. 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7.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07. 04. :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개관
- '08.~'09. :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1.~ : 천연기념물센터, 본소 운영, 정보화 사업 통합
- '11.~'14. : 증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3.~'15. : 부여·나주(증축)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6.~'17. :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7. 02.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7.~'20.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지원
- '19. 07.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청사유지관리,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책임운영기관 운영, 문화재지 등 학술지 발간, 문화유산 연구자료 아카이브 통합운영, 천연기념물센터 전시 및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문화유산 조사연구(R&D)(12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2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유산 조사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오춘영	배현정	고건우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유산 조사연구(R&D)	21,360	26,104	26,104	27,300	25,021	△1,083	△4.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2,011	22,011	21,490	21,360 [21,360]	-	130	26,104	26,104	26,104	25,686	-	418	25,021
· 고대문화유산 연구	11,903	11,903	11,874	11,839	-	35	13,649	13,649	13,956	13,726	-	229	14,072
· 미술문화유산 연구	1,232	1,232	953	947	-	6	1,210	1,210	928	901	-	27	1,213
· 건축문화유산 연구	435	435	370	364	-	6	374	374	327	324	-	3	683
· 문화재안전방재 기술개발연구	1,159	1,159	1,138	1,125	-	13	1,126	1,126	900	882	-	18	1,134
· 자연유산보존 복원연구	1,265	1,265	1,221	1,209	-	12	1,222	1,222	1,282	1,275	-	7	1,251
· 문화유산교류 협력	391	391	402	399	-	3	391	391	349	316	-	33	398
· 문화유산과학적 보존처리	3,463	3,463	3,443	3,406	-	37	1,231	1,231	1,435	1,414	-	21	1,267
· 문화유산 맞춤형 과학분석 개발	-	-	-	-	-	-	1,169	1,169	1,221	1,181	-	40	1,575
· 문화유산복원 기술연구	508	508	407	390	-	17	1,773	1,773	1,735	1,704	-	31	1,773
· 국가유산보존 활용연구개발	812	812	839	838	-	1	812	812	824	822	-	2	812
· 조사연구장비 운용	843	843	843	843	-	-	3,147	3,147	3,147	3,140	-	7	843
○ 비목별 분류(계)	22,011	22,011	21,490	21,360 [21,360]	-	130	26,104	26,104	26,104	25,686	-	418	25,021
· 상용임금(110-03)	6,085	6,085	5,893	5,809	-	84	7,210	7,210	6,937	6,596	-	341	7,411
· 특근매식비(210-05)	67	67	25	19	-	6	73	73	31	27	-	4	76
· 유류비(210-08)	17	17	17	11	-	6	17	17	17	13	-	4	17
· 복리후생비(201-12)	92	92	92	82	-	10	100	100	100	98	-	2	100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시험연구비(21013)	10,935	10,935	10,491	10,475	-	16	11,008	11,008	11,051	11,050	-	1	11,214
· 사업추진비(24001)	89	89	89	89	-	-	91	91	91	90	-	1	82
· 일반연구비(26001)	1,433	1,433	1,433	1,428	-	5	1,733	1,733	1,733	1,721	-	12	2,233
· 고용부담금(32009)	1,135	1,135	1,327	1,327	-	-	1,362	1,362	1,634	1,593	-	41	1,422
· 공사비(420-03)	218	218	185	183	-	2	218	218	218	212	-	6	218
· 자산취득비(43001)	1,938	1,938	1,938	1,937	-	1	4,292	4,292	4,292	4,286	-	6	2,2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대문화유산연구) 고대 문화유산 종합 학술 조사연구를 통한 역사 규명 및 가치 확산
- (미술문화유산연구) 미술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정책자료 확보 및 연구 결과 대국민서비스 제공
- (건축문화유산연구) 전통전승 기술 및 재료연구를 통한 전통 건축기술 연구, 건축 문화재 수리·복원 기준 마련
- (문화재안전방재기술개발연구) 문화재 안전관리 및 재해대응 기술연구를 통한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체계 실현
- (자연유산보존복원연구)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기초연구를 통한 문화재의 학술적·역사적 실체를 규명 및 학술·정책자료 확보
- (문화유산교류협력) 문화재 전문기관과 학술연구교류를 통한 선진기술 조사연구 등
- (문화유산 과학적 보존처리) 중요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출토 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
- (문화유산 맞춤형 과학분석 개발) 유물의 시대별, 재질별 과학적 분석DB 구축 및 활용
- (문화유산복원기술연구) 문화재 보수·복원용 재료 및 제조기술 연구를 통한 품질기준 마련
- (국가유산보존활용연구개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기초 연구 및 과학기술적 응용연구
- (조사연구장비운영) 문화유산 특성 분석 및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장비의 고도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2(문화재의 연구개발)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직무)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0년도
- 추진배경
 -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문화재 연구사업 추진
 - 발굴조사, 미술·건축 조사연구,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 및 복원에서 자연유산 조사연구까지 연구영역 확대
 -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위한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건립
 - 문화재 훼손 증가에 따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필요성 대두, 문화재 조사·관리 등에 보존과학기술을 접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융복합연구 시행(2006년)
 - 문화유산융복합연구 맞춤형 융합연구 추진(2008년)
 - 중요문화권고대문화연구 및 문화유산융복합연구를 문화유산조사연구로 통합 추진(2016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사업규모 : 고대문화유산연구, 미술·건축·자연유산연구, 문화재 과학적 분석·복원·보존처리, 국내외 교류협력, 보존과학기자재 운용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 문화재 돌봄사업(2133-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문화재 돌봄사업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정영훈	김창권	어수미
		042-481-4830	042-481-4843	042-481-4833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문화재 돌봄사업	13,535	14,703	14,703	16,205	16,205	1,502	9.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3,535	13,535	13,535	13,535 [13,428]		0 [32]	14,703	14,703	14,703	14,699 [14,590]			16,205
· 문화재돌봄사업	11,760	11,760	11,760	11,760 [11,728]		0 [32]	12,928	12,928	12,928	12,928 [12,890]			14,430
· 돌봄지원사업	1,700	1,700	1,700	1,700 [1,700]		0 [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자체운영비	75	75	75	75		0	75	75	75	71			75
○ 비목별 분류(계)	13,535	13,535	13,535	13,535 [13,428]		0 [32]	14,703	14,703	14,703	14,699 [14,590]			16,205
· 일반수용비 (210-01)	45	45	45	45			45	45	45	42			47
· 국내여비 (220-01)	7	7	7	7			7	7	7	7			7
· 사업추진비 (240-02)	13	13	13	13			13	13	13	13			11
· 보전금 (310-03)	10	10	10	10			10	10	10	9			10
· 민간경상보조 (320-01)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700
· 자치단체경상 보조(330-01)	11,760	11,760	11,760	11,760 [11,728]		- [32]	12,928	12,928	12,928	12,928 [14,590]			14,4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돌봄사업) 국가지정, 시도지정 및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상시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절감하고, 문화재 분야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돌봄지원사업)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습 위주의 전문교육 지원 및 돌봄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돌봄사업 지원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문화재보호법 제10장의 2(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② 추진경위

- 국가지정(등록), 비지정문화재의 경미수리, 신속보수, 일상관리를 목적으로 2010년 5개 시도 시범사업으로 도입, 2013년 전국 17개 시도 확산
- 14,000여건에 달하는 지정(등록)문화재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폐사지·산간오지 등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관리가 매우 열악함
- 지자체의 문화재 전담인력이(평균 2명) 부족하며, 문화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시도 지정 및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언론·여론이 예방적 관리 필요성 제기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전통가옥 소유자 및 관리인의 고령화
 - 젊은이의 이농, 전통가옥의 생활 불편 등으로 일상적 유지 보수의 부실 심화
 - 소유자의 노령화로 빈집 증가 추세이나, 빈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옥이 일상적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속한 훼손 진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총 14,000개소('20년 관리대상문화재 총 8,12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국민
-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민간위탁)	100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 4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사 업 명

(11)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2133-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정영훈	김대열	김경희
		042-481-4830	042-481-4841	042-481-4842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이중희	문영철	송시경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91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672	1,676	1,676	1,676	1,676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76	1,676	1,672 [1,400]		4	1,676		1,676	1,675 [1,400]		1	1,676
· 폐사지 학술조사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 금석문 기초조사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비지정사적지 기초 조사	276	276	272		4	276		276	275		1	276
○ 비목별 분류(합계)	1,676	1,676	1,672 [1,400]		4	1,676		1,676	1,675 [1,400]		1	1,676
· 일반연구비(260-01)	276	276	272		4	276		276	275		1	276
· 민간경상보조(320-01)	1,400	1,400	1,400 [1,400]			1,400		2,400	1,400 [1,400]			1,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폐사지 학술조사) '10년부터 추진한 "폐사지 학술조사"가 '20년 완료됨에 따라 그간 확보한 학술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용해, 방치되고 훼손된 폐사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금석문 기초조사) 대부분 야외에 노출되어 풍화, 파손되기 쉬운 금석문의 기록이 시급하고 금석문 탁본전시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금석문의 가치 재조명과 관리보존방향 논의 필요
-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 전국에 산재하는 봉수유적의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봉수유적의 노선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제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관리 취약지의 문화재 훼손방지 등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등 추진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09.6.9) 및 불교계(조계종) 폐사지 조사 요청('09.6.18) 등 여론 반영
- 「사적 종합정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09.9.24) 및 개정('11.2.5)에 따라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필요
- 「문화재보호법」 개정('11.2.5)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사업규모 : 폐사지 5,400여 개소, 금석문 1,150여 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등 민간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관계 전문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 전문연구기관(공모) 및 대한불교조계종(불교중앙박물관)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12)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95	45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1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홍 창 남	김 태 구	권 오 상
		042)481-4933	042)481-4820	042)481-484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18,904	25,835	25,835	25,486	24,482	△1,353	△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909	18,909	18,904 <13,543>			25,835	25,835	25,835	25,814 <15,964>			24,482
·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6,483	6,483	6,483 <3,247>			12,833	12,833	12,833	12,833 <6,051>			10,180
·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	1,320	1,320	1,320 <213>			1,320	1,320	1,320	1,320 <252>			1,320
· 문화재 재난방지사설 유지관리	3,289	3,289	3,289 <2,795>			3,374	3,374	3,374	3,374 <2,484>			3,374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 치 및 활용	7,117	7,117	7,117 <6,593>			7,608	7,608	7,608	7,608 <6,520>			8,608
· 문화재 방재교육 및 모 니터링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78>			300
·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 스템 위탁운영 및 개선	202	202	202			202	202	202	202			502
·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 연구	100	100	96			100	100	100	92			100
· 문화재 방재 협력 및 홍보 등	88	88	87			88	88	88	65			88
· 문화재 방재 국제연수 파견	10	10	10			10	10	10	0			10
○ 비목별 분류(합계)	18,909	18,909	18,904 <13,543>			25,835	25,835	25,835	25,814 <15,964>		43	24,482
· 일반수용비(210-01)	40	40	39			40	40	40	40			41.4
· 임차료(220-07)	10	10	10			10	10	10	10			1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2	202	202			202	202	202	202			502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국내여비(220-01)	8	8	8			8	8	8	5		3	7.6
· 국외교육여비(220-03)	10	10	10			10	10	10	0		10	9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6			100	100	100	92		8	100
· 포상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10
· 민간경상보조(32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2	300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11,726	11,726	11,726 <9,601>			12,302	12,302	12,302	12,302			11,982
· 자치단체 기본보조(330-03)	6,483	6,483	6,483 <3,247>			12,833	12,833	12,833	12,833			11,50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20	20	20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목조문화재 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재난방지(소방, 방범, 전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화재 및 도난 등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장의 방재력 강화를 위한 지원임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기 구축된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
-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 방재시설 또는 상주 관리인력의 배치 운영이 어려운 문화재를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예방 및 출동체계 마련
- (문화재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문화재 방재인식 강화 및 방재시설에 대한 가동력 향상을 위해 문화재 현장에서의 위한 교육 및 훈련
-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방재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등을 통해 방재관련 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한 방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문화재 방재기술개발 연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한 문화재 방재 고도화 실시
- (문화재 방재 협력 및 홍보 등) 각종 재난방지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방재의 날 행사,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등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
- (문화재 방재 국제연수 파견) 문화재 방재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청 직원의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14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정과제(V-20-98)로 추진
- 문화재 화재('05년 낙산사, '08년 승례문)를 계기로 방재를 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 승례문 방화('08.2.10)에 의한 훼손을 계기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안전경비원 배치 추진
- 문화재 전담인력의 부족(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사전 예방적 필요성 제기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비상시 및 일상관리를 포함한 문화재현장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 심화 및 방재사업의 획일적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 목조건축물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와 난방에 기인하며 발화시에는 단시간에 확산되어 전소되는 특성으로 조속한 대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16,135	17,730	18,115	18,909	25,83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70%, 5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소유자(관리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민간 보조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13) 공능방재시스템구축(2331-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3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공능방재시스템구축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능유적본부	공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지홍	홍준기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복원정비과	이성희	박찬정	배수경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47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궁능방재시스템구축	11,633	16,137	16,137	15,330	14,689	△1,448	△9.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1,757	11,757	11,757	11,633	41	83	16,137	16,137	16,178	15,544	0	634	14,689
· 방재인력 운영	8,201	8,232	8,232	8,132	41	59	9,417	9,417	9,458	8,873	0	585	10,191
· 방재시스템운영및유지	2,341	2,310	2,310	2,295	0	15	2,341	2,341	2,341	2,306	0	35	2,341
· 방재시스템 개선	1,215	1,215	1,215	1,206	0	9	4,379	4,379	4,379	4,365	0	14	2,157
○ 비목별 분류(계)	11,757	11,757	11,757	11,633	41	83	16,137	16,137	16,178	15,544	0	634	14,689
· 상용임금(110-03)	6,452	6,416	6,416	6,402	0	14	7,463	7,463	7,463	6,999	0	464	8,133
· 일용임금(110-04)	89	89	89	81	0	8	79	79	79	78	0	1	79
· 일반수용비(210-01)	198	249	249	249	0	0	197	197	358	356	0	2	14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75	425	425	425	0	0	375	375	385	379	0	6	375
· 피복비(210-03)	44	44	44	3	41	0	44	44	84	84	0	0	44
· 특근매식비(210-05)	69	49	49	47	0	2	69	69	24	16	0	8	69
· 유류비(210-08)	10	10	10	6	0	4	10	10	10	5	0	5	1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33	734	734	719	0	15	633	633	691	674	0	17	633
· 복리후생비(210-12)	117	117	117	101	0	16	121	121	121	114	0	7	128
· 일반용역비(210-14)	20	18	18	18	0	0	20	20	0	0	0	0	20
· 관리용역비(210-15)	1,313	1,133	1,133	1,133	0	0	1,313	1,313	1,150	1,138	0	12	1,313
· 일반연구비(260-01)	0	0	0	0	0	0	0	0	0	0	0	0	200
· 고용부담금(320-09)	1,197	1,233	1,233	1,220	0	13	1,409	1,409	1,409	1,312	0	97	1,561
· 실시설계비(420-02)	18	18	18	15	0	3	18	18	18	17	0	1	13
· 공사비(420-03)	1,193	1,193	1,193	1,191	0	2	4,357	4,357	4,357	4,348	0	9	1,940
· 감리비(420-04)	4	4	4	0	0	4	4	4	4	0	0	4	0
· 시설부대비(420-05)	0	0	0	0	0	0	0	0	0	0	0	0	4
· 자산취득비(430-01)	25	25	25	23	0	2	25	25	25	24	0	1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재인력 운영)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인력(321명) 배치 및 운영
-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 (방재시스템 구축)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종합경비시스템 등 방재시스템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 ② 추진경위
 - '04. 4월 : 국민의 문화재향유권 신장을 위해 야간개방 시범추진(덕수궁, 주2회)
 - '06. 11월 : 야간개방 시범운영 확대(덕수궁, 주 6회)
 - '07. 7월 : 선릉 추가 야간 개방
 - '08.02.10. : 숭례문 화재로 인한 전소
 - '08.02.11. : 숭례문 복구 합동대책본부 발족
 - '08.02월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합동 목조문화재 점검
 - '08.03.18. : 문화재청장 지시로 활용에 앞서 소방인프라 사전구축 노력
 - '08.11월~'09.6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09.10월~'10.1월 : 4대궁·종묘·세종유적 소방시설 구축 완료
 - '09.12월~'10.11월 :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11년~ : 궁능 방재시스템(CCTV) 개선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9년~계속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 및 4대궁, 종묘, 조선왕릉, 3개 유적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14) 문화재 긴급보수사업(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홍창남	김태구	윤성호
		042-481-4933	042-481-4820	042-481-4907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	(B-A)	(B-A)/A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4,121	4,121	4,121	4,121	4,121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4,121	4,121	4,121	4,121 [1,292]			4,121	4,121	4,121	4,120 [1,230]			4,121
· 문화재 긴급보수	4,121	4,121	4,121	4,121 [1,292]			4,121	4,121	4,121	4,120 [1,230]			4,121
○ 비목별 분류(계)	4,121	4,121	4,121	4,121 [1,292]			4,121	4,121	4,121	4,120 [1,221]		1	4,121
·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 국내여비 (220-01)	5	5	5	5			5	5	5	4		1	5
·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4,106	4,106	4,106	4,106 [1,277]			4,106	4,106	4,106	4,121 [1,221]			4,1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긴급보수)
- 재난, 퇴락 및 훼손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즉시 긴급보수비를 투입,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문화재 추가 훼손 및 보수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원형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호(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추진경과
 - '04~'07년 :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추진(국비 100%)
 - '08~'09년 : 복권기금 축소로 동 사업이 제외되어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국비 70%)
 - '10년~ : 문화재보호기금으로 편성, 긴급보수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전액 보조로 변경(국비 10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규모 : 문화재 긴급보수 매년 평균 60건 내외 수준('20년 63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자체 보조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15)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 지원(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국외문화재)	조동주 042-481-4730	김병연 042-481-4734	이선혁 042-481-4735
	문화유산교육팀 (국내문화재)	전기선 042-481-3141	장영기 042-481-3150	김태우 042-481-3149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5,956	5,000	5,000	5,000	5,00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6,000		6,000	5,956 [5,731]		4	5,000		5,000	3,993 [정산중]		-	5,000
·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6,000		6,000	5,956 [5,731]		4	5,000		5,000	3,993 [정산중]		-	5,000
○ 비목별 분류(계)	6,000		6,000	5,956 [5,731]		4	5,000		5,000	3,993 [정산중]		-	5,000
· 법정민간대행 사업(320-08)	6,000		6,000	5,956 [5,731]		4	5,000		5,000	3,993 [정산중]		-	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외국 경매에 출품되거나 외국의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한국문화재를 매입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에 기여
-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비지정문화재 매입을 통해 미래의 문화재 사전 확보 및 문화재 보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제1호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6년 국정감사 지적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직접 구입하는 방법 강구”
- '10년~ :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사업 예산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 계속
- 사업규모 : 국외문화재 매년 2~4건 추진, 국내문화재 긴급매입 1건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대행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호(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군부대주둔지문화재조사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최재묵	황지윤
		042-481-4940	042-481-4947	042-481-4948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386	385	385	385	385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405		405	386 [386]		32	385		385	370			385
·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353		353	334		29	313		313	311			313
· 군부대 문화재 조사 정상관리	52		52	52		3	72		72	59			72
○ 비목별 분류(계)	405		405	386		32	385		385	370			385
· 일반수용비 (210-01)	31		31	11		0	37		50	47		3	37
· 임차료 (210-07)	7		7	26		0	23		10	8		2	23
· 국내여비 (220-01)	6		6	7		1	6		6	2		4	6
· 사업추진비 (240-01)	8		8	8		2	6		6	2		4	6
· 일반연구비 (260-01)	353		353	334		29	313		313	311		2	3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국 우리 군 및 주한 미군기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를 통한 문화재 확인, 모니터링·안내판 설치 등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 군부대 내 각종 훈련 및 시설 사업 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군 문화재 관리 교육 정기 실시로 군 자체의 문화재 보호·관리 역량 강화
- 주한 미군기지 이전 추진에 따른 문화재 보호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SOFA합동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05.12.30)

② 추진경위

- SOFA 합동위원회 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05.7.7)
-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절차서」체결(‘05.12.30)
-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서명(‘10.12.1, 제187차 SOFA합동위원회)
- ‘06~’20 우리군 주둔지 2,737개소 지표조사, 167개소 모니터링 실시(1,317건 문화재 확인), 주한 미군기지 63개소 지표조사, 73개소 모니터링 실시(217건 문화재 확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의 우리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약 15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17)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사업(23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김미란	김진희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46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18,141	18,234	18,234	19,934	20,209	1,975	10.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8,141	18,141	18,141	18,141 [17,489]	0	6	18,234	18,234	18,234	18,234 [18,012]	0	0	20,209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14,620	14,620	14,620	14,620 [14,620]	0	0	14,620	14,620	14,620	14,780 [14,780]	0	0	16,095
· 긴급 발굴조사 지원	2,250	2,250	2,250	2,250 [1,598]	0	0	1,343	1,343	1,343	1,343 [1,165]	0	0	1,343
· 민간 지표조사 지원	575	575	575	575 [575]	0	0	1,575	1,575	1,575	1,415 [1,415]	0	0	2,075
· 중요폐사지 발굴조사 지원	676	676	676	676 [676]	0	0	676	676	676	676 [632]	0	0	676
· 소규모 긴급발굴조사 경상관리	20	20	20	20 [20]	0	6	20	20	20	20 [20]	0	0	20
○ 비목별 분류(계)	18,141	18,141	18,141	18,141 [17,489]	0	0	18,234	18,234	18,234	18,234 [18,012]	0	0	20,209
·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20 [20]	0	6	20	20	20	20 [20]	0	0	20
· 민간경상보조(320-01)	676	676	676	676 [676]	0	0	676	676	676	676 [632]	0	0	676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5,195	15,195	15,195	15,195 [15,195]	0	0	16,195	16,195	16,195	16,195 [16,195]	0	0	18,17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250	2,250	2,250	2,250 [1,598]	0	0	1,343	1,343	1,343	1,343 [1,165]	0	0	1,3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 사업에 따른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발견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매장문화재 수습조사를 지원하여 보호의 적시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민간 지표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지표조사 절차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지표조사 절차 등)

<긴급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긴급 발굴조사 지원 : 1993년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2004년
-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지원 : 2010년
- 지표조사 지원 : 2015년

- 추진배경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습조사 지원 필요성 대두
- 2010년도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 소규모발굴전담팀 운영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3만㎡ 미만의 지표조사 국비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및 공장, 농어민시설 등 소규모 건축공사 발굴조사 300건 내외 지원
 - 지자체 긴급발굴조사 20건 내외 지원
 - 민간시행 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300건 내외 지원
 - 중요 폐사지 3개소 발굴조사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중요폐사지), 지자체보조(긴급발굴), 민간위탁(소규모발굴 및 지표조사지원), 직접시행(경상관리)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단체(한국문화재재단, (사)한국문화유산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농어업인, 영세상공업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100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한국문화재단 등	100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11조

사 업 명
(18) 기금운영비(2376-2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76	201
명칭	문화재보호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김지성	김윤수	이재운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기금운영비	141	143	143	143	138	△5	△3.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 (합계)	144	144	144	141		3	143	143	143	119		24	138
· 기금운영관리	144	144	144	141		3	143	143	143	119		24	138
○ 비목별 분류 (합계)	144	144	144	141		3	143	143	143	119		24	138
· 상용임금 (110-03)	26	26	26	24		2	26	26	26	26			27
· 일반수용비 (210-01)	32	24	24	24			31	31	31	31			28
· 임차료(210-07)		8	8	8			0	0	0	0			0
· 복리후생비 (210-12)	0	0	0	0			0	0	0	0			0
· 일반용역비 (210-14)	30	30	30	30			30	30	30	30			33
· 국내여비 (220-01)	10	13	13	13			10	10	10	6		4	10
· 국외업무여비 (220-02)	17	14	14	14			17	17	17	0		17	13
· 사업추진비 (240-01)	24	24	24	24			24	24	24	21		3	22
· 고용부담금 (320-09)	5	5	5	4		1	5	5	5	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문화재 보호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시작년도 : 2010년

○ 추진배경

- 기금자산·부채 등에 대한 관리·운영, 성과분석·평가
- 부가금 징수를 위한 사업비 및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 전국 시·도(약 60개소)로부터 문화재관람료 납부금·징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기금운용을 위한 인력 1명, 기금운용심의회·자산운용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운영,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